

식품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개편방향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황 윤 재      부 연구위원  
한 재 환      전문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       |       |                                 |
|-------|-------|---------------------------------|
| 황 윤 재 | 부연구위원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집필 |
| 한 재 환 | 전문연구원 | 제3장, 제4장 집필                     |

## 머 리 말

---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고규모도 대형화됨에 따라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까지 식품안전관련 논의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인 정책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민과 밀접한 행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이후 새로운 법체계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행정적·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와 관련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를 도출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립하여 국가 전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009.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 요 약

---

이 연구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새로운 법체계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식품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식품안전행정에 관한 책무를 국가와 함께 분담하도록 규정하지만, 그러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권한은 기본법의 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유사하게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보건위생과 농업 관련부서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한다. 대개 지자체 고유 업무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안전성 조사 및 지도·단속 등을 포함한 일부 업무는 중앙정부와 중복되어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 안전성 조사,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재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부서의 이원화로 더욱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시민단체 회원을 시민감시원으로 두고 위생, 원산지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한다. 그러나 이들을 전문적인 업무에 투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 조직을 통합하거나 기존의 조직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설

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은 지역 온정주의나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현장행정에서 실질적인 업무집행과 지역실정에 기반을 둔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배분의 큰 틀로 중앙정부는 정책 및 제도 수립,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는 감시·감독, 인허가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며, 대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인 현장 집행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세부적인 역할 분담의 방향에 대해서는 관련 주체별로 다소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관리의 개편은 기본적으로 1)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성 확보, 2) 소비자의 신뢰 및 안전 확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국가 식품안전정책 수립, 위험평가 및 기준설정,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광역적인 식품위해문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관련업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은 사안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의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행정을 위한 인력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이원화된 안전관리체계와는 별도로 보건위생부서와 농업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행정체계를 개편하여 식품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역량을 개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

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례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관심이 부족하였으며,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종합적·체계적 식품안전관리도 미흡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지침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거와 달리 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다른 지역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가 추진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기적으로 지역의 식품안전관련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부처에 비해 업무 수행과정에 지역 온정주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를 고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 Improving th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With a Focus on the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new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to reform the agricultural food safety system for efficient management of agri-food safety at the national level.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the local governments shall be jointly responsible for food safety administ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roles and authoritie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perform the tasks are not explicitly set out in the Framework Act. Because of this, to deal with the tasks of this nature,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rely on other related laws as they have done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Local governments are similar to central governments in handling food safety activities by running health and hygiene department and agriculture department separately. Local governments are normally handling local affairs while performing the tasks given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task of investigating into safety status and conducting supervision and monitoring, to some degree, the activity overlaps with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has been criticized as the factor of causing inefficiency and weakening the will of the local government to perform actively. Also local governments are given the authority to approve and permit on top of the authority to safety investigation, supervision and monitoring. However, local governments find it difficult to properly serve the function due to the lack of a dedicated team or resources. The workload of local governments tend to be heavier under the polarized structure of running two food safety management-related departments.

A survey was conducted against consumers and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food safety in order to learn their views. Related officials believed that despite the concern of leniency toward local violations and the human resources issue, the fulfillment of assigned activities at field and the policy execution reflective of local situation require extended roles and author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work sharing,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policies and institutions, while local governments handle monitoring/supervision and grant permits/approvals. Notwithstanding, how to divide and allocate work at the detailed level, difference was found among the respondents by subject matter.

Reforming the current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shall be pursued basically considering 1) efficient operation of the national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2) restored consumer confidence and secured safety.

To modify the current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first, the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learly defined. To this end, national food safety policy setup should be designed and the risk assessment and criteria setting should be conducted. Also, the issues affecting large areas beyond the power of a single loc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play the main role. On the other hand, local governments could take up more practical-level execution activities such as granting permits/approvals and conducting supervision/monitoring. Based on the clear defini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it is desired over the long haul to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Second, the reforming of the current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clear definition of local governments will be effective only when local governments are capable enough to support the food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Therefore, as a long-term solution of the insufficient resources, the central government could increase the number of staffs dedicated to local government's food safety administration on the gradual basis. In a short term, independently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dual management structure of food safety, the local governments' current food safety administration system that is divided into the hygiene department and agricultural department could be reformed by establishing a food safety dedicated unit. More desirably, after alleviating the capacity gap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hen improving their overall capability, expanded roles and authorities could be granted to local governments. Third, under the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local governments are mandated to establish and execute their food safety management plans designed based on the framework food safety management plan prepared by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a case study h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didn’t take any significant actions or pay special attention to this requirement. Also the food safety is not managed in a systematic manner under a long-term comprehensive plan.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ncouraged to set out food safety control plans and guidelin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ourth, unlike the past, agricultural produce is distributed across the nation, so that the coordination structure between local governments will facilitate efficient work performance. However, if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s roles are strived for a long time, local governments may tend to resolve issues solely and independently, weakening the coordination structure among them. In this regard, we need to consider establishing a body for mutual discussions where local governments regularly meet and talk about regional food safety issues. Fifth, compared to central government agencies, local governments have a more room for exercising leniency toward local cases in the course of their work performance. If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roles is considered on top of preparing a work adjustment structure, a supervisory system is also necessary to monitor the safety management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Researchers: Yun-Jae Hwang and Jae-Hwan Han

E-mail address: yjhwang@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                      |   |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1 |
| 2. 선행연구 검토 .....     | 3 |
| 3. 연구의 내용 .....      | 8 |
| 4. 연구 범위와 방법 .....   | 9 |

### 제2장 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                         |    |
|-------------------------|----|
| 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     | 13 |
| 2.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현황 ..... | 20 |

###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

|                            |    |
|----------------------------|----|
| 1.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 27 |
| 2.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 | 41 |
| 3. 시사점 .....               | 50 |

### 제4장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관리 평가

|                    |    |
|--------------------|----|
| 1. 소비자의 평가 .....   | 53 |
| 2. 담당공무원의 평가 ..... | 62 |
| 3. 시사점 .....       | 77 |

### 제5장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일본 중심

|                               |     |
|-------------------------------|-----|
| 1. 해외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과 변화 ..... | 79  |
| 2. 일본의 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 .....      | 81  |
| 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 | 88  |
| 4. 시사점 .....                  | 101 |

##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방향

|                                        |     |
|----------------------------------------|-----|
| 1. 기본원칙 .....                          | 103 |
| 2. 추진방향 .....                          | 104 |
| 부록1: 주요 식품안전 관련 법령의 법 제정 목적 .....      | 113 |
| 부록2: 식품안전 관련 법령상의 권한분배 현황 .....        | 115 |
| 부록3: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 분담체계 .....            | 134 |
| 부록4: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식품안전 관련 법규 제정 현황 ..... | 136 |
| 부록5: 품목별·단계별 식품안전관리의 역할분배 현황 .....     | 137 |
| 부록6: 도·교·도 식품안전추진계획 시책의 종합적 체계 .....   | 140 |
| 부록7: 농식품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향조사 .....     | 142 |
| 부록8: 농식품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소비자 의향조사 .....     | 151 |
| 참고문헌 .....                             | 161 |

## 표 차례

---

### 제1장

|                                 |    |
|---------------------------------|----|
| 표 1-1. 주요 연구대상 식품안전 관련 법령 ..... | 10 |
| 표 1-2. 연구대상 행정 범위 .....         | 11 |

### 제2장

|                                              |    |
|----------------------------------------------|----|
| 표 2-1.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 .....                  | 15 |
| 표 2-2.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주요 개정 내용(2009년 6월 개정) ..... | 19 |
| 표 2-3. 우리나라의 농·수·축산식품 위험관리 .....             | 23 |
| 표 2-4. 주요 식품안전관리기관의 역할 .....                 | 25 |

### 제3장

|                                           |    |
|-------------------------------------------|----|
| 표 3-1. 식품안전기본법상 권한분배 .....                | 30 |
| 표 3-2. 광역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 .....    | 42 |
| 표 3-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식품안전관리 업무 .....   | 47 |
| 표 3-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대상 식품 관련 업종 분류 ... | 48 |

### 제4장

|                                       |    |
|---------------------------------------|----|
| 표 4-1.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          | 54 |
| 표 4-2.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 .....              | 54 |
| 표 4-3. 농식품 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도 .....      | 54 |
| 표 4-4.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사항 .....           | 55 |
| 표 4-5. 농식품 안전관리에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원칙 ..... | 56 |
| 표 4-6.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기관별 역할의 중요도 ..... | 56 |
| 표 4-7.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  | 57 |
| 표 4-8.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 저해 요인 .....   | 57 |
| 표 4-9.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행정 개선 사항 .....   | 58 |

|         |                                    |    |
|---------|------------------------------------|----|
| 표 4-10.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의 개선 방향 .....       | 58 |
| 표 4-11. | 역할 및 권한 확대의 주요 이유 .....            | 59 |
| 표 4-12. | 역할 및 권한 축소의 주요 이유 .....            | 59 |
| 표 4-13.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통합 .....             | 60 |
| 표 4-14. |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              | 63 |
| 표 4-15.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후 조직 내 변화 및 관련 논의 여부 .. | 64 |
| 표 4-16. |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기관별 역할 중요도 .....      | 64 |
| 표 4-17. | 지방자치단체 농식품 안전관리 저해 요인 .....        | 65 |
| 표 4-18.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계 및 업무분담 실태 .....    | 66 |
| 표 4-19.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중복 수준 .....         | 66 |
| 표 4-20. | 농식품 안전관리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평가 .....    | 67 |
| 표 4-21. |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행정 개선 사항 .....       | 68 |
| 표 4-22. | 중앙정부의 주요 역할 .....                  | 68 |
| 표 4-23.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 .....                | 69 |
| 표 4-24.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의 개선 방향 .....       | 70 |
| 표 4-25. |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권한 확대의 주요 이유 .....     | 70 |
| 표 4-26. |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권한 축소의 주요 이유 .....     | 70 |
| 표 4-27. | 통합 부서의 필요성 .....                   | 71 |

## 제5장

|        |                                   |    |
|--------|-----------------------------------|----|
| 표 5-1. |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              | 80 |
| 표 5-2. | 일본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 .....           | 82 |
| 표 5-3. | 일본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              | 83 |
| 표 5-4.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주요 변화(법률적 측면) ..... | 85 |
| 표 5-5. | 소비자청 설치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방안 .....      | 86 |
| 표 5-6. | 농림수산성의 식품안전 관련 조직 구성 .....        | 88 |
| 표 5-7.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조례 .....       | 91 |
| 표 5-8.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기본계획·실행계획 .....   | 92 |
| 표 5-9. |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 참여 현황 .....        | 93 |

|                                          |     |
|------------------------------------------|-----|
| 표 5-10. 도쿄도의 식품안전 관련 동향 .....            | 94  |
| 표 5-11. 식품안전 관련 부속기관의 주요 업무 .....        | 100 |
| 표 5-12.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관리 비교 ..... | 102 |

## 제6장

|                                               |     |
|-----------------------------------------------|-----|
| 표 6-1.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에 대한 담당 공무원 의향 .....      | 105 |
| 표 6-2. 유형별 평균 부서 인원 및 농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 수 ..... | 108 |
| 표 6-3. 인력보충의 필요성 .....                        | 108 |

## 그림 차례

---

### 제2장

|                                    |    |
|------------------------------------|----|
| 그림 2-1. 식품안전기본법상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 | 21 |
| 그림 2-2. 식품안전 관련 법령의 유형별 분류 .....   | 21 |
| 그림 2-3. 식품안전행정체계 .....             | 22 |
| 그림 2-4. 식품안전관리체계 .....             | 25 |

### 제3장

|                              |    |
|------------------------------|----|
| 그림 3-1.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관리체계 ..... | 44 |
| 그림 3-2. 경기도 식품안전관리체계 .....   | 45 |

### 제4장

|                                                                           |    |
|---------------------------------------------------------------------------|----|
| 그림 4-1. 주요 농식품 안전 관련 기능의 추진 주체에 대한 소비자<br>의향(중복응답) .....                  | 60 |
| 그림 4-2. 세부 농식품 안전 관련 업무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br>소비자 의향(중복응답) .....              | 61 |
| 그림 4-3. 주요 농식품 안전 관련 기능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br>중앙정부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향(중복응답) .....   | 72 |
| 그림 4-4. 주요 농식품 안전 관련 기능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br>광역자치단체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향(중복응답) ..... | 72 |
| 그림 4-5. 주요 농식품 안전 관련 기능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br>기초자치단체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향(중복응답) ..... | 73 |
| 그림 4-6. 세부 농식품 안전 관련 업무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br>중앙정부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향(중복응답) .....   | 74 |
| 그림 4-7. 세부 농식품 안전 관련 업무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br>광역자치단체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향(중복응답) ..... | 75 |

|                                                                           |    |
|---------------------------------------------------------------------------|----|
| 그림 4-8. 세부 농식품 안전 관련 업무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br>기초자치단체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향(중복응답) ..... | 76 |
|---------------------------------------------------------------------------|----|

## 제5장

|                                  |    |
|----------------------------------|----|
| 그림 5-1. 일본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      | 87 |
| 그림 5-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 89 |
| 그림 5-3. 도쿄도의 식품안전조례의 개요 .....    | 96 |
| 그림 5-4. 도쿄도 식품안전관리 추진 체계 .....   | 97 |
| 그림 5-5. 식품안전대책추진조정회의 운영 체계 ..... | 98 |

## 제6장

|                                        |     |
|----------------------------------------|-----|
| 그림 6-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배·조정안 ..... | 106 |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와 함께 정부는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고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깊어졌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2003년 8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T/F팀’을 설치하여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과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06년에는 식품안전처 설립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하였다. “식품안전기본법”은 2008년 6월 13일에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이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식품의 안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하는 것을 법의 목적의 일부로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명시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의 한 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식품안전관리 방안 마련이나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중앙정부의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미약하며, 지도·단속 등 일부 업무의 경우 중앙정부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인적·물적

자원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sup>1,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 행정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 역량 부족과 지역 온정주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정책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국가 전체 식품안전체계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어렵다. “식품안전기본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식품안전 관리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기능 재정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련 실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이후 새로운 법체계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 하는데 있다.

<sup>1</sup>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에 대해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 자치의 단체이다. 헌법 제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절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3절에서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제10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제11조) 등을 명시한다.

<sup>2</sup>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로 구분된다. 이 중 특별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 도는 자치시와 군으로 나뉜다.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비자치구역 |       |       |   |
|--------|--------|-------|-------|-------|---|
| 특별시    | 자치구    |       | 행정동   | 통     | 반 |
| 광역시    | 자치구    |       | 읍     | (행정)리 |   |
|        | 군      | 면     |       |       |   |
| 도      | 자치시    | (일반구) | 읍·면   | 통     |   |
|        |        |       | (행정)동 |       |   |
| 특별자치도  |        | (행정)시 | (행정)동 |       |   |

## 2. 선행연구 검토

### 2.1.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최지현·이계임(2001)은 주요 농축산물의 안전성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생산·유통·가공단계별 안전관리실태와 검사기준, 안전성 관리 업무분담체계, 감시 및 홍보체계 등 안전성 관리요소별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채소류와 육류의 유통단계별 위해요소 관리방안과 세부 추진방안 등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전성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기혜 외(2002)는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장단기 식품안전모형의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식품업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곽노성(2002a)은 해외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위해도 평가 통합모형, 위해도 관리 통합 모형, 협의회 운영 모형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으로 위해도 관리 통합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곽노성(2002b)은 식품안전 정책결정 기능의 일원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또는 농림부로의 식품안전관리 기능 일원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승용(2002)은 농축산물 안전관리제도의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농축산물의 안전관리행정, 안전성 조사 및 검사, 정보관리 현황 등 안전관리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해실태 및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향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주요국의 식품 위생 및 안전성 관리체계를 살펴보았다.

김광천(2004)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캐나다, 일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식품안전관리기구의 일원화 등 우리나라 식품안전체계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지현 외(2004)는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파악하여 국내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진식 외(2006)는 식품안전공급 관리를 위한 직제·기구·인력 개편 방안, 식품 제조·유통 분야의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함께 종합적인 시각에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식품안전관리조직 개편의 일부로 중앙·지방 간 기능 재배분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앙은 기준 제시 기능, 지자체는 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지현·김민정(2006)은 생산 및 수입단계에서의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위험분석(risk analysis) 틀에 입각하여 평가하여 당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 농산물, 수출 농산물, GAP 농산물, 수입 농식품에 대한 생산 및 수입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준·배민식(2008)은 참여정부의 식품안전관리정책의 내용과 한계점을 검토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선진국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2008 종합대책)」 등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관련 법제 및 정책 재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강경선 외(2008)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기구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권고 사항 및 가이드라인과 함께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단일기관 시스템(독일,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유럽연합), 통합관리 시스템(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다원화 시스템(미국)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행정체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식품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식품행정 체계화·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단기적으로 동식물 위생방역청 및 식품안전위원회 설립·운영, 중장기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청 설립·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2.2. 품목별·기능별 연구

품목별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연구들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의 종류별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곽명섭(2004)은 수입식품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양병우(2003)는 축산식품의 안전성 강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밖에 주문배·박명섭(2003)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분석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식품안전관리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로는 위험분석의 한 요소인 위험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이기현(2006)과 오원택(2006)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법제, 조직 및 인력 등의 실태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식품 위험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2.3. 안전관련 법령에 관한 연구

류창호(2004)는 식품안전법제에 관한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덴마크 등)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식품안전법제와 관련 법령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 법제에서 미흡한 사항인 식품소비자의 피해구제방안과 현재의 다원화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법령간의 조화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권배근(2007)은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직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체계와 조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질서청과 질서법의 도입 필요성과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원우 외(2008)는 식품안전법 연구의 일부로서 소비자안전과 함께 식품산업의 발전을 상호 보장하는 안전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식품안전규제법의 일반원리와 구조·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식품법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조직 및 규제운영의 측면에서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 내용 측면에서 식품 내용물 규제, HACCP, 냉동식품 관리 등 취급·관리 제도, 식품표시제도 등 정보전달 관련 제도, 식품안전법 집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계임(2008)은 우리나라의 식품 관련 법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의 일부로 국내외 식품안전 관련 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식품안전 관련 법률을 포함한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장단기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 2.4. 해외 주요국의 안전관리 실태 조사

유영철(2004b)은 미국, 영국, 일본의 식품행정체계를 조직의 구성형태와 위험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식품행정체계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식품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수산물유통공사(2005)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주요 5개국의 식품안전관리 조직 및 기관, 식품안전 관련 법규 및 주요 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재수(2005)는 미국의 식품업무의 처리 방향과 기본 원칙, 식품안전 관련 기관과 업무, 관련 법령 등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수입 관리, 사전적 예방, 식품 행정의 효율화, 민간의 역할·책임의 측면에서 식품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5)은 다원화된 미국 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체계의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해외 주요국(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7개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통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기혜(2006)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조직, 업무 영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2.5.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식품안전과 관련되어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방민원(2001), 유영철(2004a), 남진식(2006), 신경희(2008)의 연구가 있다.

방민원(2001)은 국가 행정체계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국립검역소,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검사소 등 중앙정부 산하기관 포함)의 역할, 기능 등을 살펴보고, 이들 간에 관계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검사소 간의 관계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영철(2004a)은 식품 관련 행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중복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의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남진식(2006)과 신경희(2008)는 각각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식품안전 관리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행정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 2.6.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는 품목별 또는 전반적인 농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가 대

부분으로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체계, 기능 등의 개선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앙행정기관의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림수산물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안전관련 업무 및 기능의 단일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밖에 농식품 안전관련 제도나 법령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있으며,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로 해외 주요국의 농식품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재정립의 시각에서 바라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주로 단편적이거나 개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의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체계의 재정립을 통한 농식품 안전관리의 효율화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평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방향 등이다.

첫째, 제2장 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의 내용과 법 제정 이후의 주요 변화를 행정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식품안전기본법과 관련법 체계, 식품안전행정체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둘째,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는 식품안전관련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규정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련법규와 식품안전행정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제4장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는 소비자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넷째, 제5장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는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현황과 법 제정 이후의 변화를 파악하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실태를 도쿄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에 초점을 맞추어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의 기본원칙과 세부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4. 연구 범위와 방법

### 4.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새로운 법체계하에서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권한을 법률적·행정적인 측면에서 연구한다.

법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범명이 제시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련법령’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권한에 대해 조사한다<표 1-1>.<sup>3</sup> “식품안전기본법”은 이외에도 ‘식품안전관련

<sup>3</sup> ‘식품안전관련법령’의 범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식품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법령을 ‘식품안전관련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비해 이계임 외(2008)는 ‘식품안전관련법률’로 상위법인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조항을 담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하위법인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

법령'으로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령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는 농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농업 관련 부서와 보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표 1-2>.<sup>4</sup>

표 1-1. 주요 연구대상 식품안전 관련 법령

| 소관부처    | 관련 법령                                                                                                   |
|---------|---------------------------------------------------------------------------------------------------------|
| 농림수산식품부 |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염관리법 |
| 보건복지가족부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약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지식경제부   |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 환경부     | 먹는 물 관리법, 수도법                                                                                           |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
| 기획재정부   | 주세법                                                                                                     |

주 1) “식품안전기본법상”의 ‘식품안전관련법령’은 표에 언급된 법령 이외에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함.

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사료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8개 법률을 제시하였다.

<sup>4</sup> 200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1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개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9개 도가 있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6개의 자치군이 설치되어 있다.

표 1-2. 연구대상 행정 범위

| 구분     |                  |     | 단위: 개 |
|--------|------------------|-----|-------|
| 행정단위수  |                  |     |       |
| 중앙정부   |                  |     | 1     |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br>(16개)  | 특별시 | 1     |
|        |                  | 광역시 | 6     |
|        |                  | 도   | 9     |
|        | 기초자치단체<br>(230개) | 시   | 75    |
|        |                  | 군   | 86    |
|        |                  | 구   | 69    |

## 4.2. 연구 방법

국내외의 일반적인 식품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는 주로 기존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식품안전관리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함께 농림수산성과 도쿄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분석은 행정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이 중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사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부서의 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접조사에 의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밖에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부서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표 1-3>.

면접조사를 위해서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3달여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보건부서와 농업부서의 식품안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농식품안전 관련 공무원과 소비자의 의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9년 6월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관련 공무원 조사는 중앙정부 공무원 11명과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 공무원 20명,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50명에 대해 시행되었다. 중앙정부에 대한 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 지자체의 농업관련 및 보건위생관련 부서에 대해 시행되었다. 소비자 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녀 소비자 300명에 대한 인터넷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 연구위탁이 추진되었다.<sup>5</sup>

---

<sup>5</sup> 고려대학교 법학과 이희정 교수가 식품안전기본법과 관련 법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였다.

### 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깊어지고, 식품안전관리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및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식품안전 T/F팀을 구성하여 관련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에는 식품안전처 설립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관련인들 간 논란 끝에 실제 법 제정은 2008년 6월 13일에 이루어졌으며,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sup>6</sup>

“식품안전기본법”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소비자의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그림 2-1>.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 등과 관련된 법률의 일반법 및 기본법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sup>7</sup> “식품안전기본법”은 실체적으로는 과거 ‘식품

6 “식품안전기본법”의 시행령은 2008년 12월 9일에 제정되었으며, 시행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7 ‘기본법’의 역할은 적극적인 역할로서 다른 개별법령들에 대해 일종의 헌법과

위생'에 초점을 맞추었던 식품 관련 정책이 '식품안전'의 확보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법 제정을 통해 수단적으로는 식품의 생산·가공·소비단계별, 품목별로 각각 다른 행정기관이 다른 개별법을 근거로 규율하는 다원적 시스템을 통합하는 시도를 한다.<sup>8,9</sup> “식품안전기본법”은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에 분장된 실체법적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위원과 함께 각 행정기관의 장들이 모두 참여하여 논의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과 일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상위의 심의·조정기관을 신설하여 절차적으로 식품행정체계를 통합하고자 한다. 즉, 식품안전관련행정의 권한과 책무는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게 분장되어 있지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해 집행에 있어서는 조정 및 통합을 시도하는 형태로 일원화를 도모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가 행정조직체계의 완전한 통합이 아니며,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의 완전한 효율화를 가져오지는 않다는 점에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기존의 식품안전관련기관의 단일화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이에 비해 일반법은 통상 특별한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될 일반적 사안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반법-특별법’의 의미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일반법과 다른 취급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일반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sup>8</sup> 2008년 6월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8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이 참고가 된다. 이는 ① 사전예방의 원칙을 식품안전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국민 참여하에 식품안전 감시활동을 벌인다. ③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⑤ 식품위생사범을 특별관리함으로써 부정식품의 생산·유통을 차단한다. ⑥ 범정부적 식품안전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등이다.

<sup>9</sup> 김은진(2008) 참조.

표 2-1.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

|                                                                                                                                                                                                                                                                                                                         |
|-------------------------------------------------------------------------------------------------------------------------------------------------------------------------------------------------------------------------------------------------------------------------------------------------------------------------|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는 3년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에 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식품안전정책에 반영</li> </ul>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제7조 및 제8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li> <li>·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심의</li> </ul> </li> <li>-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조정</li> </ul> |
| 긴급대응체계 마련 및 위해원인 추적조사(제15조부터 제18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시행</li> <li>-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당해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 합동조사 등의 방법으로 식품의 위해원인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li> </ul>                                                                 |
| 식품 등의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성 평가 의무화(제20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그 밖에 식품 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위해성 평가 실시</li> </ul>                                                                                                                                                                       |
| 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 확대(제24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li> <li>-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 공개</li> </ul>                                                                                                                                                                       |
|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소비자 참여 강화(제28조부터 제30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 참여</li> <li>-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 요청 가능</li> <li>- 식품안전법령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의 불이익 방지</li> </ul>                                                                                                                                                           |

## 1.1. 행정적 측면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들 수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2008년 12월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조정하기 위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sup>10</sup>

정부부처별로는 2009년 4월 농림수산물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내부조직체계 개편이 있었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기존의 55개 과를 49개 과로 축소하였으며, 위생·검역 기능을 담당하는 소비안전정책관과 녹색성장정책관을 신설하였다. 특히 소비안전정책관의 신설에 따라 축산, 식량, 식품산업 등 품목별로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관련 기능들이 통합되었다. 기존의 축산정책단의 축산물위생팀, 식품산업정책단의 소비안전팀, 식량정책단의 친환경농업팀과 농생명산업팀의 일부 기능이 식품산업정책실의 소비안전정책관 담당으로 이관되어, 소비안전정책과, 안전위생과, 표시검역과, 친환경농업과로 부서가 개편되었다.

이 밖에 2009년 7월 현재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국립수과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4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농식품 검역·검사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sup>11</sup>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중복 해결을 위해 조직 개편과 업무조정 계획을 포함하는 개편안을 2009년 4월 21일 심의 의결하고 4월 30일자로 우선 내부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를 조정하였다. 개편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및 지방청의 안전관리조직 및 기능

<sup>10</sup>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설치 이후 2009년 3월 10일에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식품시험검사기관의 허위성적서 발급, 부실 검사 사례에 대한 대책과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sup>11</sup> 농림수산물식품부 산하 검역·검사 기관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2009년 7월 현재 실질적인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통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재구축과 일부 기능 및 인력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부 조직 개편으로 본청 조직이 65과에서 48과로 축소되었으며, 본청에서 24명, 6개 지방청에서 91명의 인원감축이 있었다. 또한 본청은 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컨트롤 타워 기능을 중점으로 하고 지방청은 본청의 집행적 업무의 성격을 담당하도록 업무가 조정되었다. 개편에 의해 본청은 주로 정책개발, 기준설정, 시판허가승인, 시판 후 감시, 제조품질시스템 관리 등, 지방청은 위해조사, HACCP·건강기능식품 GMP 등 제조품질시스템 관리·운영, 수입식품 안전관리, 유해물질 모니터링 등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조직 개편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감축된 정원 101명이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인력 증원을 위해 배분되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인력 증원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개편안에 의하면 정원 이관과 함께 단순 인허가, 지도·단속 등의 집행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관 대상업무에는 HACCP 지정,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조사처리업 영업 허가,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 수리, 식품·의약품의 수거·검사 및 일상적 지도·단속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이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태이다.<sup>12</sup> 이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력이 관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에 기존의 보건위생부서와 독립적으로 식품안전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up>12</sup> 본 연구보고서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및 정원이관 관련 내용은 2009년 7월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이관 등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다.

## 1.2. 법률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6월 9일 농산물 안전성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이 시행될 농산물품질관리법은 기존의 법과 비교하여 목적 규정과 일부 안전관리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었다<표 2-2>.

기존의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이 시행될 법은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현행 법과 비교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목적의 하나로 명시되고, 그 수단의 하나로서 거래의 ‘투명성’이 명시되었다.<sup>13</sup>

또한 법령 개정에 의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가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명칭이 개편되고 사후관리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농산물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리적 표시권을 강화하고 농산물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7월 현재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단일화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sup>13</sup>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유통되는 상품으로서의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한다. 이 목적 규정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식품위생법”처럼 식품안전 자체만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농산물의 품질관리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식품안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법 개정은 이 법이 산업으로서의 농산품거래의 증진뿐만 아니라 ‘식품안전’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이 법이 식품안전기본법을 정점으로 하는 식품안전법체계의 일부임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이관을 위해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법률적인 변화는 없다.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식품안전기본법”을 바탕으로 하여 ‘식품안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인 2008년 11월에 제정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조례는 각각 2009년 3월과 6월에 제정되었다.

표 2-2.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주요 개정 내용(2009년 6월 개정)

|                                                                                                                                                                                                                                                                                                                                |
|--------------------------------------------------------------------------------------------------------------------------------------------------------------------------------------------------------------------------------------------------------------------------------------------------------------------------------|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개편                                                                                                                                                                                                                                                                                  |
| -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하고 농산물품질인증제를 폐지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통합 추진하여 제도 활성화                                                                                                                                                                                                                                                          |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강화                                                                                                                                                                                                                                                                                                                  |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신설<br>- 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단순 유통·판매자 및 현실적으로 기록유지가 어려운 노점·행상 등 영세업자의 이력추적제도 적용 면제                                                                                                                                                                                                                   |
|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절차 보완                                                                                                                                                                                                                                                                                                              |
| -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사유에 「상표법」에 따른 상표와의 권리가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근거 마련<br>- 선출원 중인 상표 및 품종명칭과의 분쟁방지를 위해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이전에 출원되어 심사 중인 상표 및 품종명칭도 포함<br>-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외에 지리적표시권자나 그 소속단체원이 규정위반 시 누구든지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제기 가능<br>- 지리적표시의 권리 취득 및 유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 |
|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개선                                                                                                                                                                                                                                                                                                                  |
| - 안전성조사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유관기관 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br>-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증가하는 안전성조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기관을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산물의 안전성 교육 및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분석방법 등의 연구개발, 식품안전 전문기관에 대한 위험평가 요청 등의 근거 마련        |
|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                                                                                                                                                                                                                                                                                                          |
| -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한 행정권 남용 방지                                                                                                                                                                                                                                                                                   |

## 2.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현황

### 2.1. 식품안전기본법과 관련법 체계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 관련 법제에서 ‘식품안전관련법령’의 ‘기본법’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 “식품안전기본법” 제3조 제1,2항은 동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둔다. 제1항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하여 제2조 제5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제3조 제2항에서는 “식품안전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항은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용의 우선 순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의 ‘일반법’ 지위, 제2항은 입법에 있어서 “식품안전기본법”이 지도원리 내지 기본모델, 즉 ‘기본법’의 지위를 명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련법령’은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법령을 포함한다<그림 2-1><그림 2-2><부록 1>. ‘식품안전관련법령’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6개 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28개 법령과 기타 식품안전 관련 법률과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 관련 기관 간 권한 분장 등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항은 사실상 이러한 ‘식품안전관련법령’에 의해 집행된다. 즉, 현재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체계는 식품의 종류별, 관련 행위의 단계별로 개별법률을 두는 과거의 상태가 유지되면서, 그 상위에 식품안전 기본법이라는 이 개별법률을 총괄하는 법률이 있는 형태를 취한다.

그림 2-1. 식품안전기본법상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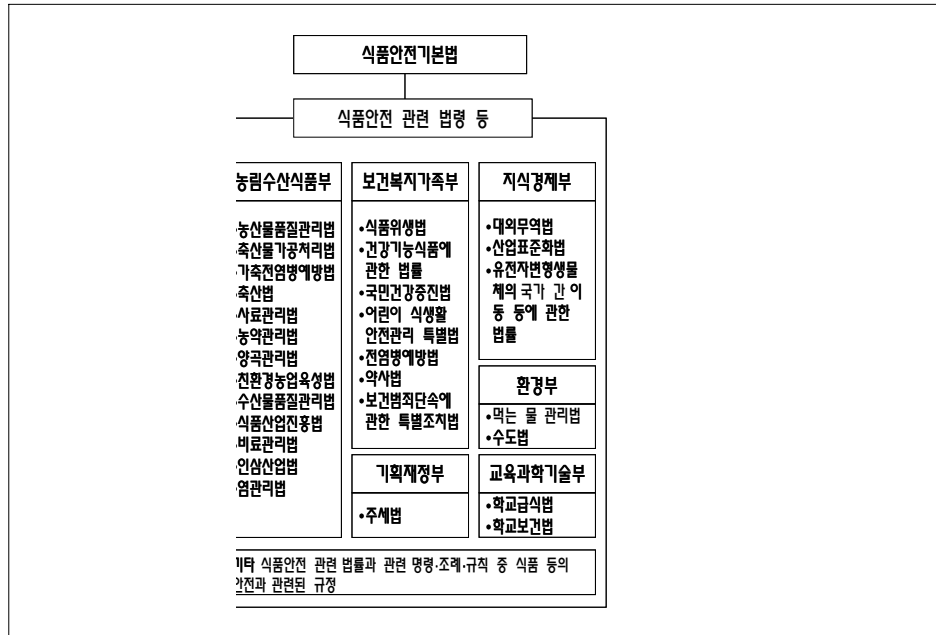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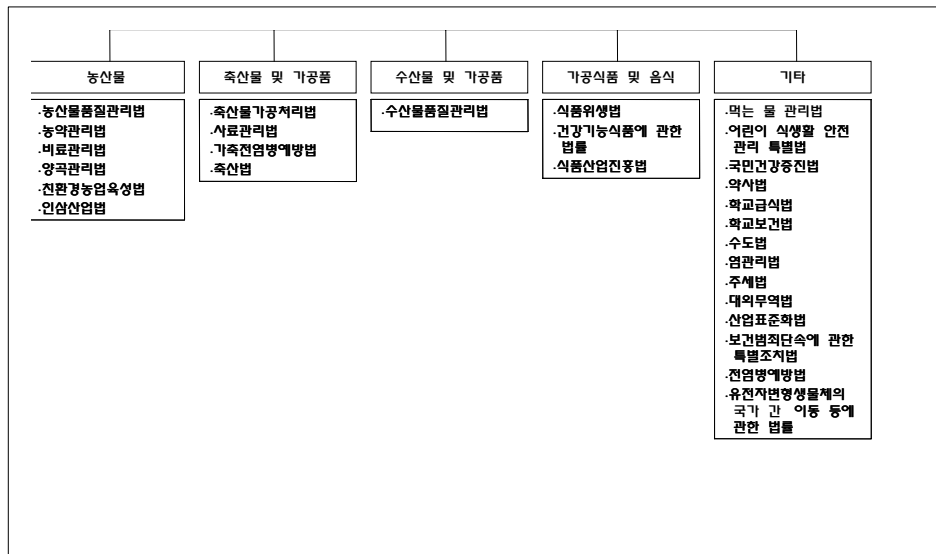


그림 2-2. 식품안전 관련 법령의 유형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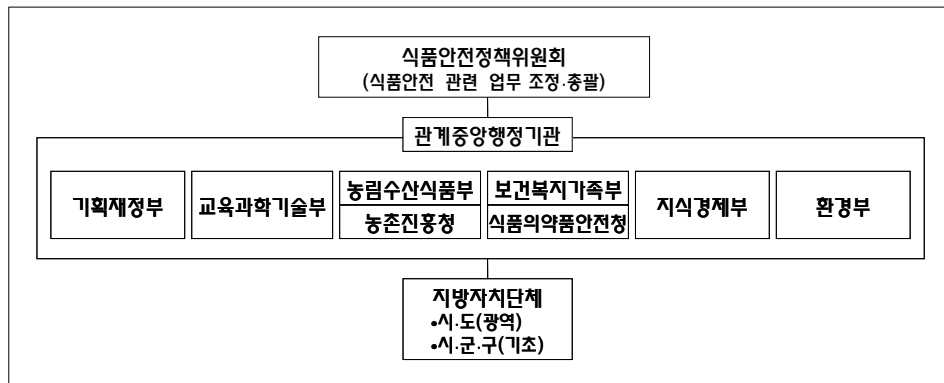


자료: 이계임 외(2008) 참조.

## 2.2. 식품안전행정체계 개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행정체계는 ① 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② 중앙행정기관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이 중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한다<그림 2-3>.

그림 2-3. 식품안전행정체계



주 1)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명시되어 식품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작성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2008년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이후 설립되었으며,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심의하며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up>14</sup>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

<sup>14</sup>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① 식품안전기본계획, ②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 ③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및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⑤ 중대한 식품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 ⑥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집행단계에서 관련 행정기관 상호 간의 역할분담 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분장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술부·법무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무총리실장과 관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식품안전관리는 품목별·취급단계별로 분산되어 있다. 이 중 농수축산식품의 안전관리는 취급단계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로 이원화되며, 일부 품목의 안전관리기능이 부처별 특성에 따라 분산되어 있다<표 2-3>.

표 2-3. 우리나라의 농·수·축산식품 위험관리

| 구분               |          | 1차 생산         |             | 2차 생산      |             | 유통<br>(보관·운반 등) | 소비<br>(최종판매단계)     |
|------------------|----------|---------------|-------------|------------|-------------|-----------------|--------------------|
|                  |          | 재배·사육·양식<br>등 | 수입          | 국내가공       | 수입          |                 |                    |
| 농<br>산<br>식<br>품 | 정 책      | 농식품부          | 식약청         |            |             |                 |                    |
|                  | 지도<br>단속 | 농식품부<br>지자체   | 식약청         | 식약청<br>지자체 | 식약청         | 식약청<br>지자체      |                    |
| 수<br>산<br>식<br>품 | 정 책      | 농식품부          |             | 식약청        |             |                 |                    |
|                  | 지도<br>단속 | 농식품부          |             | 식약청<br>지자체 | 식약청         | 식약청<br>지자체      |                    |
| 축<br>산<br>식<br>품 | 정 책      | 농식품부          | 농식품부<br>식약청 |            |             |                 |                    |
|                  | 지도<br>단속 | 농식품부<br>지자체   | 농식품부        | 농식품부       | 농식품부<br>지자체 | 농식품부<br>지자체     | 농식품부<br>식약청<br>지자체 |

- 주 1) 이 밖에 교육과학기술부(학교급식), 국방부(군납), 국세청(주류), 환경부(먹는 물)  
 2)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함.

자료: 이철호(2008); 신경희(2008) 참조.

농산식품의 안전관리는 생산단계는 농림수산식품부, 출하 후 가공, 유통, 소비단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한다.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는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비단계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다. 수산식품은 생산단계와 비·단순가공 수입을 제외하고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소관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물, 기획재정부(국세청) 주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군납 및 군부대 내 식품안전관리는

국방부 소관이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식품안전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며, 안전성 조사, 감시·감독 등의 집행업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농촌진흥청, 국립수산물검사원 등의 소속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식품안전 관련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은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검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대부분의 기관은 지방에 별도의 지원, 출장소 또는 지방청을 설치·운영한다<표 2-4>.<sup>15</sup>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 관련 정책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는 크게 식품안전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위생 및 농업 관련 부서와 안전성 조사와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식품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안전 및 위생관련 지도·단속이며 이 밖에 식품관련업의 인허가, 안전성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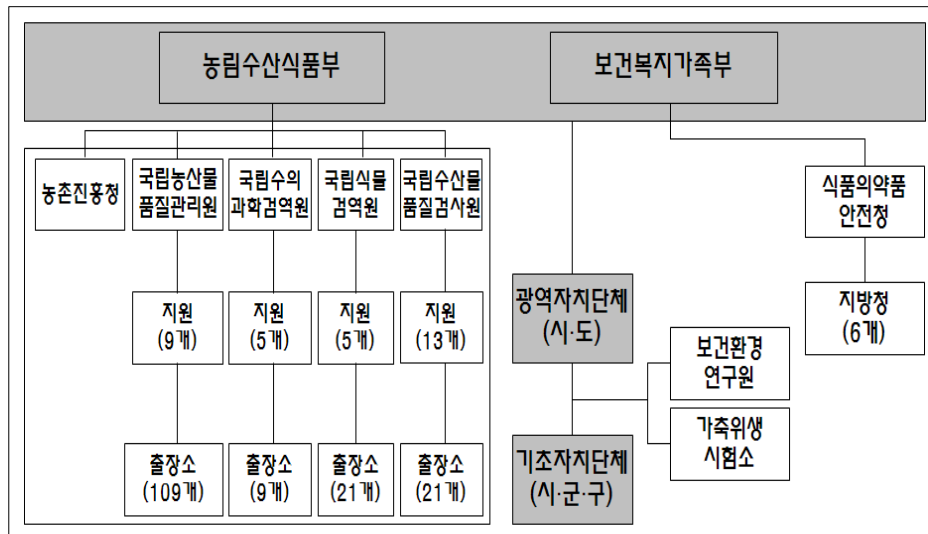
<sup>15</sup> 2009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본원과 9개 지원, 109개 출장소의 1,427명의 인원이 1차 생산단계 농산물 검사 및 품질관리를 담당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본원과 13개 지원, 21개 출장소가 있으며, 총 254명이 1차 생산단계, 신선 수입수산물 검사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5개 지원 9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591명의 인원이 축산식품위생관리, 동물약품관리 및 동물 검역·방역업무를 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원은 본원과 5개 지원 21개 출장소의 432명이 식물검역업무를 수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본청 외에 6개의 지방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1,401명의 인원이 식품안전 기준 설정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2-4. 주요 식품안전관리기관의 역할

| 구분          |            | 역할                                         |
|-------------|------------|--------------------------------------------|
| 농림수산<br>식품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축산식품위생관리(인수공통전염병관리 포함), 동물약품관리, 동물 검역·방역 등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차 생산단계 농산물 검사 및 품질관리                      |
|             | 국립식물검역원    | 식물검역                                       |
|             | 농촌진흥청      | 식품안전 관련 연구, 농약 등록 및 관리                     |
|             | 국립수산물검사원   | 1차 생산단계, 신선 수입수산물 검사 및 품질관리                |
| 보건복지<br>가족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일반식품 위생관리, 식품첨가물·색소·농약 등 기준설정              |
| 환경부         |            | 수질 기준설정 먹는 물 관리                            |
| 국방부         |            | 군납 및 군부대 내 식품안전관리                          |
| 기획재정부       | 국세청        | 주류 관리                                      |
| 교육과학기술부     |            | 학교급식 관리                                    |

주 1) 국방부는 식품안전기본법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서울대학교(2008)

그림 2-4. 식품안전관리체계



주 1) 제주도는 보건환경연구원 대신에 환경자원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음.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며,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관명이 다른 경우가 일부 존재함.



## 1.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1.1.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제1조(목적)에는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특정하여 언급한 규정은 많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규정에는 제4조(책무)와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가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은 법 제4조와 제6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와 함께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실시할 책무를 부여하고,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행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포괄적인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염두에 둔 역할이 일반적인 책무의 귀속과 행정계획의 수립기능이라는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행정체계에 있어서 국가와 함께 중요한 주체이며 중앙행정기관이 세운 계획을 집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관 내에서 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권한은 기본법의 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결

정된다.<sup>16</sup> “식품안전기본법”은 이 밖의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정하여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관계행정기관’의 범주에 속하는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권한을 부여하거나 개별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식품안전기본법”만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행정기관’으로서 어떤 구체적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식품안전기본법”상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역할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식품 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 15조(긴급대응)에 의해 긴급대응방안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대응이 필요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처분(제16조), 검사명령(제17조), 추적조사(제18조)를 할 수 있다.<sup>17</sup> 이 밖

<sup>16</sup> 식품안전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기본법”과 다른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집행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행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식품사업자나 영업자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다수인데 이것이 식품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경우 지방자치법상 이는 “식품안전기본법” 내지 개별법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기본법”상 포괄적인 책무를 부여받고, 계획수립 권한을 갖지만, 구체적으로 집행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매우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식품안전기본법”은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선언한 바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sup>17</sup> 생산·판매금지 처분제도란 관계행정기관장이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에 법 제19조(식품회수제도)에서는 식품 회수계획 및 회수현황을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에 공개하도록 한다.<sup>18</sup>

## ■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식품안전기본법”은 위해성평가(제20조), 신종식품의 안전관리(제21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22조) 등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능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권한으로 귀속시킨다. ‘관계행정기관장’의 책무는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시험·분석 또는 연구를 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한된다(제23조).

## ■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는 ‘정부’가 식품 등의 안전정보의 관리와 공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식품 등의 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그러나 법상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제26조는 정보공유와 공개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들 상호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밖에 제27조에 ‘관계

---

해당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관계행정기관’은 생산판매금지처분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금지해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을 통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긴급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식품 등의 생산판매금지는 신속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른 해제는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sup>18</sup> “식품안전기본법”은 추적조사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계행정기관장’은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장이 있는 때에는 합동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함께 추적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추적조사의 주도 기관이나 협조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다.

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식품 등의 안전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시설투자, 연구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3-1. 식품안전기본법상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범위             |                      |                |                |
|-----------------------|--------------------------|------------------|----------------------|----------------|----------------|
|                       |                          | 중앙<br>정부<br>(국가) | 관계<br>중앙<br>행정<br>기관 | 관계<br>행정<br>기관 | 지방<br>자치<br>단체 |
| 제1장 총칙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                | ●              |
|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                  | ●                    |                | ●              |
| 제3장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 제15조(긴급대응)               | ●                | ●                    | ●              |                |
|                       | 제16조(생산·판매 등의 금지)        |                  |                      | ●              |                |
|                       | 제17조(검사명령)               |                  |                      | ●              |                |
|                       | 제18조(추적조사 등)             |                  | ●                    | ●              |                |
|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 제20조(위해성평가)              |                  | ●                    |                |                |
|                       | 제21조(신종식품의 안전관리)         |                  | ●                    |                |                |
|                       | 제22조(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 ●                    |                |                |
|                       | 제23조(시험·분석·연구기관의 운용 등)   |                  |                      | ●              |                |
| 제5장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 제24조(정보공개 등)             | ●                | ●                    | ●              |                |
|                       | 제25조(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                  | ●                    |                |                |
|                       | 제27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                  |                      | ●              |                |
| 제6장 소비자의 참여           | 제28조(소비자의 참여)            |                  |                      | ●              |                |
|                       | 제30조(포상금 지급)             |                  |                      | ●              |                |

## ■ 소비자의 참여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취지 중 하나는 식품안전행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제28조는 ‘관계행정기

관의 장'이 소비자를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건을 갖추어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장은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법령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30조).

## 1.2. 식품안전관련법령<sup>19</sup>

### 1.2.1. 농림수산물식품부 소관 법률

#### 가. 농산식품

#### ■ 농산물품질관리법<sup>20</sup>

“농산물품질관리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배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식품안전과 관련이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권한배분의 상태를 보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권한을 갖는 영역이 대부분이고, 일부 제한된 범위에서 광역지자체장이 권한을 가지며,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은 매우 적다<부표 2-1>.

기준의 설정, 위해성 평가 등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단독으로 권한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는 안전성조사 및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와 관련 조치, 과태료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권

<sup>19</sup> 부록 2 참고.

<sup>20</sup>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은 2009년 6월 9일 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2009년 12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정법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배분은 현행법과 거의 변화가 없다.

한을 갖는다.<sup>21</sup>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은 시행령 제32조의 권한의 위임 규정에서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기초지자체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농산물의 표준규격, 품질인증, 우수농산물관리인증, 지리적 표시의 등록, 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등을 통해 전통적인 규제보다는 정부가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된 권한은 대부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단독으로 갖고 있다. 식품안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제의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단독 권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규정한 예는 원산지표시의무의 집행이 있다(제18조). 원산지표시의무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 등을 수거·조사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이나 위반 농산물의 거래행위 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동시에 갖는다.

이 밖에 식품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제도에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제12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광역지자체장이 동시에 권한을 갖는다.<sup>22</sup>

<sup>21</sup> 다른 개별법들의 경우 통상 인·허가, 신고 권한 등의 진입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갖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진입규제 제도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부여된 경우가 더욱 적다.

<sup>22</sup>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자재 등과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된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식중독균 및 항생물질 등의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안전성조사계획도 두 기관이 매년 독자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지역 및 대상품목과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20조).

## ■ 기타 법률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제조업의 등록과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진입 규제, 사료의 성분등록 및 그 취소 등의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보유한다<부표 2-2>.<sup>23</sup> 이 밖에 ‘과징금’의 부과권한 역시 광역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단독으로 정한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순수한 제재적 조치로서 제조업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징금이 유일한 행정제재수단이다. 따라서 이 권한을 광역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여받은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로 규제기준 설정과 조사에, 그리고 그 집행에 관한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분장시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 사료검사를 실시할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에 동시에 부여된다.

“염관리법”은 진입규제가 거의 전부로서 규제 자체가 단순한 구조를 가진다<부표 2-3>. 광역자치단체로의 권한 집중은 “염관리법”에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염관리법”상 광역자치단체는 염제조업 등의 허가과 허가 취소의 권한을 가지는데 비해 기초자치단체는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검사기관 지정과 취소 및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 품질검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다.

앞선 “농산물품질관리법”, “사료관리법”, “염관리법”에 비해 “농약관리법”과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비료관리법”에서는 대부분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제한적이다<부표 2-4><부표 2-5><부표 2-6><부표 2-7>. 이에 비해 “친환경육성법”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거의 동일하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권

<sup>23</sup>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축산식품의 안전성에 직결되는 사료의 안전성확보를 통해 식품안전에 기여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한이 대부분 중앙정부에도 동시에 귀속된다<부표 2-8>. 사료제조업의 등록 및 취소 등이 광역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사료관리법”에 비해 “농약관리법”, “양곡관리법”, “비료관리법” 등에서는 관련업의 인허가 및 이의 취소권한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다. 과태료 부과권한은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에 동시에 귀속된다. 광역자치단체는 “농약관리법”에서는 유통농약의 검사와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요청 등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며, “양곡관리법”에서는 명예감시원의 설치에 대한 권한만을 가진다. 또한 “비료관리법”에서는 비료의 공급, “인삼산업법”에서는 인삼산업진흥시책 강구와 사업비 보조에만 역할이 국한된다.

## 나. 축산식품

###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일부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한 권한을 지니며 이러한 권한이 중앙정부에도 동시에 귀속된다<부표 2-9>.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이 동시에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기술·정보제공과 교육훈련 실시가 있다.

진입규제의 경우 규제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나 도축업,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진입규제 권한은 광역지자체장이,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갖는다.<sup>24</sup> 진입규제 중 축산물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밖에 법 제27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

<sup>24</sup> 진입규제권한은 인·허가, 신고 권한을 통해 사전에 규정된 법령상 인허가 기준이나 행정기관이 재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공익적 요소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시장에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행위규제권한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미 정립해준 행위기준을 잘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 등을 하는 권한이다.

단체장과 함께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받는다. 감독권한으로서, 시설개수명령, 법령에 위반한 축산물의 압류, 폐기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축산물의 원료·제조방법·성분 또는 배합비율의 변경명령, 공표명령, 영업소폐쇄명령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동시에 그 권한을 갖는다. 제44조는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시·도지사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sup>25</sup>

## ■ 기타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마찬가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이 동시에 귀속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에는 가축방역에서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살처분 명령, 도태권고, 발굴금지, 축사 등의 소독과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이 있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와 동시에 갖는다 <부표 2-10>.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험발생 시 일정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제52조).<sup>26</sup>

<sup>25</sup> 시행령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1개의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하며, 시·도지사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품목제조 보고를 받을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

<sup>26</sup>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5조 제1항(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 제16조(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제17조(소독설비 구비),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제20조(살처분명령), 제21조(도태의 권고), 제

“축산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된 편이다<부표 2-11>. 중앙행정기관만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는 가축의 등록 및 검정, 동물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축산물 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축산물등급판정 등이 있다. 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은 주로 가축개량 및 인공수정 등(제2장)과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제4장)에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축산물의 수급 등(제3장)에서 축산업의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지닌다. 중앙정부는 가축보호, 수정사의 교육 경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축시장 영업정지 처분 요청과 도매시장 법인 등에 대한 감독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 다. 수산식품 및 식품산업일반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중앙정부에 대부분의 권한이 집중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을 부여한다<부표 2-12>. 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설정과 인증제도의 실시, 지정해역제도의 기준정립과 그 집행, 수산물의 검사 및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권한이 대부분 중앙행정기관(농림수산식품부)에 집중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진입규제권한과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권한(제13조의2) 등 일부 법집행권한이 부여되고 있을 뿐이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안전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식품안전과 간접적으로 관련된다<부표 2-13>.<sup>27</sup> 이에 따라 식품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매우 제한적으

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제28조(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7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만 존재한다. 제19조의 식품성분조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도,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원 등이 식품안전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이다. “식품산업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대부분 중앙정부 역시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는다.<sup>28</sup> 예를 들어 식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양성기관의 지정·관리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동시에 권한을 갖는다.

## 12.2.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률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법률 중 식품안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률은 “식품위생법”이다.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이 있으며, “약사법”은 특례조항(제85항)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가.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을 집행하는 주된 중앙행정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다<부표 2-14>.<sup>29</sup> “식품위생법”상 식약청장과 지자체장의

<sup>28</sup>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단독으로 부여받은 권한에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심의, 식품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등이 있다.

<sup>29</sup> “식품위생법”은 전통적인 식품안전행정의 중심을 이루어 온 법률로서, 그 목적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주된 규율대상은 식품의 가공·유통과정으로서, 식품·식

권한 배분상태를 보면, 규제기준의 정립기능이나 위험평가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거의 독점한다.<sup>30</sup> 출입·검사·수거 등 기본적인 규제집행권한은 식약청장과 지자체장에게 동시에 부여된다.<sup>31</sup>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등 위험관리와 관련된 권한은 대부분 식약청장에게 단독으로 맡겨져 있으며, 위험관리수단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인정되는 제도는 위생등급제도이다.<sup>32</sup> 식약청장 또는 기초지자체장은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식품위생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식품의 검사, 영업 허가 와 위해요소중점관리에 따른 검사 면제, 영업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와 과태료 부과 등에 있다. 대부분의 역할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동시에 귀속된다. 그러나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시민식품감시인 위촉, 영업제한 등에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위생 등급에 의한 우수·모범업소 지정 취소권한, 집단급식소 신고와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다.

---

품첨가물·기구, 용기·포장 등에 관한 것이다. “식품위생법”은 그 자체가 정책수립에 관한 법률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규제의 집행에 관한 법률이다.

<sup>30</sup> 식약청장은 다양한 규제기준을 정립하여 고시할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한다. 이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그리고 이들에 대한 표시기준, 식품의 영양표시기준 등이 포함된다. (제7,9조) 식약청장은 이러한 기준들을 수록한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sup>31</sup> 규제집행기능에 있어서 식약청장과 지자체장이 권한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권한배분의 실제 기준은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지침」이 제시한다.

<sup>32</sup>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의 경우 규제기준의 정립뿐만 아니라,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동 기준의 적용업소의 지정 및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그러한 영업자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지원, 그 준수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지정 취소나 시정명령의 권한도 식약청장의 단독 권한으로 되어 있다.

## 나. 기타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동시에 귀속된다<부표 2-15>. “약사법”에서는 약사의 자격과 면허 및 사후교육,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의약품의 취급기준 설정 등은 중앙정부가 하고, 이러한 기준들을 집행하는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한다<부표 2-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진입규제에 있어서 허가대상영업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신고대상영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부표 2-17>.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가진다. 관련 기준과 규격의 정립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그 집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권한을 가진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률 중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등은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다<부표 2-18><부표 2-19>. “국민건강증진법”과 “전염병예방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이법 제7조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자에 해당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취소하도록 한다. 특기할 사항은 “전염병예방법”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 12.3. 기타 부처 소관법률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법률을 제외한 법률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률에는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이 있다<부표 2-20><부표 2-21>.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시설 설비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광역

과 기초자치단체에 동시에 역할을 부여하는 반면 학교급식 운영평가, 출입·검사·수거, 행정처분의 요청,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게 동시에 권한을 부여한다. “학교보건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지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광역자치단체에게만 해당된다.

환경부 소관의 “먹는 물 관리법”에서는 대부분의 의무와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있다<부표 2-22>.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먹는 물 수질 감시원의 설치에만 있으며, 중앙정부도 먹는 물의 수질관리(수질검사), 출입·검사·수거,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 밖에도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주세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부표 2-23><부표 2-24><부표 2-2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다만 제5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업표준화법”은 농축산물가공식품에 대한 권한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 2.1. 식품안전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례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조례는 지역별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 학교급식지원, 친환경농업육성, 우수농산물관리 등 다양한 목적하에서 제정된다<표 3-2> <부록 4>. 이 중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식품안전관련법규에는 식품안전기본조례가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식품안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들 식품안전기본조례는 기본적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을 바탕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 기본조례는 2008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는 2009년 3월 2일, 인천광역시는 6월 8일에 제정되었다. 이들 조례는 공통적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장, 사업자, 자치구청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의 사항과 함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체계, 식품안전의 조사·연구 및 지원, 정보공개 및 소비자의 참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식품안전기본조례 이외의 대표적인 식품안전 관련 법규에는 식품진흥기금과 학교급식지원 관련 조례가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마련과 이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일반적으로 우수 식재료 사용, 급식시설·설비 확충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밖에 지자체별로 친환경 농업, 농산물품질관리 인증, 농산물 검사, 가축 안전·위생,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수산물 안전·위생 등 식품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들을 제정하였다.

표 3-2. 광역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

|       | 식품안전<br>기본조례 | 식품진흥<br>기금관리<br>·운영 등 | 학교급식<br>지원 | 친환경<br>농업 | 농산물<br>품질관리<br>·인증 | 농산물<br>검사 | 가축<br>안전·위생 | 음식점<br>등 식품<br>접객업 | 수산물<br>안전·위생 |
|-------|--------------|-----------------------|------------|-----------|--------------------|-----------|-------------|--------------------|--------------|
| 광주광역시 |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 ●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경기도   |              | ●                     | ●          | ●         | ●                  |           |             |                    |              |
| 충청북도  |              | ●                     | ●          |           | ●                  |           | ●           |                    |              |
| 충청남도  |              | ●                     | ●          | ●         | ●                  |           |             |                    |              |
| 전라북도  |              | ●                     | ●          |           | ●                  |           | ●           |                    |              |
| 전라남도  |              | ●                     | ●          | ●         | ●                  |           |             | ●                  |              |
| 경상북도  |              | ●                     | ●          |           | ●                  |           | ●           |                    |              |
| 경상남도  |              | ●                     | ●          |           | ●                  |           | ●           |                    |              |
| 강원도   |              | ●                     | ●          |           | ●                  |           |             |                    |              |
| 제주도   |              | ●                     | ●          | ●         |                    |           | ●           | ●                  | ●            |

## 2.2. 식품안전행정<sup>33</sup>

### 2.2.1. 조직적 측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유사하게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보건위생과 농업 관련부서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한다. 보건위생 부서에서는 보건, 농업 부서에서는 산업진흥을 포함한 생산 및 유통관련 업무와 함께 식품안전 관련 업무가 이루어진다.

광역자치단체는 대체로 본청에 설치된 부서에서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sup>33</sup> 현장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수행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보건소 또는 농업기술관리센터의 부서에서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민원 관련 부서에서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식품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다른 산업의 인허가 업무와 통합하여 별도의 부서에서 시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부서의 이원화와 전담부서 부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을 더욱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 중 일부 또는 전체를 통합하여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식품안전 관련 업무에 어느 정도 독립성을 부여시키는 경우도 있다.

사례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유형은 크게 ① 분리형 ② 완전통합형 ③ 부분통합형 ④ 독립성부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리형은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농업부서와 보건위생부서 등에서 분리하여 수행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완전통합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특별시가 있다. 서울특별시는 자치단체 중 최대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소비 중심의 광역자치단체로 생산단계보다는 유통단계의 식품안전 관련 업무가 많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단계의 식품안전 관련 업무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지 않아 이원화된 부서의 설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식품안전추진단’에서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부분통합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도가 있다. 경기도는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광역자치단체로 생산 및 유통단계의 안전 관련 업무가 공존함에 따라 서울시에서와 같이 관련 부서를 완전히 통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는 기존의 농업 및 보건위생 부서에서 단속 관련 업무만을 통합하여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에서 수행한다.<sup>34</sup> 이 밖에 안동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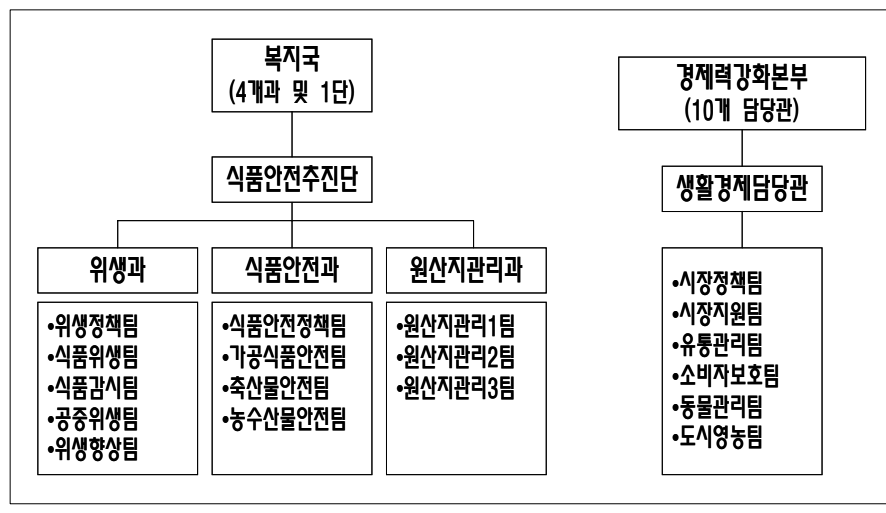
<sup>34</sup> 2008년 10월에 농수축산물 및 식품위생 관련 전문 공무원을 포함하는 T/F팀으

경우 완전통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안동시는 행정산업경제국 내에 식품산업과에서 식품산업 발전과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한다. 식품산업과는 식품산업, 전통음식,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등으로 업무가 구분된다.

#### ■ 통합적 조직 운영 사례-완전통합형

- 서울특별시의 식품안전 관련 부서에는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과 경제력강화본부의 생활경제담당관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품안전관리업무는 식품안전추진단에서 이루어진다. 식품안전추진단은 위생과, 식품안전과, 원산지관리과로 구성된다.<sup>35</sup>

그림 3-1.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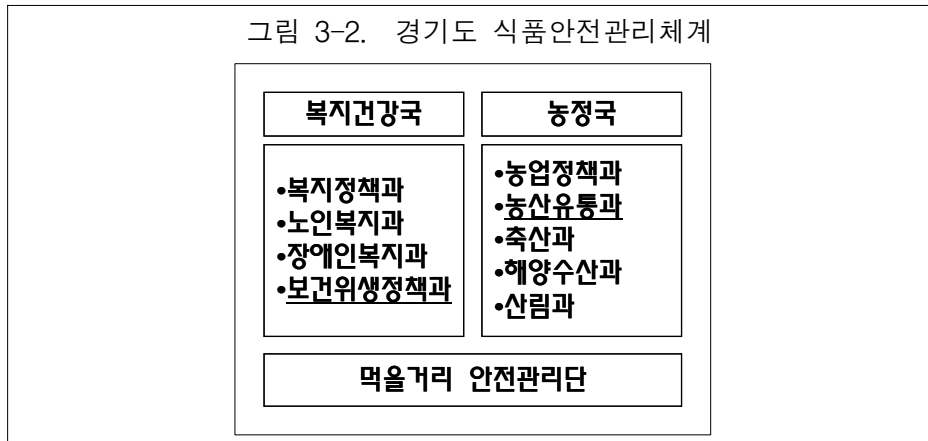
#### ■ 통합적 조직 운영 사례-부분통합형

- 경기도는 복지건강국과 농정국에서 담당하는 농수축산식품의 안전성 관련 업무 중에서 단속업무를 분리하여 T/F팀 성격의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에서 수행한다.
  - '먹을거리 안전단'은 2008년 10월에 농수축산물 및 식품위생 관련 전문공무원을 주축으로 설립되어, 대형마트·백화점·도매시장 등 유통매장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검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 활동 등을 한다.

로 출발하였다.

<sup>35</sup> 복지국에는 식품안전추진단 산하의 위생과, 식품안전과, 원산지관리과 이외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과 등이 있다.

그림 3-2. 경기도 식품안전관리체계



독립성부여형에는 경북도청과 인천광역시가 있다. 이들 지자체는 기존의 보건복지부서 내에서 식품안전 관련 기능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별도의 단위조직을 운영한다. 그러나 농업부서의 식품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있지는 않다. 경북도청은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식약품안전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위생정책과를 보건정책과와 분리하여 운영한다.

관련 정책 집행 등의 행정업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되며, 축산위생 연구소가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축산 분야의 안전·위생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별도의 식품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기관을 두고 있지는 않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위생부서와 연계되어 전염병관리, 식품의약품 검사,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검사 등 보건, 환경 관련 검사·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일부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매시장 내에 검사소를 설치하여 농식품의 잔류농약 검사, 유통식품 수거 및 현장 조사 등 농수축산물 유해물질 현장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서울특별시, 인천, 대전, 부산, 경기도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농산물 검사소를 설치하여 도매시장의 농산물 검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사례조사 결과 농업관련 부서는 독자적으로 이러한 지원기관을 갖추고 있지 않아 대

부분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별도로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2.2.2. 업무적 측면

지방자치단체는 연임이 가능한 4년 임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 사무를 집행한다. 사례 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이 ‘지역 온정주의’로 인한 안전관리 업무의 약화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식품안전관련 업무에 있어서 시도·단속업무는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수행되며, 식품관련업에 대한 인허가는 업종별로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이다<표 3-3><표 3-4><부록 5>.

식품관련업에 대한 인허가의 경우 법률상에 소관기관이 명시되어 있어 비교적 관련 업무가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기타 원산지 관리, 농식품 안전성 조사를 포함한 시도·단속 기능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성 검사업무가 중복된다. 사례 조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업무 중복은 주로 중앙행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및 지방출장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청의 운영에 기인하며,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저하가 이러한 업무 중복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sup>36</sup>

이러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기능 중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도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중앙행정기관에 협조하는데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9개 지원, 109개 출장소를 설치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농수축산물 품질

<sup>36</sup>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무중복 등을 피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지침을 통해 업무를 어느 정도 분담시키고 있다<부록 3>.

인증, 원산지표시 관리 등의 감시·단속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부서의 식품안전관련 기능은 제약적이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에 대한 협조의 성격에 머무르고 있다. 2007년 원산지 단속 실적을 통해 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3만 6,704개소를 단속하여 4,374건을 적발한데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9만 8,759개소를 단속하여 75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는데 그치고 있다.

표 3-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식품안전관리 업무

| 중앙정부            |                                                                                                                                                                                                                                                      | 지방자치단체                                                                                                                                                                |                                                                                                                                            |
|-----------------|------------------------------------------------------------------------------------------------------------------------------------------------------------------------------------------------------------------------------------------------------|-----------------------------------------------------------------------------------------------------------------------------------------------------------------------|--------------------------------------------------------------------------------------------------------------------------------------------|
|                 |                                                                                                                                                                                                                                                      | 광역시                                                                                                                                                                   | 기초                                                                                                                                         |
| 농림<br>수산<br>식품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 관련 정책 수립</li> <li>◦ 식품안전 관련 기준 설정</li> <li>◦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li> <li>◦ 소관업종 인허가</li> <li>◦ 소관업종 지도·단속</li> <li>◦ 원산지 관리</li> <li>◦ 농수축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li> <li>◦ 축산물 검역·검사</li> <li>◦ 방역업무 총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li> <li>◦ 소관업종 인허가</li> <li>◦ 소관업종 지도·단속</li> <li>◦ 지역 내 원산지표시 관리</li> <li>◦ 지역 내 농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업종 인허가</li> <li>◦ 소관업종 지도·단속</li> <li>◦ 지역 내 원산지표시 관리</li> <li>◦ 지역 내 농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 관련 정책 수립</li> <li>◦ 식품안전 관련 기준 설정</li> <li>◦ 소관업종 인허가</li> <li>◦ 모든 업종에 대한 지도·단속</li> <li>◦ 전국적 유통식품 단속</li> <li>◦ 유해물질 관리</li> <li>◦ 감시·단속 가이드라인 개발</li> <li>◦ 전국적 식품회수 총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업종 인허가</li> <li>◦ 소관업종 지도·단속</li> <li>◦ 지역 내 식품 감시</li> <li>◦ 지역 내 식품 회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업종 인허가</li> <li>◦ 소관업종 지도·단속</li> <li>◦ 지역 내 식품 감시</li> <li>◦ 지역 내 식품 회수</li> </ul>             |

주 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4월에 마련한 조직 및 기능 개편안에서 단순 인허가, 지도·단속 등의 집행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표 3-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대상 식품 관련 업종 분류

| 구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 관련법령         |
|-------|-----------|--------------------------|-----------------------------------------------|--------------|
|       |           | 광역시                      | 기초                                            |              |
| 생산    |           | 염전개발                     | 부화업, 종축업, 가축사육업                               | 염관리법<br>축산법  |
| 가공    | 단순가공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용기류제조업          | 식품위생법        |
|       |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
|       |           | 도축업, 집유업                 |                                               |              |
|       |           |                          | 양곡가공업                                         | 양곡관리법        |
|       | 제조가공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                                               | 축산물가공처리법     |
|       |           | 선상수산물가공업                 | 선상수산물가공업, 어유(간유)가공업, 냉장냉동업                    | 수산물품질관리법     |
|       |           | 염제조업                     |                                               | 염관리법         |
|       |           |                          | 인삼류제조업                                        | 인삼산업법        |
|       |           | 주류제조업                    |                                               | 주세법          |
|       |           | 정수기제조업                   | 먹는샘물제조업, 수처리제조업                               | 먹는물관리법       |
| 보관·운반 | 식품조사처리업   |                          | 식품운반업,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위생법        |
|       |           |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가공처리법     |
| 판매    | 식품등수입판매업  |                          |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위생법        |
|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
|       |           |                          | 계란집하업                                         | 축산법          |
|       |           |                          |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가공처리법     |
|       |           |                          | 양곡판매업                                         | 양곡관리법        |
|       |           |                          |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 | 주세법          |
|       |           | 먹는샘물수입판매업                | 정수기수입판매업                                      |              |
| 소비    |           |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

- 주 1) 어유(간유)가공업의 경우 부산시는 부산광역시장, 기타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임.  
 2) 선상수산물가공업의 경우 원양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산시는 부산광역시장, 기타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임.  
 3) 식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함.  
 4) 인삼류제조업은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산지 지도·단속 등 일부 식품안전기능의 경우 담당인원에 비해 업무 부담이 과중한 측면이 있다. 사례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농업부서는 대체적으로 원산지관리 담당이 1명 정도에 불과하다. 보건부서도 위생관리 업무량에 비해 담당인원이 충분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도·단속 업무의 경우 식품, 위생관련 전문교육을 받았거나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 직원을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임명하여 투입한다.<sup>37</sup> 그러나 해당 업무의 부담이 과중하여 소비자, 시민단체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 등으로 위촉하여 단순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한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 현재 직원 중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은 28명, 축산물위생감시원은 5명 내외이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시민단체 회원과 대학생 등 420명을 위촉하여 지도·단속 등에 투입하고 있다.<sup>38</sup>

37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을 만족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②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조리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③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이다.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자격을 인정한다.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2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① 위생사·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②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③ 1년 이상 축산물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한다.

38 서울시는 2009년 현재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총 3,098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두고 있다.

### 3.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을 법률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식품안전행정에 관한 책무를 국가와 함께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는다. 즉, 식품안전기본법은 원칙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식품안전행정의 공동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전적으로 개별법에 맡긴다.

둘째, 개별법의 경우 대체로 정책 수립 및 규제기준 정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이며, 정책 및 규제기준의 집행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단순한 규제집행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한다. 규제집행에 있어서 진입규제권한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며 행위규제권한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지자체 고유 업무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안전성 조사 및 지도·단속 등을 포함한 일부 업무는 중앙정부와 중복되어 수행한다. 이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예컨대 안전성 검사 기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동시에 수행되며, 기타 지도·단속 기능도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동시에 수행된다.

이러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기능 중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도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중앙행정기관에 협조하는데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 안전성 조사,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가 보건복지와 농업 관련 부서로 이원화됨에 따라 더욱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시민단체 회원을 시민감시원으로 두고 위생, 원산지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한다. 그러나 이들을 전문적인 업무에 투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 조직을 통합하거나 기존의 조직에서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사례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건위생 부서보다 농업관련 부서가 식품안전관리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위생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하여 식품의 안전성 검사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비하여 농업 관련 부서는 독자적인 지원기관을 갖추고 있지 않아 원활한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농업 관련 부서의 경우 부서의 특성상 지역농업 지원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강력한 식품안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1. 소비자의 평가

이 장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sup>39</sup> 소비자 조사는 2009년 6월에 인터넷을 통해 시행하였다.

### 1.1.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 ■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식품안전기본법”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2008년 6월 13일 제정되

| 구분   |           | 명(%)      | 구분 |                  | 명(%)      |
|------|-----------|-----------|----|------------------|-----------|
| 성별   | 남자        | 150(50.0) | 나이 | 20~30세 미만        | 60(20.0)  |
|      | 여자        | 150(50.0) |    | 30~40세 미만        | 80(26.7)  |
| 학력   | 고졸 이하     | 81(27.0)  |    | 40~50세 미만        | 80(26.7)  |
|      | 대졸 이상     | 219(73.0) |    | 50세 이상           | 80(26.7)  |
| 월소득  | 300만원 미만  | 109(36.3) | 직업 | 사무직              | 174(58.0) |
|      | 300~499만원 | 101(33.7) |    | 전업주부             | 54(18.0)  |
|      | 500만원 이상  | 90(30.0)  |    | 학생/무직            | 20(6.7)   |
| 결혼유무 | 미혼        | 70(23.3)  |    | 전문직/자영업/자유직/서비스직 | 52(17.3)  |
|      | 기혼        | 230(76.7) |    |                  |           |

<sup>39</sup>

어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소비자의 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식품 등과 관련된 법률의 일반법 및 기본법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 소비자의 57.7%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잘 안다’는 응답은 0.3%에 불과하였다.

표 4-1.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모른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잘 안다   | 합계         |
|-----------|-----------|--------|------------|
| 173(57.7) | 126(42.0) | 1(0.3) | 300(100.0) |

#### ■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소비자의 우리나라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농식품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2><표 4-3>.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소비자는 15.6%(47명)에 불과하다. 또한 농식품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소비자의 12.7%(38명)만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2.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

단위: 명(%), 점

| 매우 낮음   | 낮은 편임    | 보통        | 높은 편임    | 매우 높음  | 합계         |
|---------|----------|-----------|----------|--------|------------|
| 10(3.3) | 85(28.3) | 158(52.7) | 46(15.3) | 1(0.3) | 300(100.0) |

표 4-3. 농식품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도

단위: 명(%), 점

| 매우 낮음   | 낮은 편임    | 보통        | 높은 편임    | 매우 높음  | 합계         |
|---------|----------|-----------|----------|--------|------------|
| 13(4.3) | 91(30.3) | 158(52.7) | 36(12.0) | 2(0.7) | 300(100.0) |

## ■ 농식품 안전관리의 개선 방향

현재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농식품 안전 관련 검사체계’라는 의견이 29.2%로 가장 높았다. ‘농식품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28.8%로 높은 편이었다<표 4-4>.

표 4-4.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사항

단위: %

| 구분            | 비중    |
|---------------|-------|
| 안전관련 검사 체계 개선 | 29.2  |
| 안전기준 강화       | 28.8  |
| 안전관리 시스템 정비   | 19.8  |
|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화  | 15.2  |
| 안전관련 인력의 확충   | 7.0   |
| 합계            | 100.0 |

주 1) 비중은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원칙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원칙에 대해서는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일관적 관리’라는 의견이 39.3%였다<표 4-5>. 또한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신속하고·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와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농식품 안전관리에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원칙

단위: %

| 구분                | 비중    |
|-------------------|-------|
|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일관적 관리 | 39.3  |
| 신속·사전예방 중심의 관리    | 22.7  |
|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관리 | 22.3  |
|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관리    | 15.7  |
| 합계                | 100.0 |

주 1) 비중은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1.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 평가

###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효율적인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점 척도 기준 평균 4.15점)<표 4-6>. 또한 소비자들은 사실상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표 4-7>. 소비자의 45.3%는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낮다고 응답한 반면, 역량이 높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하여 큰 대조를 보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표 4-6.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기관별 역할의 중요도

단위: 점

| 구분 | 중앙정부의<br>역할 | 광역자치단체의<br>역할 | 기초자치단체의<br>역할 | 평균   |
|----|-------------|---------------|---------------|------|
| 점수 | 4.15        | 3.93          | 3.91          | 4.00 |

주 1) 점수는 5점 척도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중요하지 않은 편임 2, 보통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함 5를 항목별로 계산하여 평균한 수치임.

표 4-7.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단위: 명(%), 점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합계         |
|---------|-----------|-----------|----------|--------|------------|
| 18(6.0) | 118(39.3) | 123(41.0) | 39(13.0) | 2(0.7) | 300(100.0) |

## ■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의 저해 요인 및 개선 사항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농식품 안전성 검사·조사기관과 인력 육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검사 및 조사기관 등 지원기관의 미비’(46.0)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8>. 이 밖에 ‘지역 온정주의’(20.2%), ‘인력부족’(16.7%), ‘관련 예산 부족’(16.2%)의 순이었다. 또한 농식품 안전행정 체계에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전성 검사·평가 기반 정비’(21.7%), ‘담당 인력의 전문성 향상’(20.2%)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9>.

표 4-8.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 저해 요인

단위:%

| 구분                  | 비중    |
|---------------------|-------|
| 검사 및 조사기관 등 지원기관 미비 | 46.0  |
| 지역 온정주의             | 20.2  |
| 인력 부족               | 16.7  |
| 관련 예산 부족            | 16.2  |
| 기타                  | 0.9   |
| 합계                  | 100.0 |

주 1) 비중은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표 4-9.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행정 개선 사항

단위: %

| 구분                    | 비중    |
|-----------------------|-------|
| 안전성 검사·평가 기반 정비       | 21.7  |
|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          | 20.2  |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강화  | 16.7  |
|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 강화 | 16.2  |
| 관련 예산 증액              | 0.2   |
| 기타                    | 0.7   |
| 합계                    | 100.0 |

주 1) 비중은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 개선 방향

소비자의 79.3%(238명)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을 현재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 확대 이유를 살펴보면, ‘단속·지도 등에 있어 실질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67.2%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정책 수행’이 23.9%로 뒤를 이었다<표 4-11>. 역할 축소의 이유로는 ‘인력 부족’(27.0%), ‘지역 온정주의’(27.0%)가 주로 지적되었다<표 4-12>.

표 4-10.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의 개선 방향

단위: 명(%)

|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축소할 필요가 있음 |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합계         |
|----------------|------------|------------|------------|
| 25(8.3)        | 37(12.3)   | 238(79.3)  | 300(100.0) |

표 4-11. 역할 및 권한 확대의 주요 이유

단위: 명(%)

| 구분                               | 빈도수(%)     |
|----------------------------------|------------|
| 단속·지도 등 현장 행정에 있어서 실질적 업무 집행을 위해 | 160(67.2)  |
|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 17(7.1)    |
| 지역실정에 기반한 정책 수행을 위해              | 57(23.9)   |
| 기타                               | 1.7(1)     |
| 합계                               | 100.0(283) |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 238명의 의견임.

표 4-12. 역할 및 권한 축소의 주요 이유

단위: 명(%)

| 구분                              | 비중    |
|---------------------------------|-------|
|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정책집행이 어려움          | 10.8  |
|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으로 업무 전개 어려움       | 11.7  |
|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적 업무 이루어지기 어려움    | 27.0  |
| 농식품 안전성은 지방보다는 국가 차원의 문제임       | 23.4  |
| 지역 온정주의로 단속·조사업무 등에 강력한 행정이 어려움 | 27.0  |
| 합계                              | 100.0 |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 37명의 의견임.  
 2) 비중은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통합의 필요성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 족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앙정부와 같이 농업관련부서와 보건위생관련부서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진다. 소비자들은 농식품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부서를 통합하여 일관적인 식품안전행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의 76.0%가 통합부서의 신설에 대해 찬성하였다<표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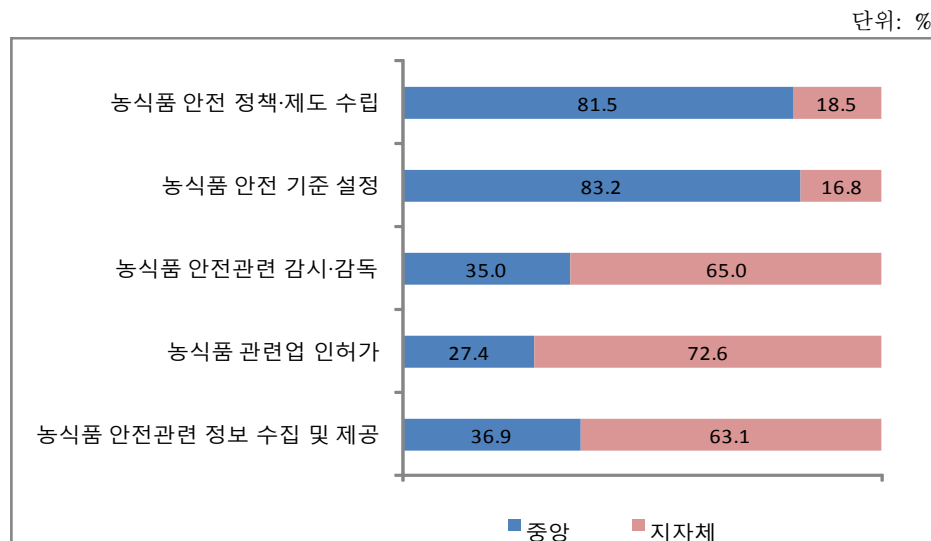
표 4-13.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통합

| 단위: 명(%)  |          |          |            |
|-----------|----------|----------|------------|
| 필요함       | 필요없음     | 모르겠음     | 합계         |
| 228(76.0) | 36(12.0) | 36(12.0) | 300(100.0) |

### ■ 농식품 안전관련 기능에 대한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방향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농식품 안전 관련 주요 기능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 및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현장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그림 4-1>. ‘농식품 안전정책·제도 수립’과 ‘농식품 안전 기준 설정’을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농식품 안전관련 감시·감독’, ‘관련업 인허가’ 등 실질적인 집행업무와 함께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이라는 의견이 60% 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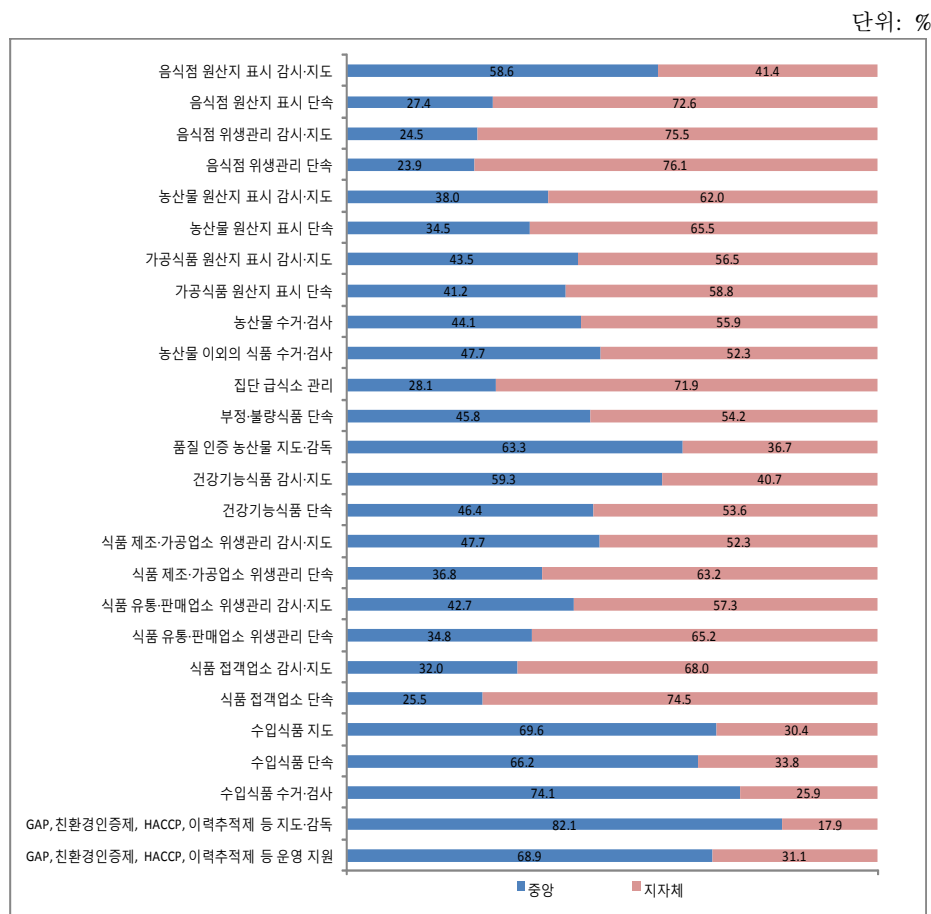
그림 4-1. 주요 농식품 안전 관련 기능의 추진 주체에 대한 소비자 의향(중복응답)



- 주 1) 도표는 소비자의 추진 주체에 대한 의견을 비율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줌.  
 2) 도표의 좌측 음영 부분은 중앙정부가 해당 기능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율을 우측 음영 부분은 지방정부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율을 표시한 것임.

세부 업무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그림 4-2>. 그러나 품질 인증 농산물,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에 관한 사항과 GAP, 친환경 농산물, HACCP, 이력추적제도 등 농산물 안전 관련 제도의 관리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비자의 63.3%는 ‘품질 인증 농산물 지도·감독’을 중앙정

그림 4-2. 세부 농식품 안전 관련 업무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 소비자 의향(중복응답)



- 주 1) 도표는 소비자의 세부 업무의 주체에 대한 의견을 비율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줌.  
 2) 도표의 좌측 음영 부분은 중앙정부가 해당 기능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율을 우측 음영 부분은 지방정부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율을 표시한 것임.

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는 ‘건강기능식품 감시·지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59.3%, ‘수입식품 지도’ 69.6%, ‘수입식품 단속’ 66.2%, ‘수입식품 수거·검사’ 74.1%, ‘GAP, 친환경 농산물, HACCP, 이력 추적제도 등의 지도·감독’ 82.1%, 이들 제도의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68.9%의 소비자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 담당공무원의 평가

농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중앙정부 공무원 11명과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20명,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sup>40,41</sup>

<sup>40</sup> 중앙정부의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식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직급은 7급 2명(18.2%), 6급 3명(27.3%), 5급 이상 6명(54.5%)이었으며, 업무담당기간은 1년 미만이 2명(18.2%), 1년 이상~5년 미만 5명(45.5%), 5년 이상 4명(36.4%)이었다.

<sup>41</sup> 설문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 빈도(%)    | 구분             |             | 빈도(%)    |
|----------------|-------|----------|----------------|-------------|----------|
| 자치<br>단체<br>유형 | 광역    | 20(28.6) | 부서<br>유형       | 농업          | 32(45.7) |
|                | 기초    | 50(71.4) |                | 보건·위생       | 38(54.3) |
| 직급             | 7~9급  | 28(40.0) | 업무<br>담당<br>기간 | 1년 미만       | 28(40.0) |
|                | 6급    | 30(42.9) |                | 1년 이상~5년 미만 | 18(25.7) |
|                | 5급 이상 | 12(17.1) |                | 5년 이상       | 24(34.3) |

## 2.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의 변화

### ■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식품안전기본법은 2008년 6월 14일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아직 완전히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4>.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에 그쳤다.

표 4-14.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단위: 명(%)  |           |
|-----------|-----------|-----------|
|           | 광역시       | 기초        |
| 모른다       | 3(15.0)   | 4(8.0)    |
| 들어본 적은 있다 | 8(40.0)   | 37(74.0)  |
| 잘 안다      | 9(45.0)   | 9(18.0)   |
| 합계        | 20(100.0) | 50(100.0) |

###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조직 내 변화 및 논의 여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조직적·행정적 변화 및 업무상의 변화 또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1.7%)<표 4-15>.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직 내 변화 또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0%에 그쳤다.

표 4-15.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후 조직 내 변화 및 관련 논의 여부  
단위: 명(%)

| 구분          | 중앙        | 광역시       | 기초        |
|-------------|-----------|-----------|-----------|
| 없었음         | 2(18.2)   | 10(50.0)  | 32(64.0)  |
| 어느 정도 있었음   | 6(54.5)   | 7(35.0)   | 17(34.0)  |
| 상당한 정도로 있었음 | 3(27.3)   | 3(15.0)   | 1(2.0)    |
| 합계          | 11(100.0) | 20(100.0) | 50(100.0) |

## 2.2.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 실태와 평가

### ■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기관별 역할의 중요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식품 안전담당자들은 우리나라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전반적으로 세 기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6>. 이 중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5점 척도 기준 평균 4.50점), 기초자치단체(평균 4.12점), 광역자치단체(평균 3.92점) 순이었다. 특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담당자들은 모두 평균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표 4-16.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기관별 역할 중요도

| 구분          | 중앙   | 광역시  | 기초   | 평균   |
|-------------|------|------|------|------|
| 중앙정부의 역할    | 4.91 | 4.25 | 4.34 | 4.50 |
| 광역시자치단체의 역할 | 3.64 | 4.10 | 3.72 | 3.82 |
|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 3.55 | 4.35 | 4.46 | 4.12 |

주 1) 점수는 5점 척도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중요하지 않은 편임 2, 보통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함 5를 항목별로 계산하여 평균한 수치임.

## ■ 지방자치단체 농식품 안전관리의 저해 요인

중앙정부의 농식품 안전 담당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을 ‘지역 온정주의’라고 한 반면(42.4%),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적인 측면을 주요한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담당인력 부족’(36.3%), 기초자치단체는 ‘전문성 부족’(36.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지방자치단체 농식품 안전관리 저해 요인

단위: %

| 구분                  | 중앙    | 광역    | 기초    |
|---------------------|-------|-------|-------|
| 전문성 부족              | 18.2  | 30.0  | 36.5  |
| 담당인력 부족             | 9.1   | 36.3  | 29.0  |
| 지역 온정주의             | 42.4  | 20.0  | 8.0   |
| 검사 및 조사기관 등 지원기관 미비 | 18.2  | 5.0   | 15.5  |
| 관련 예산 부족            | 9.1   | 8.8   | 9.5   |
| 기타                  | 3.0   | -     | 1.5   |
| 합계                  | 100.0 | 100.0 | 100.0 |

주 1)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및 업무 분담 실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업무 담당자들은 대체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수준, 자율적 결정에 의한 정책 업무의 비중, 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절성이 비교적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8>.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정책 업무의 비중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였다(5점 척도 기준 평균 2.47점).

표 4-18.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계 및 업무분담 실태

단위: 점

| 구분                   |        | 중앙   | 광역시  | 기초   | 평균   |
|----------------------|--------|------|------|------|------|
| 협력 수준                |        | 2.82 | 2.95 | 2.72 | 2.83 |
| 자율적 결정에 의한 정책 업무의 비중 |        | 2.45 | 2.60 | 2.36 | 2.47 |
| 역할 분담의 적절성           | 중앙-지방  | 3.18 | 2.70 | 2.74 | 2.87 |
|                      | 광역시-기초 | 2.91 | 2.90 | 2.74 | 2.85 |

주 1) 점수는 5점 척도에서 매우 낮음(전혀 적절하지 않음) 1, 낮은 편임(적절하지 않은 편임) 2, 보통 3, 높은 편임(적절한 편임) 4, 매우 높음(매우 적절함) 5를 항목별로 계산하여 평균한 수치임.

##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중복

농식품 안전 관련 업무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다는 인식은 기초자치단체(5점척도 기준 3.08점)보다 중앙정부(3.64점)와 광역자치단체(3.70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9>. 사례조사 결과 주로 중복되고 있다고 제시된 업무에는 안전성 조사, 지도·단속 등이 있다.

표 4-19.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중복 수준

단위: 점

| 구분 | 중앙   | 광역시  | 기초   | 평균   |
|----|------|------|------|------|
| 점수 | 3.64 | 3.70 | 3.08 | 3.47 |

주 1) 점수는 5점 척도에서 전혀 중복되지 않음 1, 중복되지 않는 편임 2, 보통 3, 중복되는 편임 4, 매우 중복됨 5를 항목별로 계산하여 평균한 수치임.

## ■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농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예산, 검사 등의 지원기관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4-20>. 특히 인력 규모(5점 척도 기준 1.82점) 및 인력의 전문성(1.82점) 등 인적 자원의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인력 규모’의 부족(1.50점),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부족’(1.75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표 4-20. 농식품 안전관리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평가

단위: 점

| 구분      | 중앙   | 광역   | 기초   | 평균   |
|---------|------|------|------|------|
| 인력 규모   | 2.09 | 1.50 | 1.88 | 1.82 |
| 인력의 전문성 | 1.82 | 1.85 | 1.78 | 1.82 |
| 예산      | 2.27 | 1.65 | 1.75 | 1.89 |
| 지원기관    | 2.27 | 2.05 | 1.94 | 2.09 |

주 1) 점수는 5점 척도에서 매우 부족함 1, 부족한 편임 2, 보통 3, 적절한 편임 4, 매우 적절함 5를 항목별로 계산하여 평균한 수치임.

## ■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행정에 있어서 개선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행정에 있어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강화’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36.4%)<표 4-21>.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는 ‘담당인력 보강’(47.5%), 기초자치단체는 ‘담당인력 보강’(35.3%)과 ‘전문성 향상’(34.0%)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1.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행정 개선 사항

단위: %

|                       | 중앙    | 광역시   | 기초    |
|-----------------------|-------|-------|-------|
| 담당인력 보강               | 12.1  | 47.5  | 35.3  |
|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          | 18.2  | 16.9  | 34.0  |
|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 강화 | 18.2  | 23.7  | 18.7  |
| 관련 예산 증액              | 12.1  | 1.7   | 4.0   |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강화  | 36.4  | 5.1   | 4.0   |
| 안전성 검사·평가 기반 정비       | 3.0   | 5.1   | 4.0   |
| 합계                    | 100.0 | 100.0 | 100.0 |

주 1)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2.3.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

농식품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농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 입안 및 집행’,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표 4-22><표 4-23>.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에 대한 응답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표 4-22. 중앙정부의 주요 역할

단위: 명(%)

| 구분                    | 중앙        | 광역시       | 기초        |
|-----------------------|-----------|-----------|-----------|
| 농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 입안·집행   | 7(63.6)   | 12(60.0)  | 24(48.0)  |
| 농식품 안전에 대한 평가 및 기준 제시 | 3(27.3)   | 5(25.0)   | 13(26.0)  |
| 농식품 안전에 대한 현장관리       | -         | 1(5.0)    | 9(18.0)   |
| 농식품 안전관련 정보 수집·분석     | 1(9.1)    | 1(5.0)    | 3(6.0)    |
| 기타                    | -         | 1(5.0)    | 1(2.0)    |
| 합계                    | 11(100.0) | 20(100.0) | 50(100.0) |

## 4-23.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

단위: 명(%)

| 구분                    | 중앙        | 광역시       | 기초        |
|-----------------------|-----------|-----------|-----------|
| 농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 입안·집행   | -         | 1(5.0)    | 2(4.0)    |
| 농식품 안전에 대한 평가 및 기준 제시 | -         | -         | 2(4.0)    |
| 농식품 안전에 대한 현장관리       | 8(72.7)   | 19(95.0)  | 40(80.0)  |
| 농식품 안전관련 정보 수집·분석     | 2(18.2)   | -         | 5(10.0)   |
| 기타                    | 1(9.1)    | -         | 1(2.0)    |
| 합계                    | 11(100.0) | 20(100.0) | 50(100.0) |

주 1)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업무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앙정부의 경우 ‘권한 축소’(40.05)와 ‘권한 확대’(50.0%)에 대한 의견이 비슷하였다 <표 4-24>. 역할 및 권한 확대에 대한 의견은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높다 (80.0%).

권한 확대의 주요 이유로는 중앙정부는 ‘지역실정에 기반한 정책(행정) 수행’(60.0%),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단속·지도 등 현장행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 집행’의 필요성이라는 의견이 각각 62.5%, 78.8%로 나타났다 <표 4-25>. 권한 축소의 주요 이유로 중앙정부는 ‘농식품 안전성은 지방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50.0%),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온정주의로 단속·조사 업무 등에서 강력한 행정이 어렵다’는 점(39.1%)을 들고 있다 <표 4-26>.

표 4-2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의 개선 방향

단위: 명(%)

| 구분         | 중양        | 광역시       | 기초        |
|------------|-----------|-----------|-----------|
| 역할 및 권한 유지 | 1(10.0)   | 4(20.0)   | 9(18.0)   |
| 역할 및 권한 축소 | 4(40.0)   | -         | 8(16.0)   |
| 역할 및 권한 확대 | 5(50.0)   | 16(80.0)  | 33(66.0)  |
| 합계         | 10(100.0) | 20(100.0) | 50(100.0) |

표 4-25.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권한 확대의 주요 이유

단위: 명(%)

| 구분                               | 중양       | 광역시       | 기초        |
|----------------------------------|----------|-----------|-----------|
| 단속·지도 등 현장행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 1(20.0)  | 10(62.5)  | 26(78.8)  |
|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 1(20.0)  | 5(6.3)    | 5(6.1)    |
| 지역실정에 기반한 정책(행정) 수행을 위해          | 3(60.0)  | 1(31.3)   | 2(15.2)   |
| 합계                               | 5(100.0) | 16(100.0) | 33(100.0) |

표 4-26.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권한 축소의 주요 이유

단위: 명(%)

| 구분                               | 중양    | 기초    |
|----------------------------------|-------|-------|
| 지역 온정주의로 단속·조사업무 등에서 강력한 행정이 어려움 | 33.3  | 39.1  |
|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 전개 어려움            | -     | 21.7  |
|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 업무 이루어지기 어려움  | 16.7  | 21.7  |
| 농식품 안전성은 지방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       | 50.0  | 17.4  |
|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정책 집행이 어려움           | -     | -     |
| 합계                               | 100.0 | 100.0 |

주 1) 광역자치단체는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었음.

2)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통합에 대한 인식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자들은 농식품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농업관련 부서와 보건위생관련 부서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는 농식품 안전업무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7>. 중앙정부의 설문 응답자 전부와 광역자치단체 업무 담당자의 90.0%, 기초자치단체의 86.0%가 부서 통합에 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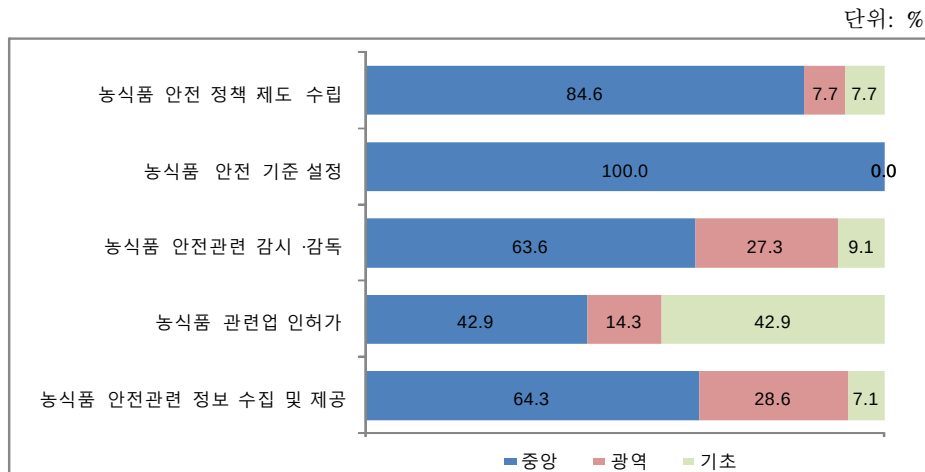
표 4-27. 통합 부서의 필요성

|        | 중앙        | 광역        | 기초        |
|--------|-----------|-----------|-----------|
| 필요     | 11(100.0) | 18(90.0)  | 43(86.0)  |
| 불필요    | -         | 2(10.0)   | 6(12.0)   |
| 잘 모르겠음 | -         | -         | 1(2.0)    |
| 합계     | 11(100.0) | 20(100.0) | 50(100.0) |

## ■ 농식품 안전 관련 기능에 대한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방향

중앙정부의 경우 ‘농식품 안전정책 제도 수립’과 ‘안전기준 설정’, ‘안전 관련 감시·감독’, ‘관련업 인허가’, ‘안전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대부분의 역할을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제시하였다<그림 4-3>. 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는 ‘안전기준 설정’, ‘안전정책·제도 수립’, 광역자치단체는 ‘감시·감독업무’와 ‘정보수집 및 제공’, 기초자치단체는 ‘관련업 인허가’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그림 4-4>. 기초자치단체는 대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의견이 동일하며 다만 관련업 인허가업무를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그림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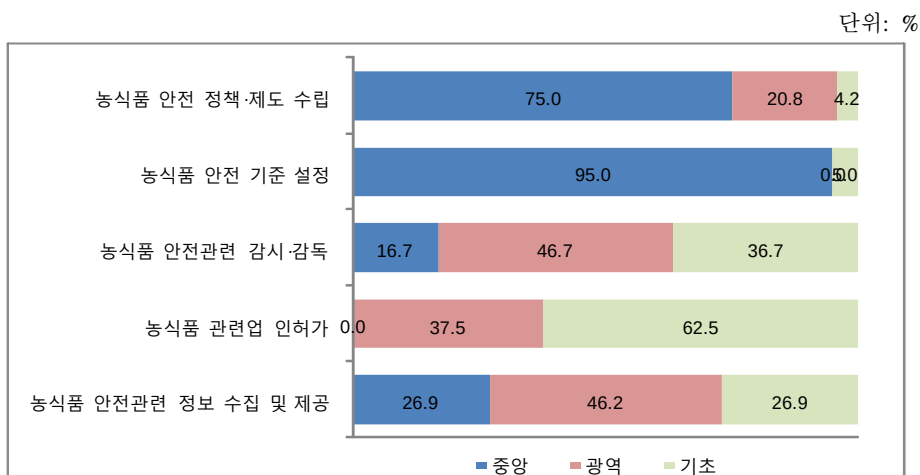
그림 4-3. 주요 농식품 안전 관련 기능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  
중앙정부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향(중복응답)



주 1) 도표는 중앙정부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견을 비율로 계산한 결과임.

2) 도표의 좌측 음영부터 순서대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기능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중앙정부 담당자의 의견을 비율로 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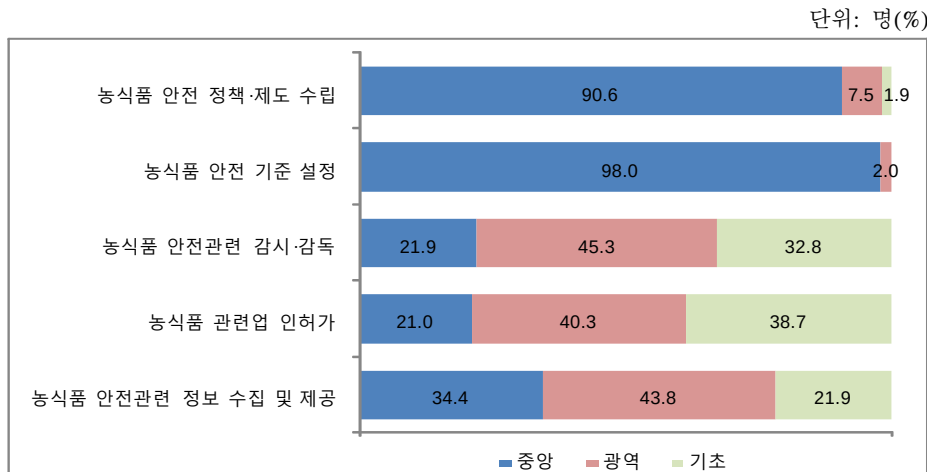
그림 4-4. 주요 농식품 안전 관련 기능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향(중복응답)



주 1) 도표는 광역자치단체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견을 비율로 계산한 결과임.

2) 도표의 좌측 음영부터 순서대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기능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광역자치단체 담당자의 의견을 비율로 표시한 것임.

그림 4-5. 주요 농식품 안전 관련 기능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향(중복응답)



주 1) 도표는 기초자치단체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견을 비율로 계산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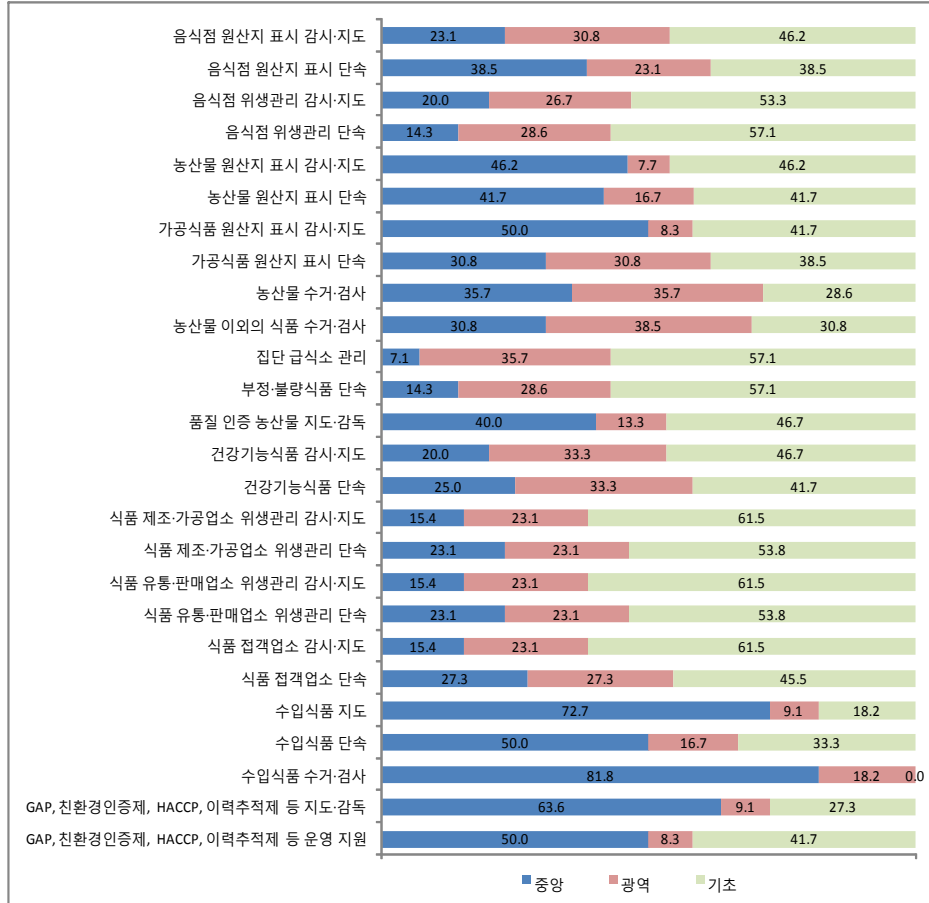
2) 도표의 좌측 음영부터 순서대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기능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기초자치단체 담당자의 의견을 비율로 표시한 것임.

보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농식품 안전업무 담당자는 대부분의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그림 4-6>.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거·검사로 한정하였다.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음식점 및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감시·지도, 농산물 및 식품의 수거·검사, 수입식품 지도 및 단속과 수거·검사, GAP, 이력추적제 등 안전 관련 제도의 지도·감독과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안전업무 담당자들도 중앙정부의 담당자들과 유사하게 세부업무에 있어서 대부분의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였다<그림 4-7><그림 4-8>.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자들의 경우 중앙정부의 업무 담당자들에 비해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업무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4-6. 세부 농식품 안전 관련 업무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 중앙정부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향(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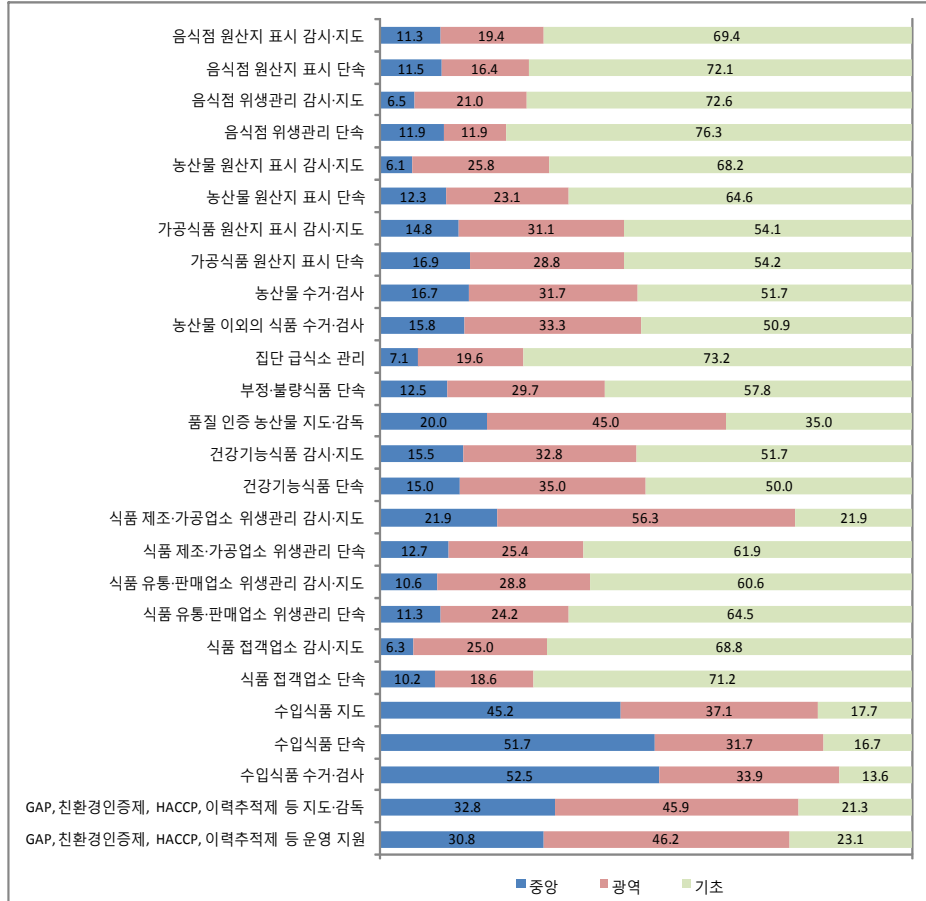


주 1) 도표는 중앙정부 식품안전 담당자의 세부 업무의 주체에 대한 의견을 비율로 계산한 결과임.

2) 도표의 좌측 음영부터 순서대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기능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중앙정부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각각 비율로 표시한 것임.

그림 4-7. 세부 농식품 안전 관련 업무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향(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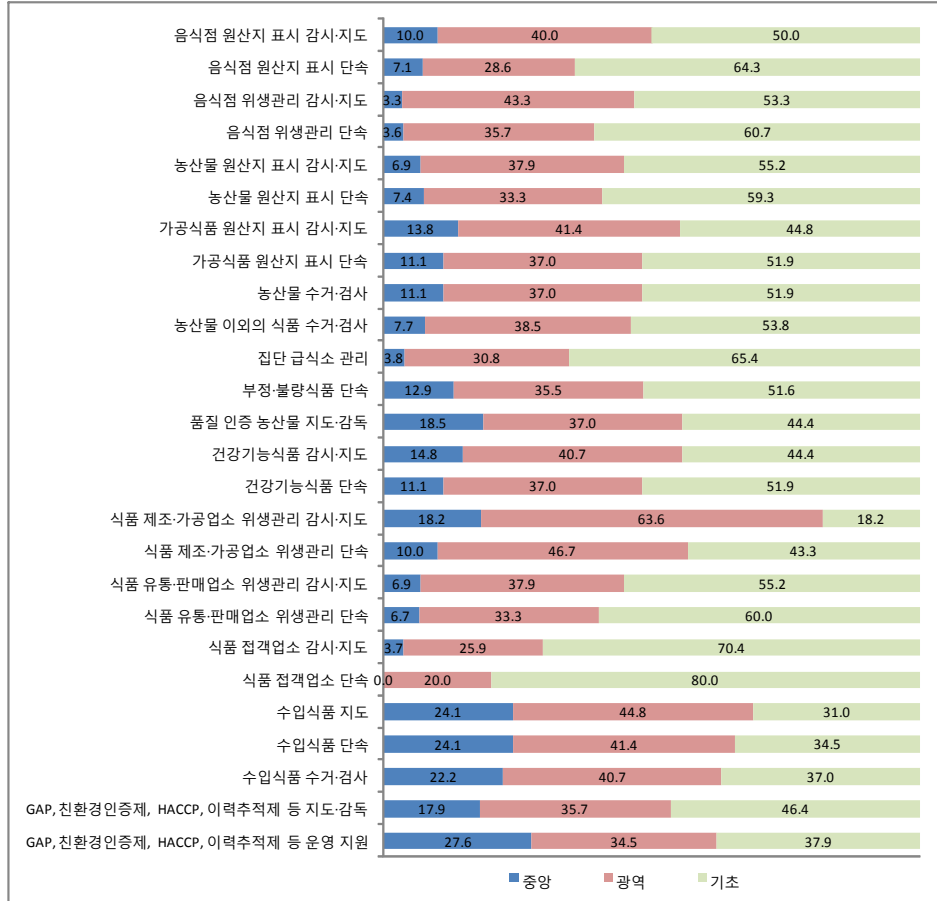
단위: %



- 주 1) 도표는 광역자치단체 식품안전 담당자의 세부 업무의 주체에 대한 의견을 비율로 계산한 결과임.
- 2) 도표의 좌측 음영부터 순서대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기능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광역자치단체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각각 비율로 표시한 것임.

그림 4-8. 세부 농식품 안전 관련 업무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식품안전 담당자의 의향(중복응답)

단위: %



- 주 1) 도표는 기초자치단체 식품안전 담당자의 세부 업무의 주체에 대한 의견을 비율로 계산한 결과임.
- 2) 도표의 좌측 음영부터 순서대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기능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기초자치단체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각각 비율로 표시한 것임.

보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업무 담당자들은 대부분의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품질 인증 농산물 지도·감독(45.0%),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감시·지도(56.3%),

중앙정부는 수입식품의 지도(45.2%), 단속(51.7%), 수거·검사(52.5%) 등 수입식품 관련 사항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업무 담당자들은 중앙정부가 분담해야 할 세부업무가 특별히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감시·지도 업무(63.6%)를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입식품 관련 사항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한 광역자치단체의 안전업무 담당자들에 비해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업무를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3. 시사점

소비자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 관련 업무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소비자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인지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기본법”은 2008년 6월 14일 제정되어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비자의 일상생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조직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파급 영향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도 아직 법령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에 비하여 이의 수행을 위한 역량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 관련 업무의 담당공무원들은 공통적으로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농식품 안전관리 수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의 담당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 등 인력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의 질적 수준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문제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인력 충원과 일정 수준의 전문성 확보는 효과적·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이러한 인력 문제가 지역 온정주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농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담당인력 보강’과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행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항이라는 의견을 상당한 비중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일부 지역 온정주의나 인력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업무집행과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역할 및 권한 확대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농식품 안전관련 업무가 어느 정도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업무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역할 배분의 큰 틀로 중앙정부는 정책 및 제도 수립,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는 감시·감독, 인허가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인 현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와 관련 담당자들은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역할 분담의 방향에 대해서는 주체별로 다소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관련 업무 담당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 1. 해외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과 변화

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는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여건,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형성·발전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광우병 등 식품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은 소비자의 신뢰 회복, 식품안전관리의 일관성 유지, 업무의 중복성 제거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였다.<sup>42</sup>

정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한 주요 국가로는 영국, 독일, 일본, 아일랜드, 벨기에 등이 있다. 뉴질랜드, 덴마크는 농림부와 보건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업무를 통합하여 정책과 실행의 일관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캐나다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 관리 업무의 재편을 통해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며, 예산절감을 도모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식품안전행정의 관련 주체의 규모에 따라 단일 기관에서 일관되게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형태와 여러 기관에서 분담 관리하는 형태로 구분된다<표 5-1>.<sup>43</sup> 단일 기관에서 식품안전

<sup>42</sup> 김준·배민식(2008) 참조.

<sup>43</sup> 광노성(2008)은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을 통합정도를 기준으로 해외 주요국들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① 식품안전관리

관리를 담당하는 대표적 국가에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이 있다. 벨기에를 제외한 국가들은 주로 생산부처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이 있다.

표 5-1.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 국가명                   |               | 위험평가<br>(총괄)   | 위험관리                        |                        |                     |           |        |
|-----------------------|---------------|----------------|-----------------------------|------------------------|---------------------|-----------|--------|
|                       |               |                | 정책/기준                       | 인허가                    | 규제집행                | 국경조치      |        |
| 통합형                   | 독일            | 소비자보호식품<br>농업부 | 소비자보호식품<br>농업부              | 지방정부                   | 지방정부                | 지방정부      |        |
|                       | 스웨덴           | 농업식품소비자부       | 농업식품소비자부                    | 농업식품소비자부<br>(대규모업체)    | 농업식품소비자부<br>(대규모업체) | 농업식품소비자부  |        |
|                       |               |                |                             | 지방정부                   | 지방정부                |           |        |
|                       | 덴마크           | 식품농수산부         | 식품농수산부                      | 식품농수산부                 | 식품농수산부              | 식품농수산부    |        |
| 분<br>산<br>관<br>리<br>형 | 위원회<br>중심형    | 일본             | 식품안전위원회<br>(내각부 소속)         | 지방정부                   | 지방정부                | 농림수산성(검역) |        |
|                       |               |                | 후생노동성                       |                        |                     | 후생노동성(검사) |        |
|                       | 기준설정<br>기관중심형 | 영국             | 식품기준청<br>(독립부처)             | 식품기준청<br>(도축장)         | 지방정부                | 환경식품농촌부   |        |
|                       |               |                | 환경식품농촌부                     | 지방정부                   |                     |           |        |
|                       |               | 호주             | 식품기준호주<br>뉴질랜드청<br>(보건부처소속) | 관계장관회의                 | 지방정부                | 지방정부      | 농림수산부  |
|                       | 위험평가<br>중심형   | 프랑스            | 식품위생안전청<br>(독립부처)           | 농어업성, 경제재정산업성, 고용사회연대성 |                     |           |        |
|                       | 기준집행<br>분리통합형 | 캐나다            | 보건부                         | 농업농식품부                 | 농업농식품부              | 농업농식품부    | 농업농식품부 |
|                       |               |                | 농업농식품부                      |                        |                     |           |        |
| 다원화된<br>체계형           | 미국            | 농업부            | 농업부                         | 농업부                    | 농업부                 | 농업부       |        |
|                       |               | 보건부            | 보건부                         | 보건부                    | 보건부                 | 보건부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09)

담당부서를 완전히 통합한 유형으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② 식품안전관리 담당부서를 실질적으로 통합한 사례로 영국, ③ 기능별로 통합한 경우로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④ 대표적으로 다원화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험관리 기능 중 정책 및 기준설정, 국경조치 등은 중앙정부에서 주로 수행한다. 그러나 인허가, 규제집행 기능은 국가별로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역할을 구분하여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 일본, 호주 등은 인허가, 규제집행 등의 기능을 지방정부가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는 주 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식품과 식품 관련 접객업소를 전담 관리한다. 스웨덴은 대규모업체에 대한 인허가와 규제집행을 제외한 인허가와 규제업무가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진다. 영국은 식품기준청이 담당하고 있는 도축장 인허가를 제외한 인허가와 규제집행이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진다.

## 2. 일본의 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국가 행정체계가 비교적 유사하며 지역적으로 근접하고, 유럽, 북미 국가 등에 비해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큰 일본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2.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주요 변화

#### 2.1.1 식품안전기본법 개요와 식품안전관련법 체계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은 1996년 병원성 대장균 O157과 2000년 가공유에 의한 집단 식중독 발생, 2001년 광우병 발생 등 식품안전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2003년 5월 제정되었다.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

의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책무와 역할을 명시한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은 ‘식품건강영향평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상호 밀접한 연대, 시험연구 체제 정비, 국내외의 정보수집·정리·활용, 표시제도의 적절한 운영, 식품에 관한 교육·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근거하도록 한다. 이 밖에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표 5-2>.

표 5-2. 일본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 이해관계자의 책무(제6조부터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책무: 국가는 식품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실시</li> <li>·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책정·실시</li> <li>· 식품관련사업자의 책무: 사업 활동을 시행함에 있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식품공급 일정의 각 단계에서 적절하게 강구</li> <li>· 소비자의 역할: 식품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도모함과 함께 식품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시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li> </ul> </li> </ul> |
| 제2장 시책의 책정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식품영향 평가의 실시·시책 책정(제11조 및 제12조)</li> <li>- 정보 및 의견 교환의 촉진(제13조)</li> <li>- 긴급 사태에의 대처 등에 관한 체제 정비·관계 행정기관의 상호 연대(제14조 및 제15조)</li> <li>- 시험연구의 체제의 정비 등(제16조)</li> <li>- 국내외의 정보 수집, 정리 및 활용 등(제17조)</li> <li>- 표시제도의 적절한 운영의 확보 등(제18조)</li> <li>-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교육, 학습 등(제19조)</li> <li>-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제20조)</li> </ul>                                                                                 |
| 제3장 식품안전위원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운영(제22조부터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부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건강영향평가 실시·결과 통지 및 관련 시책 마련, 과학적 조사 및 연구, 관계자 상호 간의 정보 및 의견의 교환의 기획 및 실시 관련 사항 담당</li> </ul> </li> </ul>                                                                                                                                                                                                             |

일본의 식품안전 관련 법체계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하위법인 관련 부처의 안전관련법령들로 구성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내각부 소관이며 대부분의 하위법은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서 관장한다 <표 5-3>.

표 5-3. 일본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 소관부처         | 법령                                                                                                                                                                                                                                                                                                                                              |
|--------------|-------------------------------------------------------------------------------------------------------------------------------------------------------------------------------------------------------------------------------------------------------------------------------------------------------------------------------------------------|
| 식품안전위원회(내각부) | • 식품안전기본법                                                                                                                                                                                                                                                                                                                                       |
| 농림수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단속법</li> <li>• 식물방역법</li> <li>• 비료단속법</li> <li>• 농산물검사법</li> <li>• BSE대책 특별조치법</li> <li>• HACCP수법지원법</li> <li>• 식료·농업·농촌기본법</li> <li>• 가축전염병예방법</li> <li>• JAS법</li> <li>• 사료안전법</li> <li>•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li> <li>• 식품제조과정의 관리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li> <li>• 특정농산가공경영개선임시조치</li> </ul> |
| 후생노동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li> <li>• 도축장법</li> <li>• 건강증진법</li> <li>• 식조처리법</li> <li>• 약사법</li> </ul>                                                                                                                                                                                                                      |
| 공정거래위원회      |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주 1) 약사법은 기본적으로 후생노동성 소관이지만 동물용의약품관계는 농림수산성장관의 권한하에 있음.

자료: 류창호(2004); 이계임 외(2008) 참조.

## 2.1.2.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후의 주요 변화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의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에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조직 개편 등이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이전 일본의 식품안전관리는 생산에서 출하 전 단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성과 출하 이후 소비단계까지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의 두 축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식품위험분석에 있어서 실행 주체 불명확으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 양 부처 간 정보교류 미흡 등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식품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식품안전행정 개편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2003년에 “식품안전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내각부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험평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후생노동성은 식품보건부를 식품안전부로 재편하고 농림수산성은 소비안전국을 설치하였다.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위험정보교환의 중요성에 따라 각각 기획정보과와 소비자정보관을 식품안전관리 부서 내에 신설하였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2003년 이후 “식품안전기본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소관법률인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비료단속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이 정비되었다<표 5-4>. 최근에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설치계획에 따라 ‘소비자청(가칭)’설치를 추진하면서 식품관련법령의 일괄적인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표 5-5>.<sup>44</sup> 식품안전관련법령 중에서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이 소비자청 이관을 전제로 일부 규정의 소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은 소비자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JAS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은 표시기준의 기획입안과 집행업무가 소비자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44 이계임 외(2008) 참조.

표 5-4.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주요 변화(법률적 측면)

| 소관부처      | 법령              | 내용                                                                                                                                                                                                                                                                                   |
|-----------|-----------------|--------------------------------------------------------------------------------------------------------------------------------------------------------------------------------------------------------------------------------------------------------------------------------------|
| 농림<br>수산성 | 비료단속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생산력의 유지 증진에 ‘국민의 건강보호’ 추가</li> <li>• 사용방법의 준수 의무화</li> <li>•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료의 판매·사용·금지 회수 명령 명시</li> </ul>                                                                                                                                 |
|           | 농약단속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수명령 기능 신설</li> </ul>                                                                                                                                                                                                                       |
|           | 사료안전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사료 등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li> <li>•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비료의 수입·제조·판매·사용 금지 명시</li> <li>• 사료의 검정기관 지정제도 재검토 조항 추가</li> </ul>                                                                                                                           |
|           | 가축전염병<br>예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생물의 침입방지, 미생물 억제 등 가축사양과 관련하여 위생관리기준을 설정</li> <li>• 방역매뉴얼 작성</li> </ul>                                                                                                                                                                    |
|           | 약사법<br>(동물용의약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무허가 동물용 의약품 수입·제조 행위 금지</li> <li>• 미승인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금지 조항 추가와 식용동물에 대한 사용규제 범위 확대</li> </ul>                                                                                                                                              |
|           | JAS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 부정표시와 원산지 표시 정비 및 감시체제 강화</li> </ul>                                                                                                                                                                                                    |
|           | 우육추적가능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에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개체식별번호로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li> <li>• 식육관련 기계류의 리스제도 도입</li> </ul>                                                                                                                                            |
| 후생<br>노동성 | 식품위생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의 목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식품사업자의 책무 명확히 규정</li> <li>• 잔류규제(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를 강화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기존 첨가물의 사용 금지</li> <li>• 특수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잠정적인 유통금지</li> <li>•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수입업자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규정 신설</li> <li>• HACCP(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 승인 갱신제 도입</li> </ul> |
|           | 건강증진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과대 광고 및 표시 금지</li> <li>• 감시·검사 체제 강화</li> </ul>                                                                                                                                                                                          |

표 5-5. 소비자청 설치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방안

| 소관부처    | 법령              | 내용                                                                                                                               |
|---------|-----------------|----------------------------------------------------------------------------------------------------------------------------------|
| 내각부     | 식품안전기본법         | • 소비자청으로 이관. 다만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
|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 소비자청으로 이관                                                                                                                      |
| 농림수산성   | JAS법            | • 표시기준의 기획입안, 집행을 소비자청으로 이관<br>• 표시기준 책정·개정 시 농림수산성에 사전 협의·동의 구함<br>• 농림수산성은 안을 마련하여 표시기준 책정·개정요청 가능<br>• 법집행의 일부에 대해 농림수산대신에 위임 |
| 후생노동성   | 식품위생법           | • 표시기준의 기획입안, 집행을 소비자청으로 이관<br>• 표시기준책정 및 개정 시에 후생노동성과 사전 협의<br>• 후생노동성은 표시기준의 책정·개정요청 가능                                        |
|         | 건강증진법           | • 표시기준의 기획입안, 집행을 소비자청으로 이관<br>• 표시기준의 책정 및 개정 시 후생노동성과 협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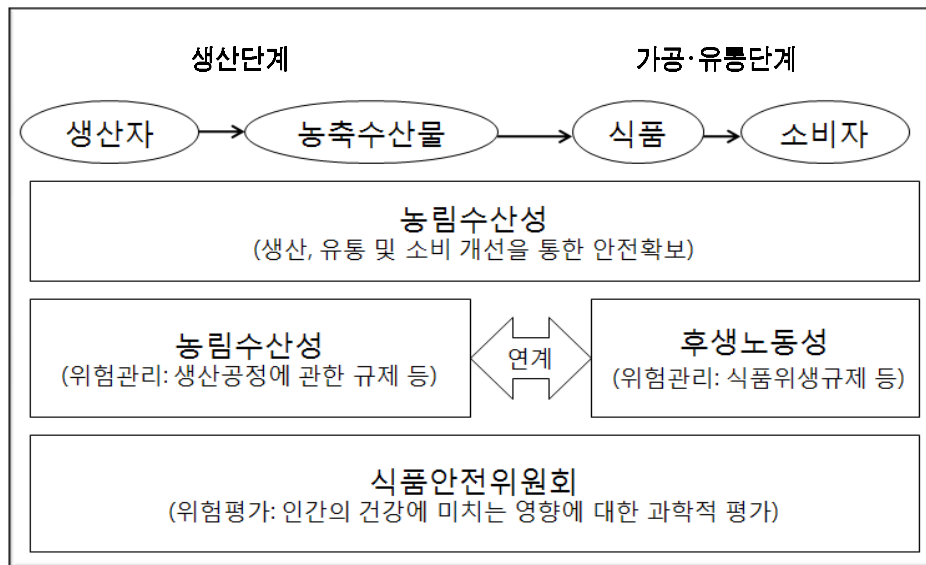
자료: 이계임 외(2008) 참조.

## 2.2. 식품안전행정체계

일본의 중앙정부의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평가를 담당하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위험관리를 담당한다<그림 5-1>.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기본법”에 기초하여 2003년 7월 내각부에 마련되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식품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규격과 기준은 식품안전위원회의 평가에 기초하여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5-1. 일본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자료: 鈴木 明子(2007).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에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16개의 전문조사회를 둔다. 농림수산업성은 농림수산물 등에 관한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에 관한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식품안전위원회가 위험평가와 위험정보교환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면 농림수산업성과 후생노동성 등 관련행정기관은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식품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일본은 농림수산업성이 생산단계의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후생노동성이 수입·제조·유통·소비단계의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농림수산업성의 식품안전 관련 업무는 소비안전국이 담당하여 후생노동성은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가 담당한다.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소비안전국은 농수축산식품 등을 망라하여 전반적인 식품안전 업무를 관할한다<표 5-6>.

표 5-6. 농림수산성의 식품안전 관련 조직 구성

| 부서             |          | 담당 업무                                   |
|----------------|----------|-----------------------------------------|
| 소비<br>·<br>안전국 | 총무과      | 국 전체의 총무                                |
|                | 소비·안전정책과 | 소비자행정, 위험관리, 생산이력제, 위기관리                |
|                | 국제기준과    | SPS협정, 국제식품규격의 조정                       |
|                | 표시·규격과   | 표시, 규격, JAS(유기, 특정JAS규격, 생산공표JAS, 국제관계) |
|                | 농산안전관리과  | 농약, GMO, 토양관리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               |
|                | 축수산안전관리과 |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사료, 쇠고기 생산이력제 등 안전성 관련업무   |
|                | 동물위생과    | 가축위생, 전염병 및 질병의 방역에 관한 업무               |
|                | 식물방역과    | 식물검역전반에 관한 업무                           |
|                | 소비자정보관   | 위험정보교환, 소비자상담, 먹을거리 교육에 관한 업무           |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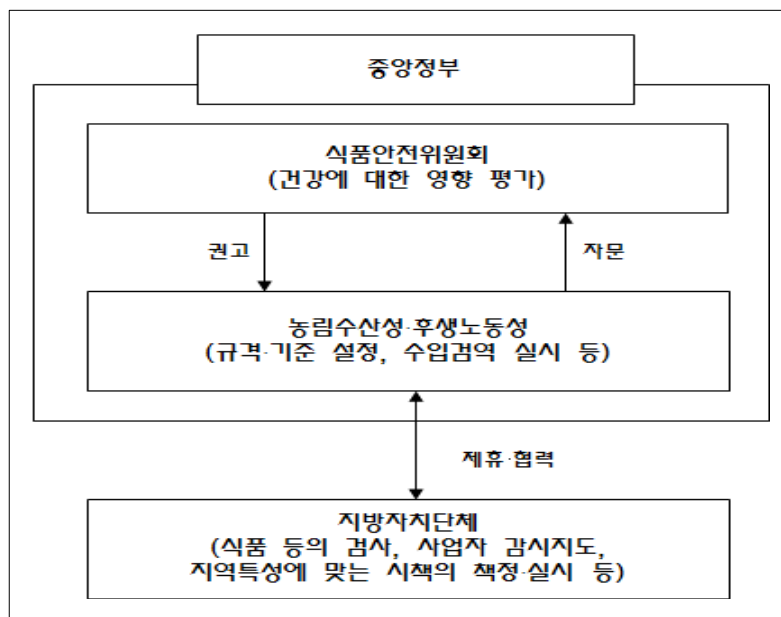
### 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sup>45</sup>

<sup>45</sup> 일본의 행정 구역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으로 구성된다. 도도부현(都道府縣)은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縣), 시정촌(市町村)은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도쿄도에는 시정촌에 해당하는 특별구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시구정촌(市區町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도(都) 1개(도쿄도), 도(道) 1개(홋카이도), 부(府) 2개(오사카부, 교토부)와 43개의 현(縣)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특별구를 포함하며 시의 일부는 행정상 정령지정도시나 특례시, 중핵시 등으로 지정된다.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정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령으로 지정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줄여서 정령시 또는 지정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핵시(中核市)는 정령지정도시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생활·복지 등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특례시(特例市)는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위키피디아, ko.wikipedia.org).

### 3.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최근 동향

일본 “식품안전기본법”상에서 국가는 식품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제 요건에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며 실시할 책무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제7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그림 5-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자료: 도쿄도청 홈페이지

일본의 경우 중앙의 식품안전위원회가 건강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하고, 후생노동성·농림수산업성이 규격 및 기준의 설정과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의 제휴·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5-2>.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에는 법령 등에 의해 정해진 식품의 규격이나 기준의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감시·지도, 지역 내 유통 식품의 검사,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 교환 등이 있다. 또한 수입식품의 국경검사는 국가에서 담당하지만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시, 검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정책에 있어 주요 움직임에는 ① 식품안전관련법규 및 식품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②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의 결성 등이 있다.

#### 가. 식품안전관련법규 및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

현재 일본의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정하고 있다<표 5-7><표 5-8>. 이중 군마현, 도쿄도, 사이타마현, 아키타현, 치바현, 토치기현, 홋카이도, 야마나시현, 후쿠시마현 9개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조례와 기본계획을 모두 갖추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조례는 기본적으로 식품안전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나가사키현의 경우 농림수산물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가고시마현, 나가노현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식품안전조례 대신 식품안전기본방침 등을 정하고 있다.

표 5-7.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조례

| 구분    | 조례                          | 내용                               |
|-------|-----------------------------|----------------------------------|
| 고치현   | 식품 안전·안심추진조례                | 식품안전전반                           |
| 교토부   | 식품 안심·안전추진조례                |                                  |
| 구마모토현 | 식품 안전안심추진조례                 |                                  |
| 군마현   | 식품안전기본조례                    |                                  |
| 기후현   | 식품안전기본조례                    |                                  |
| 나라현   | 식품위생법시행조례                   |                                  |
| 니가타현  | 안전안심조례                      |                                  |
| 도쿄도   | 식품안전조례                      |                                  |
| 미야기현  | 식품 안전·안심추진조례                |                                  |
| 미에현   | 식품 안전·안심 확보에 관한 조례          |                                  |
| 사이타마현 | 식품 안전·안심조례                  |                                  |
| 아키타현  | 식품 안전·안심에 관한 조례             |                                  |
| 야마구치현 | 식품 안심·안전추진조례                |                                  |
| 에히메현  | 식품 안전안심추진조례                 |                                  |
| 오사카   | 식품 안전안심추진조례                 |                                  |
| 오이타현  | 식품 안전·안심추진조례                |                                  |
| 오카야마현 | 식품 안전·안심 확보 및 식교육 추진에 관한 조례 |                                  |
| 오키나와  | 식품 안전안심 확보에 관한 조례           |                                  |
| 치바현   | 식품 등의 안전·안심 확보에 관한 조례       |                                  |
| 토치기현  | 식품의 안전·안심·신뢰성 확보에 관한 조례     |                                  |
| 토쿠시마현 | 식품 안전안심추진조례                 |                                  |
| 홋카이도  | 식품 안전·안심조례                  |                                  |
| 효고현   | 식품 안전안심과 식교육에 관한 조례         |                                  |
| 나가사키현 | 사람과 환경친화적인 나가사키현 농림어업 추진 조례 | 농림수산물 안전                         |
| 가고시마현 | 식품 안심안전기본방침                 | 기본방침·지침 등<br>(조례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음) |
| 나가노현  | 식품 안전확보를 위한 기본              |                                  |
| 시가현   | 식품 안전안심에 관한 기본방침            |                                  |
| 야마나시현 | 식품 안전안심 기본방침                |                                  |
| 카가와현  | 식품 안전안심 기본방침                |                                  |
| 도야마현  | 식품 안전 시책                    |                                  |
| 후쿠시마현 | 식품 안전 확보에 관한 기본방침           |                                  |

자료: 식품안전자치네트워크 웹사이트

표 5-8.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기본계획·실행계획

| 구분    | 식품안전 기본계획·실행계획                   |
|-------|----------------------------------|
| 군마현   | 식품안전기본계획                         |
| 도쿄도   | 식품안전추진계획                         |
| 사이타마현 | 식품안전·안심 확보에 관한 기본방침/식품안전·안심 액션플랜 |
| 시즈오카현 | 식품 안전추진을 위한 액션플랜                 |
| 아오모리현 | 식품 안전·안심대책종합계획                   |
| 아이치현  | 식품 안전·안심추진 액션플랜                  |
| 아키타현  | 식품의 안전·안심에 관한 조례·기본계획·액션플랜       |
| 야마가타현 | 식품 안전·안심 액션플랜                    |
| 야마나시현 | 제2차 야마나시 식품 안전·안심 행동계획           |
| 이바라키현 | 식품안전확보 액션플랜                      |
| 이시카와현 | 식품 안전·안심 확보에 관한 기본방침             |
| 이와테현  | 식품안전·안심에 관한 기본방침                 |
| 치바현   | 식품등의 안전·안심 확보에 관한 기본방침           |
| 토치기현  | 식품안전·안심·신뢰성 확보에 관한 기본계획          |
| 홋카이도  | 식품안전·안심기본계획                      |
| 후쿠시마현 | 식품안전확보대책 프로그램                    |
| 후쿠이현  | 식품의 안전안심 확보                      |

자료: 식품안전자치네트워크 웹사이트

#### 나.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 결성<sup>46</sup>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는 군마현(群馬縣)·기후현(岐阜縣)·사가현(佐賀縣)의 주도하에 2002년에 결성되었으며, 현재 모든 도도부현과 2개의 정령지정도시를 포함한 총 4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표 5-9>.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는 식품유통의 광역화와 식품의 다양화 추세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식품안전행정 수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간 의견과 정보 교환을 위해 조직되었다.

<sup>46</sup> 일본어 명칭은 ‘全國食品安全自治ネットワーク’이다.

2002년 이후 연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제도 및 동향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대한 시책 등 식품안전행정 관련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군마현, 기후현, 사가현 등 21개 도부현(道府縣)은 식품표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5년 공동으로 ‘식품표시안내서’를 제작하였다.<sup>47</sup>

표 5-9.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 참여 현황

단위: 개

| 구분                 |                    | 내용                                                                                                                                                                                                                                                                          |
|--------------------|--------------------|-----------------------------------------------------------------------------------------------------------------------------------------------------------------------------------------------------------------------------------------------------------------------------|
| 광역자치<br>단체<br>(47) | 도(1)               | 도쿄도                                                                                                                                                                                                                                                                         |
|                    | 도(1)               | 홋카이도                                                                                                                                                                                                                                                                        |
|                    | 부(2)               | 교토부, 오사카부                                                                                                                                                                                                                                                                   |
|                    | 현(43)              | 가가와현, 가고시마현, 고치현, 구마모토현, 군마현, 기후현, 나가노현, 나가사키현, 나라현, 니가타현, 도쿠시마현, 돗토리현, 미야기현, 미야자키현, 미에현, 사가현, 사이타마현, 시가현, 시마네현, 시즈오카현, 아오모리현, 아이치현, 아키타현, 에히메현, 야마가타현, 야마나시현, 야마구치현, 오이타현, 오카야마현, 오키나와현, 이바라키현, 이시카와현, 이와테현, 와카야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 토야마현, 토치기현, 효고현, 후쿠오카현, 후쿠이현, 후쿠시마현, 히로시마현 |
| 기초자치<br>단체<br>(2)  | 정령시<br>지정도시<br>(2) | 사이타마시, 시즈오카시                                                                                                                                                                                                                                                                |
| 합계                 |                    | 49                                                                                                                                                                                                                                                                          |

자료: 식품안전자치네트워크 웹페이지

<sup>47</sup> 참여 21개 지방자치단체에는 홋카이도, 야마가타현, 토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이시카와현, 야마나시현, 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교토부,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야마구치현, 에히메현, 사가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오키나와현 등이 있다.

### 3.2.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도쿄도를 중심으로

#### 3.2.1. 식품안전관련동향

도쿄도는 1970년대 이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기동감시반 설치, 식품안전조례 제정 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움직임은 1990년대 이후 이루어져 왔다. 도쿄도는 1990년대 이후 “소비자생활조례”를 개정하고,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기본방침을 제정하였으며, “식품안전조례”를 제정하고 식품안전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표 5-10>.

표 5-10. 도쿄도의 식품안전 관련 동향

| 1970~1980년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 식품기동감시반 설치</li> <li>• 1989년: 식품안전조례제정에 관한 직접 청구(도의회에 직접청구조례안 상정)</li> </ul>                                                                                                             |
| 1990년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 직접 청구 조례안 부결</li> <li>• 1990년: 「식품안전 확보대책을 위한 기본방침」 책정</li> <li>• 1990년: 식품기동감시반에 「수입식품감시반」 신설</li> <li>• 1994년: 소비생활조례 전면개정</li> <li>• 1999년: 「기본방침」 전면개정(수입식품, 다이옥신 등에 대응)</li> </ul> |
| 2000년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식품안전조례제정</li> <li>• 2003년: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 설치</li> <li>• 2003년: 식품위생자주관리인정제도 도입</li> <li>• 2005년: 식품안전추진계획책정</li> </ul>                                                                     |

자료: 도쿄도 식품안전추진계획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2003년 소비자의 권리 존중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소비자 보호 기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 기본법을 제정한데 비해 도쿄도는 이보다 앞선 1994년 “소비자생활조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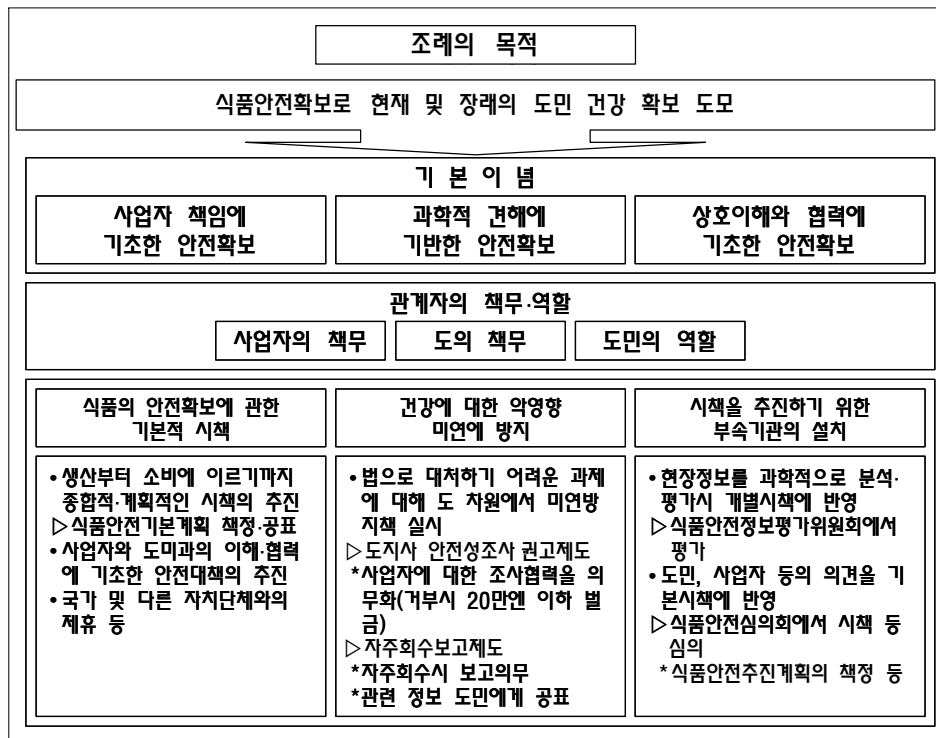
권리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1990년에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식품안전확보대책을 위한 기본방침을 제정하였다. “식품안전조례”는 1989년부터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제정은 2003년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식품안전추진계획은 2005년에 수립하였다.

### 3.2.2. 식품안전법규

도쿄도의 대표적인 식품안전관련 조례에는 “도쿄도 식품안전조례”가 있으며, 이 밖에 “도쿄도 식품제조업 등 단속규정”, “도쿄도 불량품취급규제 규정” 등이 있다. 이 중 “도쿄도 식품안전조례”는 식품 안전의 확보에 의한 현재 및 장래의 도민의 건강 보호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자가 달성해야 할 기본 책무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국가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는 ① 식품의 안전 확보에 관한 기본적 시책(제7조부터 제20조), ② 건강에 대한 악영향의 미연의 방지 ③ 부속기관인 식품안전심의회와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의 설치(제26조 및 제27조)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도쿄도는 또한 2005년 식품안전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안전시책을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 식품안전조례에 기초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식품안전추진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도쿄도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확보방안을 망라하며, 특히 중점과제에 대해 도민, 사업자, 관계 기관 등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그림 5-3. 도쿄도 식품안전조례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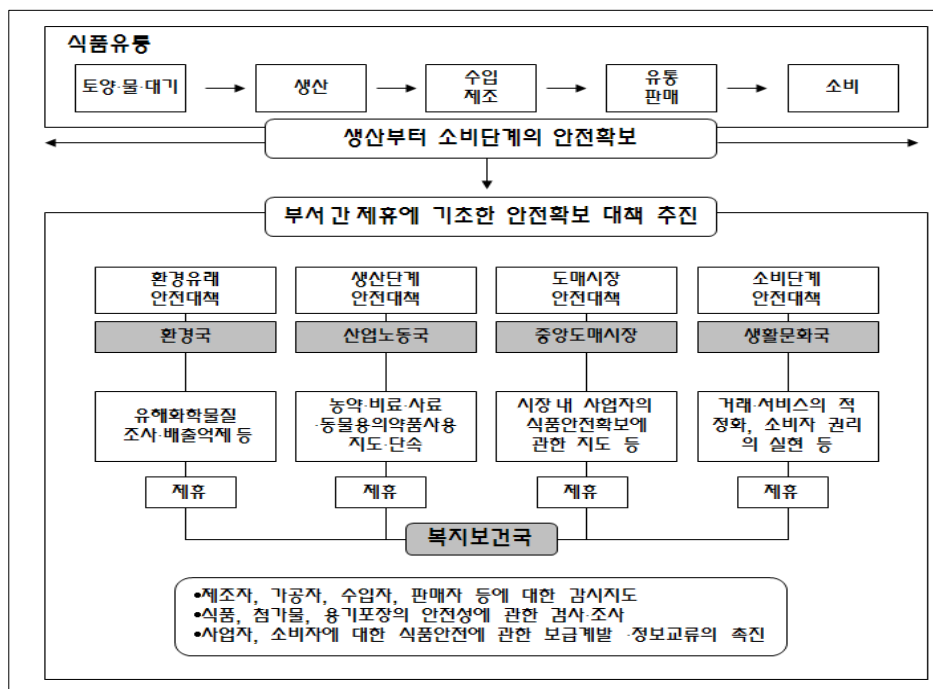
자료: 도쿄도청 웹사이트

추진계획은 “사업자 책임을 기초로 하는 안전 확보”, “과학적 견해에 근거한 안전”과 “도, 사업자, 도민의 상호 이해와 협력에 따른 안전 확보” 등 식품 안전 조례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① 식품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시책, ② 도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③ 다양한 과제에 대응한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식품안전추진계획에서는 시책의 종합적인 체계, 중점적·우선적으로 추진할 전략적 계획과 함께 계획의 검증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부록 6>.

### 3.2.3. 식품안전행정

도쿄도의 식품안전관리는 복지보건국, 산업노동국, 환경국, 중앙도매시장, 생활문화국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그림 5-4>. 복지보건국은 식품 제조, 가공, 수입, 판매업자의 감시 및 지도, 식품 안전성 조사, 정보 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보건국 소속 건강안전부의 건강안전과와 식품 감시과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sup>48</sup> 산업노동국은 생산단계

그림 5-4. 도쿄도 식품안전관리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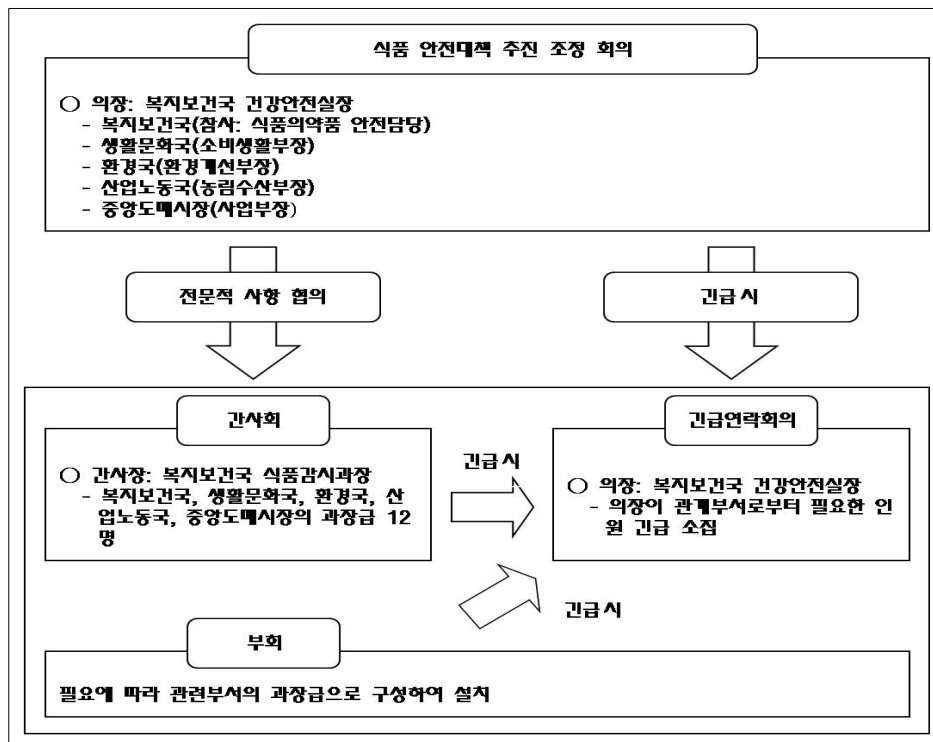
자료: 도쿄도청 웹페이지.

<sup>48</sup> 복지보건국은 총무부, 지도감사부, 의료정책부, 보건정책부, 생활복지부, 고령 사회대책부, 어린이사회대책부, 장애인시책추진부, 건강안전부의 9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안전부는 건강안전과, 식품모니터링과, 약무과, 약사감시과, 환경보건과, 환경위생과 등 7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에서 농약, 비료, 사료,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중앙도매시장은 시장 내 사업자에 대한 식품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환경국은 유해화학물질 조사 및 배출억제, 생활문화국은 소비자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도쿄도는 식품 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6월 복지보건국 건강안전실장으로 의장으로 하는 식품안전대책 추진조정회의를 설치하였다<그림 5-5>. 회의는 복지보건국, 생활문화국, 환경국, 산업노동국, 중앙도매시장 등 5개 부서의 부장급 직원으로 구성되어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이나 각 기관의 상호 제휴에 관한 사항 또는 식품의 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 교환, 연락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또한 각 부서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간사회를 마련하여 식품 안전확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협의한다. 이 밖에 보다 폭넓은 사항에 대한 협의

그림 5-5. 식품안전대책추진조정회의 운영 체계



를 위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서가 참가하는 부회를 설치하기도 하며, 긴급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연락회의를 개최한다.

이 밖에 도쿄도는 식품안전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식품위생감시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수의학, 약학, 농예화학, 축산학, 수산학, 의학, 치의학 등의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 중에서 지사가 임명하며, 식품안전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도쿄도에 272명, 특별구 376명, 하치오지시 17명 등 총 665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 관련 업체, 외식점, 수입자 등의 감시·지도, 식품 등의 임의검사, 음식점이나 식품 공장 등의 영업허가, 식중독이나 위반 사항 발생 시 원인조사와 확대방지, 도민으로부터의 문의나 상담에 대응,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안전 관련 시책에 대한 자문과 관련 정보 수집·평가 등을 통해 식품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돕기 위해서는 도쿄도 식품안전심의회와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식품안전심의회는 도쿄도의 독자적인 제도로 식품안전조례에 근거하여 도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대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 심의하는 도지사 부속 기관이다. 식품안전심의회는 식품안전추진계획에 관한 사항과 식품안전확보에 관한 기본 사항들에 대해 조사 심의한다. 심의회는 도민, 식품의 생산·유통·수입·판매와 관련된 사업자, 학식 경험자, 전문가 등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기 2년의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도쿄도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는 식품 등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식품 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식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과학적인 분석 및 평가, 안전성 조사 및 조치 권고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조사 결과에 관련되는 수도·도민·사업자 상호 간의 정보의 공유화 및 의견 교류 방법 등에 관여한다. 위원회는 임기 2년의 도민 및 학식 경험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된다.

이 밖에 식품안전관련기관으로 건강안전연구센터와 시장위생검사소, 축산위생검사소, 보건소 등이 있다<표 5-11>. 건강안전연구센터는 감시업무

와 검사·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감시업무의 일환으로 유통식품의 감시검사, 대규모 식품제조시설의 감시검사, 도매시장 내 감시검사 등을 수행한다. 시장위생검사소는 도매시장 내 식품의 안전확보 기능을 담당하며, 식육위생검사소는 도축검사 등 식육의 안전확보 기능을 담당한다. 이 밖에 도쿄도 보건소는 식품관계영업시설의 허가과 영업시설의 감시·지도 등을 담당한다.

표 5-11. 식품안전 관련 부속기관의 주요 업무

| 구분       | 주요 업무                                                                                                                                                                                                                       |
|----------|-----------------------------------------------------------------------------------------------------------------------------------------------------------------------------------------------------------------------------|
| 건강안전연구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식품제조시설의 감시, 지도</li> <li>◦ HACCP 승인 공장의 감시, 지도</li> <li>◦ 도 전역 유통식품의 감시</li> <li>◦ 시험검사용 식품의 수거·검사</li> <li>◦ 선행조사 실시</li> <li>◦ 사업자 대상 교육</li> <li>◦ 식품·의약품시험 방법 연구</li> </ul> |
| 시장위생검사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내(식품 유통거점) 유통 식품 감시지도</li> <li>◦ 신선식품(농산물, 어패류 가공품 등) 검사</li> </ul>                                                                                                             |
| 식육위생검사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돼지, 말, 면양, 산양의 도축 검사</li> <li>◦ 시장 내 식육 취급 등의 감시지도</li> </ul>                                                                                                                   |
| 보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관계 시설의 인허가 업무</li> <li>◦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감시 및 지도(출입 조사)</li> <li>◦ 영업시설의 검사(조리시설의 세균 검사)</li> <li>◦ 식중독 사건 조사</li> <li>◦ 사업자교육</li> <li>◦ 식품위생에 관한 상담 접수</li> </ul>               |

#### 4. 시사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기본법”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2008년 6월 13일 제정)되어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2003년부터 “식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령적인 대응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최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 3개의 광역자치단체만이 식품안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의 경우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조례, 17개는 식품안전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이 밖에 7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방침 등을 정하고 있다. 도쿄도는 2003년 “도쿄도식품안전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부터 매5년마다 구체적인 식품안전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간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및 연계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식품안전사고의 광역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현재 총 49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하여 식품안전과 관련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별도의 홈페이지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 부족에 의해 효과적인 식품안전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쿄도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인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덜하다. 일본은 200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도쿄도 272명을 포함하여 특별구 376명, 하치오지시 17명 등 총 665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다. 이들은 식품, 위생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 중에서 임명되어, 식품관련 감시·지도뿐만 아니라, 임의검사와 영업허가, 식중독이나 위반 사항 발생 시 원인조사와 확대방지, 도민으로부터의 문의나 상담에 대응,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식품, 위생 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는 지도·단속, 수거 등의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도쿄도의 사례와 비교하여 그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다. 서울시 자체만을 보면 2009년 현재 식품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이 35명 이내에 그치고 있다.

넷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체로 보건 관련 부서, 농업 관련 부서 등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여러 부서가 식품안전행정에 관여하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 복지보건국, 중앙도매시장, 산업노동국, 환경국, 생활문화국 등 여러 부서가 식품안전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다원화된 행정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쿄도는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식품안전대책추진조정회의를 설치하여 부처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도모한다.

표 5-12.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관리 비교

| 구분                              | 주요 내용                                                      |                                                                                      |
|---------------------------------|------------------------------------------------------------|--------------------------------------------------------------------------------------|
|                                 | 우리나라                                                       | 일본                                                                                   |
| 식품안전<br>기본법 제정                  | ◦ 2008년 6월 13일 제정                                          | ◦ 2003년 5월 23일 제정                                                                    |
| 식품안전<br>관련 조례<br>제정 현황          | ◦ 3개 지방자치단체<br>-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 ◦ 식품안전조례: 31개 지자체<br>◦ 식품안전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17개 지자체<br>◦ 식품안전기본방침: 7개 지자체                |
| 식품안전<br>행정체계                    | ◦ 다원화된 체계<br>- 일반적으로 농업 및 보건 관련 부서 등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업무 수행 | ◦ 다원화된 체계<br>- 도쿄도: 복지보건국, 중앙도매시장, 산업노동국, 환경국, 생활문화국 등 여러 부서가 식품안전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업무 수행 |
| 식품안전<br>담당인력<br>(식품위생<br>감시원현황) | ◦ 서울시: 식품 및 축산물 위생감시원 35명 이내(2009년)                        | ◦ 도쿄도: 272명(2007년)<br>- 도쿄도 272명, 특별구 376명, 하치오지시 17명 총 665명                         |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기본원칙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체계 개편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추진방향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체계 개편에 있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1. 기본원칙

### 1.1.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성 확보

지역 간 식품 유통 증가와 국가 간 식품교역의 확대에 따라 식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광역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제1조(목적) 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명시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의 한 축으로 포함시킨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밀접하여 식품안전관련 지도·단속, 관련업의 인·허가 등 실질적인 정책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설문조사 결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업무 담당자들도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였다(관련 공무원 평가: 5점 척도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중요도 3.82

점, 기초자치단체의 중요도 4.50점). 식품안전관리는 중앙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sup>49</sup>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식품안전관리 효율성의 확보라는 종합적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 1.2. 소비자의 신뢰 및 안전 확보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 높다고 평가한 소비자는 15.6%에 불과하였다. 관련 정책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소비자도 12.7%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가능케 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로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 개편에 있어서 식품안전관리의 궁극적 목적인 식품위해로부터의 소비자 안전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추진방향

### 2.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지자체 고유 업무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그러나 안전성 조사, 지도·단속 등 일부 업무가 중앙정부와 중복되어 수행되어 행정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지방자치단체

<sup>49</sup> 5점 척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에서 매우 중요함 5까지 분포됨.

의 업무 추진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식품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안전업무 담당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안전성 조사, 지도·단속 등의 업무가 어느 정도 중복되고(5점 척도 기준 평균 3.47점), 역할 분담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87점).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중앙정부 50.0%, 광역자치단체 80.0%, 기초자치단체 66.0%).

설문조사 결과 중앙정부 업무 담당자들의 경우 다소 이견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자들은 중앙정부는 ‘관련정책 수립’, ‘안전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는 ‘감시·감독업무’, ‘관련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에는 소비자도 전반적으로 찬성하였다.

표 6-1.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에 대한 담당 공무원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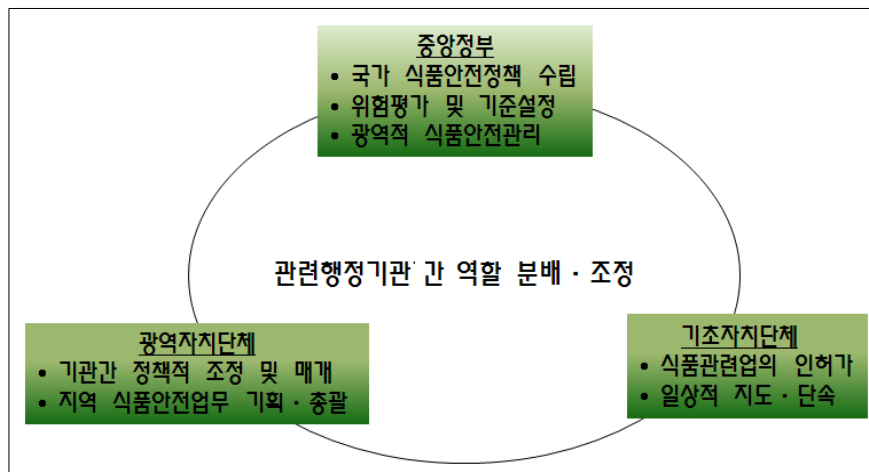
| 구분                         | 중앙    | 광역    | 기초    |
|----------------------------|-------|-------|-------|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예산 등 조정 및 지원    | 13.3  | 26.3  | 45.5  |
|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조정 및 매개자 역할 | 53.3  | 36.8  | 30.3  |
| 지역의 안전업무 기획 및 계획           | 30.0  | 33.3  | 21.4  |
|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평가              | 3.3   | 3.5   | 1.4   |
| 기타                         | -     | -     | 1.4   |
| 합계                         | 100.0 | 100.0 | 100.0 |

주 1)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함.

일본의 경우 중앙의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 평가, 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은 규격·기준의 설정과 정책 수립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사업자의 감시·지도, 지역 내 유통 식품 검사,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 교환 등이 있다. 수입식품의 국경검사는 국가에서 담당하지만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시, 검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식품안전정책 수립, 위험평가 및 기준설정 등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개별적인 대처가 어려운 광역적인 식품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식품관련업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업무는 사례조사에서도 지역민의 편의성, 현장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는 세부 업무의 배분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방향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조정 및 매개 역할을 하거나, 지역의 안전업무를 총괄·기획 및 조정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식품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배·조정안



현장 업무집행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무분담의 명확화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중복이 발생하거나 업무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중복이 일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향후 일상적 지도·단속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가 추진되면, 업무조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식품위해사고 발생 시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은 사안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조직 및 업무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정원 및 일부 업무의 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물식품부의 경우 지역에서 주도적인 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한 주요 검역·검사기관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은 이러한 관련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 2.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 강화

현재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미약한 측면이 있으며, 시도·단속 등 일부 업무의 경우 중앙정부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의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조직적 역량은 식품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례 조사에서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은 지역 온정주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성 등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에 소극적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은 역할 확대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예산과 지원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업무 확대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들은 농식품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규모(5점 척도 기준 평균 1.82점) 및 전문성(1.82점), 예산(1.89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sup>50</sup> 이러한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 부족 등 인력적인 측면은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효율적인 농식품 안전행정을 위해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에 의해 지적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약 4명 정도의 인원으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보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서는 부서 내에 안전관리 인력이 약 2명에 불과하였다<표 6-2> <표 6-3>.

표 6-2. 유형별 평균 부서 인원 및 농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 수

단위: 명, %

| 구분          |       | 부서 인원 | 농식품 안전<br>관련 업무<br>담당자 수 | 담당자 비중 |
|-------------|-------|-------|--------------------------|--------|
| 자치단체<br>유형별 | 광역시   | 17.1  | 4.2                      | 24.6   |
|             | 기초    | 18.2  | 4.5                      | 24.7   |
| 부서<br>유형별   | 농업    | 17.1  | 1.7                      | 9.9    |
|             | 보건·위생 | 18.6  | 6.7                      | 36.0   |

표 6-3. 인력보충의 필요성

단위: 명(%)

|     | 전혀<br>필요하지<br>않음 | 필요하지<br>않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합계        |
|-----|------------------|------------|---------|----------|----------|-----------|
| 광역시 | 0(0.0)           | 1(5.0)     | 1(5.0)  | 10(50.0) | 8(40.0)  | 20(100.0) |
| 기초  | 1(2.0)           | 4(8.0)     | 6(12.0) | 24(48.0) | 15(30.0) | 50(100.0) |

<sup>50</sup> 설문조사에서 5점 척도는 매우 부족함 1에서 매우 적절함 5까지 분포됨.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인력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도쿄도는 200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도쿄도 272명을 포함하여 특별구 376명, 하치오지시 17명 등 총 665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다. 이들은 식품, 위생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 중에서 임명되어, 식품관련 감시·지도뿐만 아니라, 임의검사와 영업허가, 식중독이나 위반 사항 발생 시 원인조사와 확대방지, 도민으로부터의 문의나 상담에 대응,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식품, 위생 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는 지도·단속, 수거 등의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도쿄도와 비교하여 그 규모도 적다. 서울시 자체만을 보면 2009년 현재 식품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이 35명 이내에 그치고 있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행정을 위한 인력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이원화된 안전관리체계와는 별도로 보건위생부서와 농업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행정체계를 개편하여 식품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 통합을 통해 인력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보다 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중앙정부(100.0%),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90.0%, 기초자치단체 86.0%)는 대체로 농식품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업과 보건위생부서의 식품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전담조직을 통해 지도·단속 등 일부 업무 또는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전담케 함으로써 일관되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 밖에 예산, 인력 등 행정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역량을 개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3.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체계적 계획 마련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례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관심이 부족하였으며,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종합적·체계적 식품안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주요한 법률적 변화 및 조직·행정적 변화와 관련 논의는 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후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조직 내 변화 및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지만(81.8%), 광역자치단체는 이러한 비율이 50.0%, 기초자치단체는 3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종합적·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현재 30여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식품안전 관련 조례 또는 방침 등을 정하고 있으며, 7개 지자체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도쿄도는 2003년 “도쿄도 식품안전조례”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부터 매5년마다 식품안전 관련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이 식품안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지침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매년 수립하던 업무계획의 연장선상에서 형식적으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데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2.4.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

과거와 달리 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다른 지역 더 나아가 전국적

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가 추진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련부처 간 식품안전업무를 협의하고 종합·조정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지방차원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2002년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연계와 식품안전사고의 광역화에 대처하기 위해 4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에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식품안전관련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기적으로 지역의 식품안전 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광역적인 식품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 2.5.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객관적 업무 수행을 위한 감독 장치 마련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를 고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례 조사에서 식품안전업무 담당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되며, 관할 구역이 중앙정부보다 좁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부처에 비해 업무 수행과정에 지역 온정주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일부 소비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 관리 저해 요인으로 지역 온정주의(20.2%)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지역 온정

주의(27.0%)를 주요 이유로 제시하였다. 특히 중앙정부 관련 공무원의 42.4%가 지역 온정주의를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식품안전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견지에서 단일 기구에서 업무조정 및 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부록 1

### 주요 식품안전 관련 법령의 법 제정 목적

####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령

| 소관<br>부처    | 관련 법령        | 주요 목적                                                                                                           |
|-------------|--------------|-----------------------------------------------------------------------------------------------------------------|
| 농림수산<br>식품부 | 농산물품질<br>관리법 |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                                         |
|             | 가축전염병<br>예방법 |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과 확산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                                                               |
|             | 축산법          | 가축 개량·증식, 축산업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함.  |
|             | 축산물<br>가공처리법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  |
|             | 사료관리법        |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
|             | 농약관리법        |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             | 양곡관리법        |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
|             | 친환경농업<br>육성법 |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                              |
|             | 수산물<br>품질관리법 | 수산물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                             |
|             | 식품산업<br>진흥법  |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             | 비교관리법        | 비료의 품질 보전과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                                                        |
|             | 인삼산업법        |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             | 염관리법         | 염산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여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령

| 소관부처    | 관련 법령            | 주요 목적                                                                                     |
|---------|------------------|-------------------------------------------------------------------------------------------|
| 보건복지가족부 | 식품위생법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                           |
|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 |
|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      |
|         | 전염병예방법           |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                                                          |
|         | 약사법              |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
|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      |

## ■ 기타 부처 소관 법령

| 소관부처    | 관련 법령                     | 주요 목적                                                                                                                                                                          |
|---------|---------------------------|--------------------------------------------------------------------------------------------------------------------------------------------------------------------------------|
| 지식경제부   | 대외무역법                     |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                                                                                                      |
|         | 산업표준화법                    |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 |
| 환경부     | 먹는 물 관리법                  |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먹는 물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함.                                                                                                             |
|         | 수도법                       |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함.                                                                                                             |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                                                                                                           |
|         | 학교보건법                     | 학교 보건관리, 환경위생 정화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                                                                                                                               |

## 부록 2

## 식품안전 관련 법령상의 권한분배 현황

부표 2-1.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2장 농산물의<br>규격·<br>품질인증 등 | 제4조 표준규격화                   | ●        |                |                |
|                           | 제5조 품질인증                    | ●        |                |                |
|                           | 제10조 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 ●        |                |                |
|                           | 제11조 표시품에 대한 지정명령 등         | ●        |                |                |
|                           | 제12조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실시         | ●        | ●              |                |
|                           | 제13조 시료수거 등                 | ●        | ●              |                |
|                           | 제14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 ●        | ●              |                |
|                           | 제15조 원산지의 표시                | ●        |                |                |
| 제3장 원산지 등의 표<br>시         | 제1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 ●        |                |                |
|                           | 제18조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실시        | ●        | ●              |                |
|                           | 제18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        | ●              |                |
| 제4장 농산물의 검사<br>등          | 제18조의3 행정제재의 요청 등           | ●        | ●              |                |
|                           | 제19조 농산물의 검사                | ●        |                |                |
|                           | 제24조 검사판정의 취소               | ●        |                |                |
| 제5장 보칙                    | 제25조 보고 및 점검 등              | ●        |                |                |
| 제6장 벌칙                    |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        |                |                |
|                           | 제38조 과태료                    | ●        | ●              |                |

부표 2-2. 사료관리법상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1장 총칙       | 제3조 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 ●        |                |                |
| 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 | 제5조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 ●        |                |                |
|              | 제6조 사료의 수입추천 등         | ●        |                |                |
|              | 제7조 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 ●        |                |                |
|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          | ●              |                |
|              | 제11조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          | ●              |                |
|              | 제15조 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등    | ●        |                |                |
|              | 제1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        |                |                |

|            |                               |   |   |  |
|------------|-------------------------------|---|---|--|
|            | 제17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 ● |   |  |
|            | 제18조 사료공정서의 작성·보급             | ● |   |  |
| 제4장 사료검사 등 | 제19조 사료의 수입신고 등               | ● | ● |  |
|            | 제21조 사료검사                     | ● | ● |  |
|            | 제22조 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 ● |   |  |
|            | 제23조 사료의 재검사                  | ● | ● |  |
|            | 제24조 폐기 등의 조치                 | ● | ● |  |
|            | 제25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   | ● |  |
|            | 제26조 과징금처분                    |   | ● |  |
| 제5장 보칙     | 제27조 감독                       | ● | ● |  |
|            | 제30조 청문                       |   | ● |  |
|            |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 ● | ● |  |
| 제6장 벌칙     | 제36조 과태료                      | ● | ● |  |

부표 2-3. 염관리법상의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3조 염제조업 등의 허가         |        |          | ●              |                |
| 제10조의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 ●        |                |                |
| 제23조 허가취소 등            |        |          | ●              |                |
| 제24조 청문                | 지정취소 시 | ●        |                |                |
|                        | 허가취소 시 |          | ●              |                |
|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        | ●        |                |                |

부표 2-4. 농약관리법상의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2장 영업의 등록 등   | 제3조 영업의 등록 등(판매업)                  |          |                | ●              |
|                |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 ●        |                | ●              |
|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 제9조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 ●        |                |                |
|                | 제10조 품목등록증의 발급                     | ●        |                |                |
|                | 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 ●        |                |                |
|                | 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 ●        |                |                |
|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 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                   | ●        |                |                |
|                | 제24조 유통농약의 검사 등                    | ●        | ●              |                |
|                | 제25조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 ●        |                | ●              |
| 제5장 보칙         | 제26조 이의신청                          | ●        |                |                |
|                | 제27조 제출 자료의 보호                     | ●        |                |                |

|        |                |   |  |   |
|--------|----------------|---|--|---|
|        | 제29조 청문        | ● |  | ● |
|        |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 ● |  |   |
| 제6장 벌칙 | 제40조 과태료 부과    | ● |  | ● |

부표 2-5. 양곡관리법상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2장 양곡의 관리 | 제3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 ●        |                |                |
|            | 제4조 양곡의 매입 및 선급 지급 등   | ●        |                |                |
|            | 제5조 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 ●        |                |                |
|            | 제9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        |                |                |
|            | 제9조의2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 ●        |                |                |
|            | 제10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 ●        |                |                |
|            | 제11조 양곡의 수출입           | ●        |                |                |
|            | 제1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 ●        |                |                |
|            | 제13조 수입양곡의 관리 등        | ●        |                |                |
|            | 제13조의2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        |                |                |
|            | 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 | ●        |                |                |
|            | 제19조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          |                | ●              |
|            | 제20조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 ●        |                |                |
|            | 제21조 영업정지 등            |          |                | ●              |
|            | 제22조 미곡유통업의 육성         | ●        |                |                |
| 제3장 보칙     | 제24조 업무대행              | ●        |                |                |
|            | 제26조 용자 및 보조           | ●        |                |                |
|            | 제27조 감독                | ●        |                |                |
|            | 제27조의2 명예감시원           | ●        | ●              | ●              |
|            | 제27조의3 포상금 지급          | ●        |                |                |
|            | 제28조 청문                |          |                | ●              |
| 제4장 벌칙     |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 ●        |                |                |
|            | 제36조 과태료               | ●        |                | ●              |

부표 2-6. 비료관리법상의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4조 공정규격의 설정 등            |  | ●        |                |                |
| 제7조 비료의 공급 (2항 비료의 공급 관리) |  | ●        | ●              |                |
| 제10조 위해성비료 등의 수입제한        |  | ●        |                |                |
|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  |          |                | ●              |
|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  |          |                | ●              |
| 제18조 품질검사                 |  | ●        |                | ●              |

|                       |   |  |   |
|-----------------------|---|--|---|
| 제19조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   |  | ● |
| 제20조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   |  | ● |
| 제21조 과징금처분            |   |  | ● |
| 제22조 청문               |   |  | ● |
| 제24조 감독               | ● |  | ● |
| 제26조 권한의 위임           | ● |  |   |
| 제32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 ● |  | ● |

부표 2-7. 인삼산업법상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1장 총칙              | 제3조 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사업비 보조)    | ●        | ●              | ●              |
| 제2장 인삼경작 및 수확       | 제8조 경작방법 및 지도 등             | ●        |                |                |
| 제3장 계약경작 및 수<br>급조절 | 제10조 계약경작 등                 | ●        |                |                |
|                     | 제11조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          | ●        |                |                |
| 제4장 인삼류 등 제조        | 제12조 인삼류 제조업 및 인삼류제품류제조의 신고 |          |                | ●              |
|                     |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          |                | ●              |
|                     | 제15조 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 ●        |                |                |
|                     | 제16조 영업폐쇄 등                 |          |                | ●              |
|                     | 제17조의2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 ●        |                |                |
|                     | 제17조의3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 ●        |                |                |
|                     | 제17조의4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 ●        |                |                |
|                     | 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3항        | ●        |                |                |
| 제8장 보칙              | 제27조의2 청문                   | ●        |                | ●              |
|                     | 제28조 권한의 위임                 | ●        |                |                |
|                     | 제29조 조사 등                   | ●        |                | ●              |
|                     | 제33조 과태료                    | ●        |                | ●              |

부표 2-8. 친환경육성법상의 권한분배

| 법조항                  |                          |              | 역할 범위    |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1장 총칙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br>단체의 책무  | 1항 종합적 시책 추진 | ●        |                |                |
|                      |                          | 2항 지역별 정책 수립 |          | ●              | ●              |
|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br>및 지원 | 제6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              | ●        |                |                |
|                      | 제7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              |          | ●              | ●              |
|                      | 제9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 ●        | ●              | ●              |
|                      | 제10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              | ●        | ●              | ●              |
|                      | 제11조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제12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 ●             | ● | ● |
|                  | 제13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 ●             | ● | ● |
|                  | 제14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 ●             | ● | ● |
|                  | 제15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 1항 기술 상호 교류   | ● | ● |
|                  |                           | 2항 우수사례 발굴·홍보 | ● | ● |
| 제3장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 | 제17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 ●             |   |   |
|                  | 제17조의2 인증기관의 지정           | ●             |   |   |
|                  | 제17조의3 인증의 신청 및 심사        | ●             |   |   |
|                  | 제17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             |   |   |
|                  | 제18조 표시 변경의 명령 등          | ●             |   |   |
|                  | 제18조의2 인증의 취소             | ●             |   |   |
|                  | 제18조의3 보고 및 점검 등          | ●             |   |   |
|                  |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             | ● | ● |
|                  | 제19조의2 인증품 정보의 표시 권고      | ●             |   |   |
|                  | 제20조 우선구매                 | ●             | ● | ● |
| 제4장 국제협력 등       | 제21조 국제협력                 | ●             |   |   |
|                  | 제22조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 ●             |   |   |
|                  |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 ●             |   |   |
|                  | 제24조 청문 등                 | ●             |   |   |
| 제5장 벌칙           | 제27조 과태료                  | ●             | ● | ● |

부표 2-9.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                                 |        |        |
|                       | 제5조 용기등의 규격 등              | ●                                 |        |        |
|                       |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 ●                                 |        |        |
|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 제7조 가축의 도살 등 신고            |                                   | ●      |        |
|                       | 제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1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 ●      |        |
|                       |                            | 3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의 지정           | ●      |        |
|                       |                            | 5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에 증명서 발급      | ●      |        |
|                       |                            | 7항 필요 기술·정보제공 교육 훈련 실시            | ●      | ●      |
|                       |                            | 8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지정의 취소 및 시정 명령 | ●      |        |
|                       |                            | 10항 출입·검사 면제, 용자사업 우선 지원          | ●      | ●      |
|                       |                            | 11항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       | ●      |        |
|                       | 제9조의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 ●                                 |        |        |

|                   |                                        |                 |   |   |
|-------------------|----------------------------------------|-----------------|---|---|
|                   | 제10조의2 축산물의 포장 등                       | ●               |   |   |
| 제4장 검사            | 제11조 가축의 검사(2항 착유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명령)    |                 | ● |   |
|                   |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 4항 검사 위탁        | ● |   |
|                   |                                        | 5항 식용란 검사 명령    | ● |   |
|                   | 제12조의2 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 ●               | ● | ● |
|                   | 제12조의3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 1항 검사결과 통보      | ● | ● |
|                   |                                        | 2항 이의신청 접수      | ● | ● |
|                   |                                        | 3항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 ● | ● |
|                   |                                        | 4항 재검사 실시 결과 통보 | ● | ● |
|                   | 제13조 검사관과 자체검사원 임명·위촉                  | ●               | ● |   |
|                   | 제14조 검사보조원                             | ●               |   |   |
|                   | 제15조 수입축산물의 신고 등(2항 통관절차 완료 전의 축산물 검사) | ●               |   |   |
|                   | 제19조 출입·검사·수거                          | ●               | ● | ● |
|                   | 제20조의2 축산물위생감시원                        | ●               | ● | ● |
|                   | 제20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               |   |   |
|                   | 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               | ● | ● |
|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 제22조 영업의 허가 및 관련사항 변경                  |                 | ● | ● |
|                   | 제24조 영업의 신고                            |                 |   | ● |
|                   | 제25조 품목제조보고                            |                 | ● |   |
|                   | 제26조 영업의 승계                            | ●               | ● | ● |
|                   |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 ●               | ● | ● |
|                   | 제28조 과징금처분                             | ●               | ● | ● |
|                   |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 ●               | ● | ● |
| 제6장 감독            | 제33조의2 위해평가                            | ●               |   |   |
|                   | 제2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 ●               | ● | ● |
|                   | 제35조 시설개수                              | ●               | ● | ● |
|                   | 제36조 압류·폐기 또는 회수                       | ●               | ● | ● |
|                   | 제37조 공표                                | ●               | ● | ● |
| 제7장 보칙            | 제38조 폐쇄조치                              | ●               | ● | ● |
|                   | 제39조 포상금                               | ●               |   |   |
|                   | 제40조 보조금                               | ●               | ● | ● |
|                   |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 ●               |   |   |
|                   | 제43조 청문                                | ●               | ● | ● |
| 제8장 벌칙            |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 ● |   |
|                   | 제47조 과태료                               | ●               | ● | ● |

부 표 2-10. 가축전염병예방방법상의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1장 총칙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              | ●              |
|             | 제4조 가축방역협의회                      | ●        | ●              |                |
|             | 제6조 가축방역교육                       | ●        | ●              | ●              |
|             | 제7조 가축방역관                        | ●        | ●              | ●              |
|             | 제8조 가축방역사                        | ●        | ●              | ●              |
|             | 제9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경비 지원)            | ●        | ●              | ●              |
| 제2장 가축의 방역  | 제10조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 ●        |                |                |
|             | 제11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          | ●              | ●              |
|             | 제12조 병성감정 등                      | ●        | ●              | ●              |
|             | 제12조의2 지정취소 등                    | ●        |                |                |
|             | 제13조 역학조사                        | ●        | ●              |                |
|             | 제14조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 ●        |                | ●              |
|             | 제15조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 ●        | ●              | ●              |
|             | 제16조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등              | ●        | ●              | ●              |
|             | 제17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 ●        |                |                |
|             |                                  |          | ●              |                |
|             | 제18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 ●        | ●              |                |
|             |                                  |          | ●              | ●              |
|             |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                | ●              |
|             | 제20조 살처분 명령                      |          |                | ●              |
|             | 제21조 도태의 권고                      |          |                | ●              |
|             | 제23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3항 긴급시 소독작업 실시)  | ●        | ●              |                |
|             | 제24조 발굴의 금지(예외 허가)               |          |                | ●              |
|             | 제25조 축사 등의 소독                    |          |                | ●              |
|             | 제27조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          |                | ●              |
|             | 제29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 ●        | ●              |                |
| 제3장 수출입의 검역 | 제32조 수입금지                        | ●        |                |                |
|             | 제32조의2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 ●        |                |                |
|             | 제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 ●        |                |                |
| 제4장 보칙      | 제48조 보상금 등                       | ●        | ●              | ●              |
|             | 제49조 생계안정지원                      | ●        | ●              | ●              |
|             |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 ●        | ●              | ●              |
|             | 제51조 보고                          | ●        | ●              |                |
|             | 제5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 ●        |                |                |
|             |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            | ●        | ●              |                |
|             | 제54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 ●        | ●              | ●              |
|             | 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                   | ●        | ●              | ●              |
| 제5장 벌칙      | 제60조 과태료                         | ●        | ●              | ●              |

부 표 2-11. 축산법상의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1장 총칙                | 제3조 축산발전정책의 강구(사업비 지원)           | ●        | ●              | ●                          |
| 제2장 가축 개량 및<br>인공수정 등 |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2항 계획 수립·시행)       | ●        | ●              |                            |
|                       | 제6조 가축의 등록                       | ●        |                |                            |
|                       | 제7조 가축의 검정                       | ●        |                |                            |
|                       | 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 ●        | ●              | 1항 지정 ●<br>2항 보호지원금 등 지급 ● |
|                       |                                  |          |                |                            |
|                       | 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 ●        |                |                            |
|                       |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 ●        | ●              |                            |
|                       | 제11조 수정사의 면허                     |          | ●              |                            |
|                       | 제13조 수정사의 교육(경비 지원)              | ●        | ●              | ●                          |
|                       |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          | ●              |                            |
|                       | 제15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                  |          | ●              |                            |
|                       | 제16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          | ●              |                            |
|                       |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          |                | ●                          |
|                       | 제20조 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          | ●              | ●                          |
|                       | 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              | ●        |                |                            |
| 제3장 축산물의 수<br>급 등     | 제22조 축산업의 등록                     |          |                | ●                          |
|                       | 제24조 영업의 승계                      |          |                | ●                          |
|                       | 제25조 축산업의 등록취소 등                 |          |                | ●                          |
|                       | 제28조 축산업 등록자에 대한 감독              |          |                | ●                          |
|                       |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2항 기준의 고시)     | ●        |                |                            |
|                       | 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2항 수입 추천 업무) | ●        |                |                            |
|                       | 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 ●        |                |                            |
|                       |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전사업(자금지원)             | ●        | ●              | ●                          |
|                       | 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 ●        |                |                            |
| 제4장 가축시장과<br>축산물의 등급화 | 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검사)              |          |                | ●                          |
|                       |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 ●        |                |                            |
|                       | 제36조 축산물등급판정소                    |          |                |                            |
|                       | 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 ●        | ●              |                            |
| 제5장 축산발전기금            | 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 ●        | ●              |                            |
|                       | 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 ●        |                |                            |
|                       |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        |                |                            |
|                       | 제46조 자금의 차입                      | ●        |                |                            |
|                       | 제48조 기금의 운용·관리                   | ●        |                |                            |
| 제6장 보칙                | 제50조 청문                          |          | ●              | ●                          |
| 제7장 벌칙                | 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                   | ●        | ●              |                            |
|                       | 제56조 과태료                         |          | ●              | ●                          |

부표 2-12.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1장 총칙                                | 제4조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 ●        |                |                |
| 제2장 수산물의 품질<br>관리                     | 제5조 표준규격화                                    | ●        |                |                |
|                                       | 제6조 품질인증                                     | ●        |                |                |
|                                       | 제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        |                |                |
|                                       | 제8조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6항 수산물이력추적관<br>리에 필요한 자금 지원) | ●        |                |                |
|                                       | 제8조의3 친환경수산물인증                               | ●        |                |                |
|                                       | 제9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 ●        |                |                |
|                                       | 제12조 표시정지 등의 처분                              | ●        |                |                |
|                                       | 제13조 표시방법의 시정명령                              | ●        |                |                |
|                                       | 제13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        | ●              |                |
| 제3장 수산물 가공산<br>업의 육성 및 관리             | 제15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 ●        |                |                |
|                                       | 제16조 자금의 지원                                  | ●        |                |                |
|                                       | 제17조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등                       |          | ●              | ●              |
|                                       | 제18조 수산전통식품의 개발 등                            | ●        |                |                |
|                                       | 제1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                         | ●        | ●              | ●              |
|                                       | 제20조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                      | ●        | ●              |                |
|                                       | 제21조 우선구매                                    | ●        |                |                |
| 제4장 지정해역의 지<br>정 및 생산·가공시설<br>의 등록·관리 | 제22조 위생관리기준                                  | ●        |                |                |
|                                       | 제23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        |                |                |
|                                       | 제24조 지정해역의 지정                                | ●        |                |                |
|                                       | 제24조의2 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                          | ●        | ●              | ●              |
|                                       | 제24조의3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br>지           | ●        |                |                |
|                                       | 제26조 조사·점검                                   | ●        |                |                |
|                                       | 제27조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 ●        |                |                |
|                                       | 제28조 생산·가공의 중지 등                             | ●        |                |                |
| 제5장 수산물 및 수<br>산가공품의 검사               | 제29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 ●        |                |                |
|                                       | 제30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 ●        |                |                |
|                                       | 제32조 검사증서의 발급                                | ●        |                |                |
|                                       | 제33조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 ●        |                |                |
|                                       | 제35조 검사 판정의 취소                               | ●        |                |                |
| 제6장 이식용수산물의<br>검역                     | 제37조 파견검역                                    | ●        |                |                |
|                                       | 제38조 검역증명서                                   | ●        |                |                |
|                                       | 제39조 이식용수산물의 폐기명령 등                          | ●        |                |                |
|                                       | 제41조 검역 판정의 취소                               | ●        |                |                |
| 제7장 수산물의 안전<br>성조사 등                  | 제42조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 ●        |                |                |
|                                       | 제43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 ●        |                |                |
|                                       | 제44조 검정                                      | ●        |                |                |
|                                       | 제44조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br>제공           | ●        |                |                |
| 제8장 보칙                                | 제46조 출입, 조사, 시료 채취 등                         | ●        |                |                |
|                                       | 제47조 명예감시원                                   | ●        |                |                |

|        |                        |   |  |   |
|--------|------------------------|---|--|---|
|        | 제48조 포상금               | ● |  |   |
|        | 제49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 ● |  |   |
|        | 제50조 청문                | ● |  |   |
|        | 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         | ● |  |   |
| 제9장 벌칙 | 제56조 과태료               | ● |  | ● |

부표 2-13. 식품산업진흥법상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 제1장 총칙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      | ●      |
|                    | 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             |        |        |
|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관의 조성 | 제7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 1항 전문인력 양성 노력 | ●      | ●      |
|                    |                           | 2항 양성기관 지정·관리 | ●      |        |
|                    |                           | 3항 경비 지원      | ●      | ●      |
|                    | 제8조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             |        |        |
|                    | 제9조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요청 자료 협조) | ●             |        |        |
|                    | 제10조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 ●             | ●      | ●      |
|                    | 제12조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         | ●             |        |        |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 제13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 ●             |        |        |
|                    | 제14조 식품명인의 지정             | ●             |        |        |
|                    | 제15조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 ●             |        |        |
|                    | 제16조 산지가공산업의 육성           | ●             |        |        |
|                    | 제17조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 ●             | ●      | ●      |
|                    | 제18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 ●             | ●      | ●      |
|                    | 제19조 식품성분 조사 등            | ●             |        |        |
|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 제20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 ●             |        |        |
|                    | 제21조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 ●             |        |        |
|                    | 제22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             |        |        |
|                    | 제23조 유기농식품의 인증            | ●             |        |        |
|                    | 제24조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원 등        | ●             |        |        |
|                    | 제26조 우수식품인증의 사후관리         | ●             |        |        |
|                    |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 ●             |        |        |
| 제5장 보칙             | 제29조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 ●             |        |        |
|                    | 제31조 조세의 감면               | ●             | ●      | ●      |
|                    | 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 ●             | ●      | ●      |
|                    | 제33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 ●             |        |        |
|                    | 제33조의2 청문                 | ●             |        |        |
| 제6장 벌칙             |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 ●             |        |        |
|                    | 제38조 과태료                  | ●             |        |        |

부표 2-14. 식품위생법상의 권한분배

|                         | 법조항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                       |                |                |
|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 제9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                       |                |                |
| 제4장 표시                  | 제10조 표시기준                                        | ●                       |                |                |
|                         | 제11조 식품의 영양표시 등                                  | ●                       |                |                |
| 제5장 식품 등의 공전(公典)        | 제14조 식품 등의 공전                                    | ●                       |                |                |
| 제6장 검사 등                | 제15조 위해평가                                        | ●                       |                |                |
|                         | 제16조 소비자의 위생검사 등 요청                              | ●                       |                |                |
|                         | 제17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 ●                       |                |                |
|                         | 제18조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안전성 평가 등                        | ●                       |                |                |
|                         | 제21조 특정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 ●                       |                |                |
|                         | 제22조 출입·검사·수거 등                                  | ●                       | ●              | ●              |
|                         | 제23조 식품 등의 재검사                                   | ●                       | ●              | ●              |
|                         | 제26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출입 등                              | ●                       |                |                |
|                         | 제27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                       |                |                |
|                         |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2항 자가품질위탁검사)                      | ●                       | ●              |                |
|                         | 제32조 식품위생감시원                                     | ●                       | ●              | ●              |
|                         | 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                       | ●              | ●              |
|                         | 제35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3항 우수 등급 영업소의 검사 면제)          | ●                       | ●              | ●              |
| 제7장 영업                  | 제37조 영업허가 등                                      | ●                       | ●              | ●              |
|                         | 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                         |                |                |
|                         | 제43조 영업 제한                                       |                         | ●              |                |
|                         | 제47조 위생등급                                        | ●                       | ●              | ●              |
|                         | 제48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                       |                |                |
|                         | 제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7항 식품이력 추적관리기준 위반 시 등록을 취소) | ●                       |                |                |
|                         | 제50조 위생수준 안전평가                                   | 1항 식품 등의 위생관리, 안전성 평가   | ●              |                |
|                         |                                                  | 2항 안전평가기준의 고시           | ●              |                |
|                         |                                                  | 4항 우수등급 영업소 공표          | ●              |                |
|                         |                                                  | 8항 안전평가 영업소의 검사 면제      | ●              | ●              |
|                         |                                                  | 9항 안전평가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 ●              | ●              |
|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제5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                       |                |                |
|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 제67조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설립                                | ●                       |                |                |
| 제3절 식품안전정보센터            | 제70조 지도·감독 등                                     | ●                       |                |                |
|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 제71조 시정명령                                        | ●                       | ●              | ●              |
|                         | 제72조 폐기처분 등                                      | ●                       | ●              | ●              |

|         |                                                  |   |   |   |
|---------|--------------------------------------------------|---|---|---|
|         | 제73조 위해식품 등의 공표                                  | ● | ● | ● |
|         | 제74조 시설 개수명령 등                                   | ● | ● | ● |
|         | 제75조 허가취소 등                                      | ● | ● | ● |
|         |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                                   | ● | ● | ● |
|         | 제77조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 ● |   |   |
|         | 제79조 폐쇄조치 등                                      | ● |   |   |
|         | 제80조 면허취소 등                                      | ● | ● | ● |
|         | 제81조 청문                                          | ● | ● | ● |
|         |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 | ● | ● |
|         | 제83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 | ● | ● |
| 제12장 보칙 | 제84조 위반사실 공표                                     | ● | ● | ● |
|         | 제85조 국고 보조                                       | ● |   |   |
|         | 제86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3항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원인시설 등에 대한 검사) | ● |   |   |
|         | 제87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 ● |   |   |
|         | 제89조 식품진흥기금                                      |   |   | ● |
|         | 제90조 포상금 지급                                      | ● | ● | ● |
|         | 제91조 권한의 위임                                      | ● | ● |   |

부표 2-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1장 총칙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        | ●              | ●              |
|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br>보호구역 지정관리 | 제5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                | ●              |
|                           | 제6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          |                | ●              |
|                           | 제7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          |                | ●              |
|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br>관리 등      | 제8조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 ●        |                |                |
|                           | 제9조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        |                |                |
|                           | 제13조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 ●        | ●              | ●              |
| 제4장 올바른 식생활<br>정보 제공 등    | 제14조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 ●        |                |                |
|                           | 제18조 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 ●        |                |                |
|                           | 제19조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              | ●        |                |                |
|                           | 제20조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 ●        |                |                |
|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br>지원센터       |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 ●        | ●              | ●              |
|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br>체계 구축     | 제23조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 ●        |                |                |
|                           | 제24조 시·군·구의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 등      | ●        |                |                |
|                           | 제26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3항 시행계획) | ●        | ●              | ●              |
| 제7장 시정명령                  | 제27조 시정명령 등                       | ●        | ●              | ●              |
|                           | 제28조 청문                           |          |                | ●              |
| 제8장 과태료                   | 제29조 과태료                          | ●        | ●              | ●              |

부표 2-16. 약사법상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                                |          |                |                |
| 제1절 자격과 면허           | 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 ●        |                |                |
|                      | 제8조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 ●        |                |                |
| 제2절 약사회 및 한약<br>사회   | 제14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설치 신고)   |          | ●              |                |
|                      | 제15조 연수교육                      | ●        |                |                |
|                      | 제16조 협조의무와 위탁(2항 위탁)           | ●        |                |                |
|                      | 제17조 경비 보조                     | ●        |                |                |
| 제3장 약사(약사)심의위<br>원회  | 제19조 지방약사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등 규칙)    |          | ●              |                |
| 제4장 약국과 조제           |                                |          |                |                |
| 제1절 약국               |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          |                | ●              |
|                      | 제22조 폐업 등의 신고                  |          |                | ●              |
| 제2절 조제               | 제24조 의무 및 준수 사항 5항(필요한 조치의 강구) | ●        |                |                |
|                      | 제25조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             |          |                | ●              |
| 제5장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          |                |                |

|                |                                           |   |   |   |
|----------------|-------------------------------------------|---|---|---|
| 제1절 의약품 등의 제조업 |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 ● |   |   |
|                | 제34조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 등                        | ● |   |   |
|                | 제35조 조건부 허가                               | ● |   |   |
|                | 제39조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행정처분 감면)                 | ● | ● | ● |
|                | 제41조 약국제제의 제조                             |   | ● | ● |
| 제3절 의약품 등의 판매업 | 제45조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   | ● |   |
|                | 제47조의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 (요청 자료 제공 의무) | ● | ● | ● |
| 제6장 의약품 등의 취급  |                                           |   |   |   |
| 제1절 기준과 검정     | 제51조 대한약전                                 | ● |   |   |
|                | 제52조 의약품 등의 기준                            | ● |   |   |
|                | 제54조 방사성 의약품                              | ● |   |   |
| 제5절 의약품 등의 광고  | 제68조의2 광고의 심의 2항(광고심의의 위탁)                | ● |   |   |
| 제7장 감독         | 제69조 보고와 검사 등                             | ● | ● | ● |
|                | 제70조 업무 개시 명령 등                           | ● | ● | ● |
|                | 제71조 폐기 명령 등                              | ● | ● | ● |
|                | 제72조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 ● | ● | ● |
|                | 제73조 검사명령                                 | ● | ● |   |
|                | 제74조 개수명령                                 | ● | ● | ● |
|                |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 ● | ● | ● |
|                | 제77조 청문                                   | ● | ● | ● |
|                | 제78조 약사감시원                                | ● | ● | ● |
|                | 제79조 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 ● |   |   |
|                | 제81조 과징금처분                                | ● | ● | ● |
| 제8장 보칙         | 제83조 국고 보조                                | ● |   |   |
|                | 제84조 권한 위임과 위탁                            | ● | ● | ● |
|                | 제88조 제출된 자료의 보호                           | ● |   |   |
|                | 제92조 센터의 사업(2항 재정지원)                      | ● |   |   |
| 제9장 벌칙         | 제98조 과태료                                  | ● | ● | ● |

부표 2-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의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 제1장 총칙               | 제2조 책무                    | ●     | ●      | ●      |
|                      | 제5조 영업의 허가 등              | ●     |        |        |
| 제2장 영업               | 제6조 영업의 신고                |       |        | ●      |
|                      | 2항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        | ●      |
|                      | 3항 2항의 폐업신고               |       |        | ●      |
|                      | 제7조 품목제조신고 등              | ●     |        |        |
|                      | 제8조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 ●     |        |        |
|                      | 제11조 영업의 승계 신고            | ●     |        | ●      |
|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 제13조 교육                   | ●     |        |        |
|                      | 제14조 기준 및 규격              | ●     |        |        |
|                      | 제15조 원료 등의 인정             | ●     |        |        |
|                      | 제16조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2항 위탁) | ●     |        |        |

|                          |                            |   |  |   |
|--------------------------|----------------------------|---|--|---|
|                          | 제19조 건강기능식품의 공전            | ● |  |   |
| 제4장 검사 등                 | 제20조 출입·검사·수거 등            | ● |  | ● |
|                          | 제21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 ● |  |   |
| 제5장 우수건강기능<br>식품제조기준 등   |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 ● |  |   |
|                          | 제22조의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 |  |   |
| 제8장 시정명령·허가<br>취소 등 행정제재 | 제29조 시정명령                  | ● |  | ● |
|                          | 제30조 폐기처분 등                | ● |  | ● |
|                          | 제31조 시설의 개수명령 등            | ● |  | ● |
|                          | 제32조 영업허가취소 등              | ● |  | ● |
|                          | 제35조 폐쇄조치 등                | ● |  | ● |
|                          | 제36조 청문(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시)  | ● |  | ● |
|                          | 제37조 과징금의 처분               | ● |  | ● |
| 제9장 보칙                   | 제39조 국고보조                  | ● |  |   |
|                          | 제40조 포상금의 지급               | ● |  | ● |
|                          |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 ● |  |   |
| 제10장 벌칙                  | 제47조 과태료                   | ● |  | ● |

부표 2-18.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1장 총칙           | 제3조 책임                        | ●        | ●              | ●              |
|                  |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 ●        |                |                |
|                  | 제4조의2 실행계획 수립 등               | ●        | ●              | ●              |
|                  | 제4조의3 계획수립의 협조                | ●        | ●              | ●              |
|                  | 제5조의3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 ●        | ●              |                |
|                  | 1항 운영·위탁<br>2항 예산 지원          | ●        | ●              | ●              |
| 제2장 국민건강의 관<br>리 | 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 등                | ●        | ●              | ●              |
|                  | 제7조 광고의 금지 등                  | ●        |                |                |
|                  |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 등               | ●        | ●              | ●              |
|                  |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 ●        |                |                |
|                  |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 ●              | ●              |
|                  |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               | ●        | ●              | ●              |
|                  | 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              | ●        | ●              | ●              |
|                  | 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 등               | ●        |                |                |
|                  | 제15조 영양개선                     | ●        | ●              | ●              |
|                  | 제16조 국민영양조사 등                 | ●        |                |                |
|                  | 1항 조사 정기 실시<br>2항 지도업무 공무원 설치 | ●        | ●              |                |
| 제3장 국민건강증진<br>기금 | 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 ●        |                |                |
|                  | 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                 | ●        | ●              | ●              |
|                  |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 ●        |                |                |
|                  | 제23조의2 부담금의 납부담보              | ●        |                |                |
| 제4장 보칙           | 제23조의3 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의무       |          | ●              | ●              |
|                  | 제26조 비용의 보조                   | ●        | ●              | ●              |

|        |                    |   |   |   |
|--------|--------------------|---|---|---|
|        | 제27조 지도·훈련         | ● |   |   |
|        | 제28조 보고·검사         | ● | ● | ● |
|        |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 ● |   |   |
|        | 제30조 수수료 징수        |   | ● | ● |
| 제5장 벌칙 |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 | ● | ● |

부표 2-19. 전염병예방방법상 권한분배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 제1장 총칙                   |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 ●              | ●              |
| 제2장 신고와 보고<br>의 의무       | 제7조의2 보건소장 등의 보고        | ●        | ●              | ●              |
|                          | 제7조의3 전염병 발생감시          | ●        | ●              |                |
|                          | 제7조의4 역학조사              | ●        | ●              |                |
| 제3장 건강진단                 | 제9조 건강진단 등의 명령          |          |                | ●              |
| 제4장 예방접종                 | 제11조 정기예방접종             |          |                | ●              |
|                          | 제13조 예방접종의 공고           |          |                | ●              |
|                          | 제15조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 ●        |                |                |
|                          | 제20조 예방접종증명서            |          |                | ●              |
|                          | 제21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          |                | ●              |
|                          | 제21조의3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          |                | ●              |
| 제5장 예방시설                 | 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          | ●              | ●              |
|                          | 제25조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응      |          |                | ●              |
| 제6장 환자 및 방역<br>조치        | 제29조 격리환자               | ●        | ●              | ●              |
|                          | 제37조 제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                | ●              |
| 제7장 예방조치                 | 제39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         |          | ●              | ●              |
|                          | 제40조 소독조치               |          |                | ●              |
|                          | 제40조의2 소독업무의 대행         |          |                | ●              |
|                          | 제40조의3 소독업의 신고          |          |                | ●              |
|                          | 제40조의4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          |                | ●              |
|                          | 제4조의5 서류의 제출·검사 등       | ●        |                | ●              |
|                          | 제40조의8 영업의 정지명령 등       |          |                | ●              |
|                          | 제40조의9 청문               |          |                | ●              |
|                          | 제42조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 ●              | ●              |
|                          | 제43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         |          |                | ●              |
| 제8장 방역관, 검역<br>위원 및 예방위원 | 제45조 검역위원               |          | ●              |                |
|                          | 제46조 예방위원               |          |                | ●              |
| 제9장 경비                   | 제47조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          |                | ●              |
|                          | 제48조 시·도가 부담할 경비        |          | ●              |                |
|                          | 제49조 시·도가 보조할 경비        |          | ●              |                |
|                          | 제50조 국고부담경비             | ●        |                |                |
|                          | 제51조 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 ●        |                |                |
|                          | 제52조 진료비의 징수            | ●        | ●              |                |
|                          | 제53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          |                | ●              |
|                          | 제54조 손실보상               |          | ●              |                |

|         |               |   |   |   |
|---------|---------------|---|---|---|
| 제10장 보칙 | 제54조의5 권한위임   | ● |   |   |
| 제11장 벌칙 | 제56조의2 과태료 부과 |   | ● | ● |

부표 2-20. 학교급식법상 권한분배

| 법조항                 |                        |                               | 역할 범위    |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1장 총칙              |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1항 필요 시책 강구                   | ●        | ●              | ●              |
|                     |                        | 2항 학교급식 계획 수립·시행              |          | ●              |                |
|                     | 제5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센터 설치 |                               |          | ●              | ●              |
|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 | 제8조 경비부담               | 경비지원                          | ●        | ●              | ●              |
|                     |                        | 우수 농산물 사용 등 급식 질 향상과 시설·설비 확충 |          | ●              | ●              |
|                     |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 ●        | ●              | ●              |
| 제4장 보칙              | 제18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                               | ●        | ●              |                |
|                     | 제19조 출입·검사·수거 등        |                               | ●        | ●              |                |
|                     | 제21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                               | ●        | ●              |                |
| 제5장 벌칙              | 제25조 과태료 부과·징수         |                               | ●        | ●              |                |

부표 2-21. 학교보건법상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4조 |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지원 | ●        | ●              |                |

부표 2-22. 먹는물 관리법상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1장 총칙          | 제2조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 ●              | ●              |
| 제2장 먹는 물의 수질 관리 | 제5조 먹는 물의 수질 관리(수질검사) | ●        | ●              |                |
|                 | 제7조 먹는 물 수질 감시원       | ●        | ●              | ●              |
| 제3장 환경 영향 조사    | 제10조 샘플 개발의 허가        |          | ●              |                |
|                 | 제11조 샘플 개발허가의 제한      |          | ●              |                |
|                 | 제12조 샘플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          | ●              |                |
|                 | 제12조의2 샘플 개발허가의 취소    |          | ●              |                |
| 제4장 영업          | 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          | ●              |                |
|                 | 제22조 먹는 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          | ●              |                |

|                  |                 |   |   |  |
|------------------|-----------------|---|---|--|
|                  | 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   |   | ● |  |
| 제6장 검사           | 제42조 출입·검사·수거 등 | ● | ● |  |
|                  | 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   | ● | ● |  |
|                  | 제46조 폐쇄조치 등     |   | ● |  |
|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제47조 폐기처분 등     |   | ● |  |
|                  | 제48조 허가의 취소 등   |   | ● |  |
|                  | 제50조 청문         | ● | ● |  |
|                  | 제51조 과징금 처분     |   | ● |  |
| 제9장 벌칙           | 제61조 과태료        | ● | ● |  |

부표 2-23. 수도법상 권한분배

| 법조항        |                                   |                 | 역할 범위    |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1장 총칙     | 제2조 책무                            | 2항 관할구역 상수원 관리  |          | ●              | ●              |
|            |                                   | 3항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          | ●              | ●              |
|            |                                   | 3항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          | ●              |                |
|            |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 ●        | ●              | ●              |
|            | 제6조 물 수요 관리<br>목표제의 실시            | 1항 종합계획 수립      |          | ●              |                |
|            |                                   | 2항 시행계획 수립      |          |                | ●              |
|            |                                   | 3항 미비계획에 대한 조치  | ●        |                |                |
|            |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          | ●              | ●              |
|            | 제9조 주민지원사업                        |                 |          | ●              | ●              |
|            |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결정             |                 |          | ●              |                |
|            |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                 | ●        | ●              | ●              |
|            | 제13조 영리행위 금지 등                    |                 | ●        | ●              | ●              |
|            | 제14조 중수도의 설<br>치                  | 3항 설치비용 지원      | ●        | ●              | ●              |
|            |                                   | 4항 설치 명령        |          |                | ●              |
|            |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명령                |                 |          |                | ●              |
| 제2장 일반수도사업 | 제17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        |                | ●              |
|            | 제22조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                 | ●        | ●              | ●              |
|            | 제26조 수질기준(3항 수질기준외의 항목에 대한 조례 제정) |                 |          | ●              |                |
|            |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                 |          | ●              | ●              |
|            | 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                 |          |                | ●              |
|            | 제35조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                 |          |                | ●              |
|            | 제41조 긴급 급수 지원                     |                 |          | ●              |                |
|            | 제44조 수도시설 등의 매수                   |                 |          | ●              | ●              |
| 제4장 전용수도사업 | 제47조 마을상수도 지원                     |                 | ●        | ●              | ●              |
|            | 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                     |                 |          | ●              | ●              |
|            | 제55조 소규모급수시설                      |                 |          |                | ●              |
| 제7장 감독     |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                 |          | ●              | ●              |
|            | 제64조 개선 명령 등                      |                 |          | ●              | ●              |
|            | 제65조 공급 조건의 변경                    |                 |          | ●              | ●              |
|            | 제66조 보고의 요구 등                     |                 |          | ●              | ●              |
| 제8장 보칙     | 제67조 수도시설의 관할권 결정                 |                 |          | ●              |                |

|        |                       |   |   |   |
|--------|-----------------------|---|---|---|
| 제9장 벌칙 | 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   | ● | ● |
|        | 제73조 기술 연구·개발 등 시책 시행 | ● | ● | ● |
|        | 제79조 청문               | ● | ● | ● |
|        | 제87조 과태료              | ● | ● | ● |

부표 2-2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상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1장 총칙 |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 ●        | ●              | ●              |

부표 2-25. 산업표준화법상 권한분배

| 법조항              |                   | 역할 범위    |                |                |
|------------------|-------------------|----------|----------------|----------------|
|                  |                   | 중앙<br>정부 | 광역<br>자치<br>단체 | 기초<br>자치<br>단체 |
| 제1장 총칙           |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 ●        | ●              | ●              |
| 제4장 산업표준화의<br>촉진 | 제24조 한국산업표준의 준수   | ●        | ●              | ●              |
|                  | 제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        | ●              | ●              |

## 부록 3

##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 분담체계

| 업무별                   | 식약청                                        | 지방식약청                                                            | 시·도                                   | 시·군·구                                        |
|-----------------------|--------------------------------------------|------------------------------------------------------------------|---------------------------------------|----------------------------------------------|
| 1)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 ○ 운영지침 제·개정<br>○ 전국 운영 현황 관리               | ○ 소관 업소 평가 관리<br>- 식품첨가물제조업                                      | ○ 관내 시·군·구 운영 현황 관리                   | ○ 소관 업소 평가 관리<br>- 식품제조·가공업                  |
| 2) 식품제조·가공업 소 지도·점검   | ○ 관리지침 제·개정<br>○ 기획·계통 조사 및 제도 개선          | ○ 기획·계통조사<br>○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중 집중관리 업소                               | -                                     | ○ 위생관리등급제에 따른 중점관리업소 집중관리                    |
| 3) 상습·고의 위반 업소 특별관리   | ○ 운영지침 제·개정                                | ○ 소관 업소 지정<br>○ 지도·점검<br>- 식품첨가물제조업                              | ○ 업소 현황 관리<br>○ 지도·점검(시·군·구 소관 업소)    | ○ 소관 업소 지정 및 집중관리                            |
| 4) 식품 유통·판매 업소 등 위생관리 | ○ 관리지침 제·개정<br>○ 기획·계통 조사                  | ○ 위해식품 기획·계통 및 추적조사                                              | -                                     | ○ 지역 내 유통·판매 업소 지도·점검                        |
| 5) 허위·과대광고 단속         | ○ 관리지침 제·개정<br>○ 인터넷(해외) 사이트<br>○ 중앙 TV 방송 | ○ 인터넷 사이트<br>○ 중앙 일간지<br>○ 홈쇼핑 방송                                | ○ 지방지<br>○ 지방 TV 방송                   | ○ 지방지<br>○ 지역 케이블 방송<br>○ 지역 생활정보지           |
| 6) 식품 등의 수거·검사        | ○ 관리지침 제·개정<br>○ 분석·평가                     | ○ 기구 등의 살균·소독 제<br>○ 기준규격 미실정 항목 모니터링 검사<br>○ 정보수집에 의한 위해항목 집중검사 | ○ 유통 축·수산물<br>○ 유통 축산물가공품             | ○ 모든 가공식품<br>○ 일상적 수거·검사<br>- 관내 제조업소 생산제품위주 |
| 7) 열경채소류 등 신속 수거·검사   | ○ 관리지침 제·개정<br>○ 분석·평가                     | ○ 열경채소류(신규 고시 농약)<br>○ 곡류, 두류, 서류, 과일 등                          | ○ 시·도 자체 수거·검사 계획 수립                  | ○ 열경채소류(식품 공전 고시 농약)                         |
| 8) 특별 관리 대상 식품 지정·운영  | ○ 관리지침 제·개정<br>○ 분석·평가                     | ○ 식품첨가물<br>○ 건강기능식품                                              | ○ 월별 자체 수거·검사 계획 수립<br>- 시·군·구별 역할 분담 | ○ 특별관리대상식품(식품첨가물 제외)                         |
| 9) 기획조사반 운영           | ○ 운영지침 제·개정<br>○ 중앙기획조사반 설치 운영             | ○ 지방부정불량식품기동단속반 설치·운영                                            | ○ 시·도 부정불량식품기동단속반 설치·운영               | ○ 단속인력 등을 감안 선택적 운영                          |
| 10) 전국 합동단속           | ○ 관리지침 제·개정<br>○ 종합 계획 수립                  | ○ 관할지역 합동단속 총괄관리 및 지원                                            | ○ 시·도 단위 계획 수립                        | ○ 단속참여                                       |
| 11) 하절기 위해 식품 특별단속    | ○ 관리지침 제·개정                                | -                                                                | ○ 시·도 단위 계획 수립                        | ○ 시·군·구 자체 계획 수립 및 단속 실시                     |
| 12) 명절 성수식품 특별 단속     | ○ 관리지침 제·개정                                | -                                                                | ○ 시·도 단위 계획 수립                        | ○ 시·군·구 자체 계획 수립 및 단속 실시                     |
| 13)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 ○ 관리지침 제·개정                                | ○ 자체 계획 수립 및 운영<br>○ 모니터링 기획조사                                   | -                                     | ○ 학교주변 식품 취급 업소 지도·점검                        |

|                            |                                                          |                                                               |                                                 |                                                                              |
|----------------------------|----------------------------------------------------------|---------------------------------------------------------------|-------------------------------------------------|------------------------------------------------------------------------------|
| 14) 위생 사각지대<br>특별 관리       | ○ 관리지침 제·개정<br>○ 실적 평가                                   | ○ 교육, 지도·계몽 등<br>지원<br>○ 비식용 수입 농·수산물<br>사후관리                 | ○ 시·도 단위 계획 수립                                  | ○ 추진 계획 시행                                                                   |
| 15) 자동판매기 위생<br>관리         | ○ 관리지침 제·개정                                              | -                                                             | ○ 시·도 단위 계획 수립<br>○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 시·군·구 자체 계획<br>수립 및 지도·점검                                                  |
| 16) 위해식품 등의<br>회수·폐기       | ○ 운영지침 제·개정<br>○ 분석·평가<br>○ 회수전담반 운영<br>○ 위해발생 경보제<br>운영 | ○ 회수 명령<br>○ 계통·주적 조사<br>○ 제품 폐기 등 조치                         | -                                               | ○ 회수 명령<br>○ 제품 폐기 등 조치                                                      |
| 17) 부정·불량식품<br>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 운영지침 및 고시<br>제·개정<br>○ 식품안전 소비자<br>신고센터운영              | ○ 민원 신고 처리 및<br>포상금 지급<br>○ 식품안전 소비자 신<br>고센터운영               | ○ 민원 신고 처리 및<br>포상금 지급<br>○ 식품안전 소비자 신<br>고센터운영 | ○ 민원 신고 처리 및<br>포상금 지급<br>○ 식품안전 소비자<br>신고센터운영                               |
| 18) 시민식품감사인<br>제도 운영       | ○ 운영지침 제·개정<br>○ 시민감사인 지정 및<br>추천(식품첨가물 제<br>조업)         | ○ 시민감사인 위·해<br>촉 관리(위·해 측은 영<br>업자가 함)                        | ○ 시민감사인 대상자<br>지정 및 추천(식품제조·<br>가공업)            | ○ 시민감사인 위·해<br>촉 관리(위·해 측은<br>영업자가 함)                                        |
| 19) 소비자식품위생<br>감시원 운영      | ○ 운영 지침 및 고시<br>제·개정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br>원 운영 계획 수립 및<br>운영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br>원 운영 계획 수립 및<br>운영               | ○ 소비자식품위생감<br>시원 운영 계획 수<br>립 및 운영                                           |
| 20) 식품 위생 관련<br>단체 자율지도    | ○ 운영지침 제·개정                                              | -                                                             | ○ 교육·홍보 등 지원                                    | -                                                                            |
| 21) 식품안전관리<br>추진 실적 평가     | ○ 평가 항목 및 기준<br>선정<br>○ 시·도별 실적 평가                       | -                                                             | ○ 관내 시·군·구 실적<br>평가                             | -                                                                            |
| 22) 식품 등의 이물<br>관리         | ○ 운영지침 제·개정<br>○ 회수 1등급 이물<br>혼입 원인조사                    | ○ 회수 1등급 이물조사<br>○ 전국 규모 유통제품<br>생산업체(연매출 5백<br>억 이상) 보고 이물조사 |                                                 | ○ 소비 및 유통단계<br>이물혼입 원인조사<br>○ 지역 규모 유통제<br>품 생산업체(연매출<br>5백억 미만) 보고 이<br>물조사 |

자료: 식약청(2009)

## 부록 4

##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식품안전 관련 법규 제정 현황

| 구분    | 내 용                                                                                                                                                                                                                                                                             |
|-------|---------------------------------------------------------------------------------------------------------------------------------------------------------------------------------------------------------------------------------------------------------------------------------|
| 광주광역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안전 기본 조례</li> <li>●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li> <li>●학교급식비 지원 조례</li> </ul>                                                                                                                                                                   |
| 대구광역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진흥 기금 운용 조례</li> <li>●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li> <li>●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li> <li>●친환경 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li> </ul>                                                                                                                     |
| 대전광역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li> <li>●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
| 부산광역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li> <li>●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
| 서울특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안전 기본 조례</li> <li>●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li> <li>●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li> <li>●식품진흥기금 조례</li> </ul>                                                                                                                               |
| 울산광역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li> <li>●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
| 인천광역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안전 기본 조례</li> <li>●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li> <li>●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li> <li>●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li> </ul>                                                                                                                              |
| 경기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li> <li>●학교급식 지원 조례</li> <li>●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li> <li>●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li> <li>●친환경농업 육성 조례</li> <li>●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li> </ul>                                                                  |
| 충청북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li> <li>●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li> <li>●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li> <li>●가족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ul>                                                                                                                     |
| 충청남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li> <li>●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li> <li>●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li> <li>●친환경농업 육성 조례</li> </ul>                                                                                                                                   |
| 전라북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 조례</li> <li>●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li> <li>●가족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li>●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li> </ul>                                                                                                                         |
| 전라남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li> <li>●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li>●음식점 식재료 등 원산지 자율표시제 운영 조례</li> <li>●친환경 농산물 음식점 인증 및 관리지침</li> <li>●친환경 농업대상 시상규정</li> <li>●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li> <li>●친환경 농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li> <li>●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li> </ul> |
| 경상북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li> <li>●학교급식 지원 조례</li> <li>●우수농산물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li> <li>●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li> <li>●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li> <li>●가족위생시험소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li> </ul>                                                               |
| 경상남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li> <li>●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li> <li>●학교급식 지원 조례</li> <li>●비상방역대책에 관한 규정</li> </ul>                                                                                                                                     |
| 강원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li> <li>●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li>●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li> </ul>                                                                                                                                              |
| 제주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진흥기금 조례</li> <li>●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li> <li>●친환경 축산업육성·지원조례</li> <li>●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li> <li>●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li> <li>●가족방역 조례</li> <li>●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li> <li>●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li> </ul>     |

## 부록 5

## 품목별·단계별 식품안전관리의 역할분배 현황

## ■ 농산물

| 단계<br>구분            | 국내산                                                                                                                                                                                                                                                                              |                                                                                                                                                                                                                                   | 수입산                                                                               |                                          |
|---------------------|----------------------------------------------------------------------------------------------------------------------------------------------------------------------------------------------------------------------------------------------------------------------------------|-----------------------------------------------------------------------------------------------------------------------------------------------------------------------------------------------------------------------------------|-----------------------------------------------------------------------------------|------------------------------------------|
|                     | 농림수산물식품부                                                                                                                                                                                                                                                                         | 보건복지가족부<br>(식품의약품안전청)                                                                                                                                                                                                             | 농림수산물식품부                                                                          | 보건복지가족부<br>(식품의약품안전청)                    |
| 기준<br>및<br>규격<br>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농산물품질관리법&gt;</li> <li>· 생산단계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li> <li>· 품질기준 제정</li> <li>· GAP 관리기준 제정</li> <li>· 표준규격 설정</li> <li>· 검사기준 제정</li> <li>&lt;농약관리법&gt;</li> <li>·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li> <li>&lt;인삼산업법&gt;</li> <li>· 인삼류 제조 및 검사기준 설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식품위생법&gt;</li> <li>· 농식품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li> <li>· 농식품 기구용기포장규격 설정</li> <li>· 식품첨가물 규격 설정</li> <li>·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정</li> <li>· 방사선 조사기준 설정</li> </ul>                                     | -                                                                                 | · 국산과 동일                                 |
| 생산<br>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물질 조사</li> <li>· 품질관리사 자격관리</li> <li>· 품질인증</li> <li>· 친환경농산물인증</li> <li>· 농약·비료관리</li> </ul>                                                                                                                                         | -                                                                                                                                                                                                                                 | -                                                                                 | -                                        |
| 수입<br>단계            | -                                                                                                                                                                                                                                                                                | -                                                                                                                                                                                                                                 | · 식물검역                                                                            | · 농식품 안전검사<br>· 식품 등 수입관매업 신고<br>(지방식약청) |
| 가공<br>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곡가공업 등록(제분·제조업) 및 신고(도정업)-양곡관리법(시·군·구)</li> <li>· 인삼류제조업신고-인삼산업법(시·군·구)</li> <li>· 지리적 표시제 수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영업허가: 지방식약청&gt;</li> <li>· 식품첨가물제조, 식품조사처리업</li> <li>&lt;영업신고: 시·군·구&gt;</li> <li>·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기포장제조업, 용기류제조업</li> <li>&lt;위생관리&gt;</li> <li>· HACCP, 식품가공업소 위생관리</li> </ul> | -                                                                                 | · 국산과 동일                                 |
| 유통<br>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이전 유해물질 검사</li> <li>· 표준규격품 출하 및 표시 관리</li> <li>· 원산지표시 단속</li> <li>· GMO표시 단속</li> <li>· 인증농산물 사후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영업신고: 시·군·구&gt;</li> <li>· 운반업, 냉장냉동업</li> <li>&lt;안전관리&gt;</li> <li>· 유해물질 검사</li> <li>· 식품표시위반 단속</li> <li>· GM가공품표시 단속</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표시 단속</li> <li>· GMO 표시 단속</li> </ul> | · 국산과 동일                                 |
| 최종<br>소비<br>단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영업신고: 시·군·구&gt;</li> <li>· 유통·일반음식점, 위탁급식</li> <li>· 집단급식소</li> <li>&lt;위생관리&gt;</li> <li>· 영업장 위생관리</li> </ul>                                                                        | -                                                                                 | · 국산과 동일                                 |

### ■ 축산물

| 단계<br>구분            | 국내산                                                                                                                                                                                        |                                                                                        | 수입산                                                                                                               |                                                                                  |
|---------------------|--------------------------------------------------------------------------------------------------------------------------------------------------------------------------------------------|----------------------------------------------------------------------------------------|-------------------------------------------------------------------------------------------------------------------|----------------------------------------------------------------------------------|
|                     | 농림수산식품부                                                                                                                                                                                    | 보건복지가족부<br>(식품의약품안전청)                                                                  | 농림수산식품부                                                                                                           | 보건복지가족부<br>(식품의약품안전청)                                                            |
| 기준<br>및<br>규격<br>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물가공처리법</li> <li>기준·규격 설정</li> <li>기구·용기·포장규격 설정</li> <li>표시기준 설정</li> <li>위생관리지침 제정</li> <li>작업장 위생기준 제정</li> <li>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검사 기준 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위생법</li> <li>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설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산과 동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위생법</li> <li>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설정</li> </ul> |
| 생산<br>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축집유장 영업허가(시·도)</li> <li>사료제조업 등록(시·도)</li> <li>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시·도)</li> <li>가공장 위생관리</li> <li>사료 유해물질 검사</li> <li>축산물기준·규격 검사</li> </ul>              | -                                                                                      | -                                                                                                                 | -                                                                                |
| 수입<br>단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료검사</li> <li>축산물검사</li> <li>동물검역</li> <li>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시·군·구)</li> </ul> | -                                                                                |
| 가공<br>단계            | -                                                                                                                                                                                          | -                                                                                      | 국산과 동일                                                                                                            | -                                                                                |
| 유통<br>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관업(허가, 시·군·구)</li> <li>운반업(신고, 시·군·구)</li> <li>표시위반단속</li> <li>원산지표시</li> <li>유해물질검사</li> </ul>                                                    | -                                                                                      | 국산과 동일                                                                                                            | -                                                                                |
| 최종<br>소비<br>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육·우유류 판매 영업 신고(시·군·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시·군·구)</li> <li>영업장 위생관리</li> </ul> | 국산과 동일                                                                                                            | 국산과 동일                                                                           |

### ■ 수산물

| 단계<br>구분            | 국내산                                                                                                                                                                                                  |                                                                                                                                                            | 수입산                                                                              |                       |
|---------------------|------------------------------------------------------------------------------------------------------------------------------------------------------------------------------------------------------|------------------------------------------------------------------------------------------------------------------------------------------------------------|----------------------------------------------------------------------------------|-----------------------|
|                     | 농림수산식품부                                                                                                                                                                                              | 보건복지가족부<br>(식품의약품안전청)                                                                                                                                      | 농림수산식품부                                                                          | 보건복지가족부<br>(식품의약품안전청) |
| 기준<br>및<br>규격<br>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물품질관리법</li> <li>표준규격 설정</li> <li>이력추적관리 기준 설정</li> <li>지리적표시 등록기준 설정</li> <li>검사 기준 제정</li> <li>수출 목적 수산물의 생육·품질·가공·시설표시 및 해약 위생관리 기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위생법</li> <li>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설정</li> <li>수산물식품의 기구·용기·포장·규격 설정</li> <li>식품첨가물 규격 설정</li> <li>식품등의 표시기준 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물품질관리법</li> <li>이식용 수산물 검역기준</li> </ul> | -                     |
| 생산<br>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성 조사</li> <li>품질인증 수산물</li> <li>친환경 수산물</li> <li>항생제 관리</li> <li>수출 생산시설 등록 관리</li> <li>협약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 관리</li> <li>지정해역 지정·관리</li> <li>양식장 HACCP</li> </ul> | -                                                                                                                                                          | -                                                                                | -                     |

|                |                                         |   |                              |          |
|----------------|-----------------------------------------|---|------------------------------|----------|
| 수입<br>단계       | -                                       | - | · 수산물(단순가공)검사<br>· 이식용수산물 검역 | -        |
| 가공<br>단계       | · 품질인증<br>· 지리적표시제 순행<br>· 수출가공시설 등록 관리 | - | -                            | -        |
| 유통<br>단계       | · 원산지표시 단속<br>· 품질인증품 사후관리              | - | · 원산지표시 단속                   | -        |
| 최종<br>소비<br>단계 | -                                       | - | -                            | · 국산과 동일 |

부록 6

도쿄도 식품안전추진계획 시책의 종합적 체계

| 제1절 사업자 책무에 의한 식품안전확보         |                                            |
|-------------------------------|--------------------------------------------|
| 1. 사업자의 자주적위생관리의 추진           | 1. 식품위생자주관리인증제도의 추진                        |
|                               | 2. 생산위생관리체제의 정비                            |
|                               | 3. HACCP 도입지원                              |
|                               | 4. 식품위생추진원제도의 활용                           |
|                               | 5. 식품위생자치지도원제도의 지원                         |
|                               | 6. 도매시장 안전·품질관리자 설치                        |
| 2.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 기록 등      | 7. 이력추적제 보급촉진                              |
| 3.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 8. 기록 작성·보존의 실시에 대한 지도                     |
|                               | 9. 농산물과 축산의 안전대책 보급지도                      |
|                               | 10. 식품가공분야의 기술에 관한 보급지도                    |
|                               | 11. 제조·수입·판매자 등에 관한 강습회                    |
| 제2절 생산부터 소비단계의 일관된 미연방지·확대방지  |                                            |
| 1.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평가 추진     | 12. 가축의 병과 병해충의 발생현황 파악                    |
|                               | 13. 식중독의 발생동향 및 원인조사                       |
|                               | 14. 식품의 안전에 관한 선행적 조사                      |
|                               | 15. 다이옥신류 등의 미량화학물질의 실시조사                  |
|                               | 16. 해외정보와 학술정보의 수집                         |
|                               | 17.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의 운영                        |
|                               | 18. 안전성조사·조치권고제도의 활용                       |
| 2. 식품 등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감시, 지도 등 | 19.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자재의 적정사용에 관한 감시지도 및 검사 |
|                               | 20. 축산물등의 안전대책                             |
|                               | 21. BSE대책                                  |
|                               | 22. 제조, 가공, 조리, 판매시설 등의 감시지도               |
|                               | 23. 식품 등의 수거조사                             |
|                               | 24. 광역유통식품에 대한 감시                          |
|                               | 25. 건강식품 대책                                |
|                               | 26. 자주회수보고제도의 운용                           |
| 3. 걱정 식품 표시 추진                | 27. 법령·조례에 기초한 걱정표시 지도                     |
|                               | 28. 알기 쉬운 식품표시제 보급                         |
|                               | 29. 소비생활조사원에 의한 조사                         |

|                                |                                    |
|--------------------------------|------------------------------------|
| 4. 긴급 시 체제정비                   | 30. 식품안전대책추진조정회의에 의한 긴급 시 대응 체제정비  |
|                                | 31. 대규모 식중독 등의 대응매뉴얼 정비            |
|                                | 32. 도매시장 위기관리대응                    |
| <b>제3절 관계자에 의한 상호이해와 협력 추진</b> |                                    |
| 1. 교육·학습의 추진                   | 33. 식품의 안전에 관한 보급개발·정보제공           |
|                                | 34. 식품안전에 관한 식교육 추진                |
|                                | 35. 도민의 자주적인 학습에 대한 지원             |
| 2. 사업자에 의한 정보공개 추진             | 36. 생산정보제공식품사업자 등록제도 추진            |
|                                | 37. 식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촉진            |
| 3. 정보의 공유화, 의견의 교류 등 추진        | 38. 관계자 회합에 의한 정보·의견 교류 추진         |
|                                | 39.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의견교류 추진            |
| 4. 도민·사업자의 의견 반영               | 40. 식품안전에 관한 심의회에 도민·사업자 의견 반영     |
|                                | 41. 도민·사업자가 의견·요망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확보  |
|                                | 42. 상담 등 적절한 대응                    |
| <b>제4절 안전을 확보하는 시책의 기반 구축</b>  |                                    |
| 1. 기반 조사 연구·기술개발               | 43. 식품 안전확보 생산·제조기술 개발             |
|                                | 44. 시험검사법의 개발·개량                   |
|                                | 45. 식품안전에 관한 기초연구 추진               |
| 2. 구시정촌, 국가 등과의 제휴             | 46. 생산단계 안전확보와 연계한 가까운 지자체와의 제휴 강화 |
|                                | 47. 식품위생에 관한 지자체간의 광역적 제휴 추진       |
|                                | 48. 식품위생에 관한 특별구와의 제휴 협력 추진        |
|                                | 49. 소비생활시책에 관한 지자체 제휴              |
|                                | 50. 국가의 제휴·제안 요구                   |

## 부록 7

## 농식품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향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 역할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역할과 관련 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수행에만 사용할 것이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6월

|                  |  |          |  |
|------------------|--|----------|--|
| 응답자 성명           |  | 응답자 전화번호 |  |
| 응답자 담당업무         |  |          |  |
| 응답자<br>소속기관 및 부서 |  |          |  |
| 응답자 근무지<br>주소    |  |          |  |

- 본 설문조사에서의 농식품 안전관리는 농산물에서부터 가공식품까지의 모든 품목,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의 지도·단속, 수거·검사, 관련 업소 인·허가 등 농식품 위생 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
| 1     | 2  | 3  | 4  | 5     |

문2. 귀하는 농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
| 1     | 2  | 3  | 4  | 5     |

문3.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행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골라 순위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농식품 안전관련 부처·기관간 정보 공유 등 협조 체계 미흡  
 ② 농식품 안전관리 전문인력 부족 ③ 농식품 안전관련 예산 부족  
 ④ 농식품 안전정책에 대한 정책적 인식 및 우선 순위가 낮음  
 ⑤ 위험평가 기능 취약 ⑥ 기타( )

문4. 귀하가 우리나라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2개를 골라 순위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정비 ② 농식품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화  
 ③ 농식품 안전관리 인력 확충 ④ 농식품 안전관련 검사 체계 개선  
 ⑤ 농식품 안전 기준 강화 ⑥ 기타( )

문5. 귀하는 우리나라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일관적 관리 ②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관리  
 ③ 신속·사전예방 중심의 관리  
 ④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관리 ⑤ 기타( )

문6.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일관적 관리 부재  
 ②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 관리 소홀  
 ③ 위생 및 안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미약  
 ④ 위생 및 안전 기준 설정 미흡  
 ⑤ 기타( )

문7. 귀하는 농식품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중앙정부기관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br>중요하지<br>않음 | 중요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br>중요함 |
|-----------------------|------------------|------------|----|-----|-----------|
| 농림수산식품부               | 1                | 2          | 3  | 4   | 5         |
| 보건복지가족부<br>(식품의약품안전청) | 1                | 2          | 3  | 4   | 5         |
| 환경부                   | 1                | 2          | 3  | 4   | 5         |
| 교육과학기술부               | 1                | 2          | 3  | 4   | 5         |
| 지식경제부                 | 1                | 2          | 3  | 4   | 5         |
| 기획재정부                 | 1                | 2          | 3  | 4   | 5         |

■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8.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이에 따른 조직적·행정적 변화, 업무상의 변화나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 ① 없었다.      ② 어느 정도 있었다.      ③ 상당한 정도로 있었다.

문9.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다음에 제시된 기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br>중요하지<br>않음 | 중요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br>중요함 |
|----------------------------|------------------|------------|----|-----|-----------|
| 중앙정부<br>(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 1                | 2          | 3  | 4   | 5         |
| 광역지방자치단체<br>(특별시·광역시·도)    | 1                | 2          | 3  | 4   | 5         |
| 기초지방자치단체<br>(시·군·구)        | 1                | 2          | 3  | 4   | 5         |

문10.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다음에 제시된 기관의 역할 및 권한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br>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br>높음 |
|-------------------------------|----------|----|----|----|----------|
| 중앙정부<br>(농식품부,<br>식품의약품안전청 등) | 1        | 2  | 3  | 4  | 5        |
| 광역지방자치단체<br>(특별시·광역시·도)       | 1        | 2  | 3  | 4  | 5        |
| 기초지방자치단체<br>(시·군·구)           | 1        | 2  | 3  | 4  | 5        |

문11. 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골라 순위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지역 온정주의                      ② 인력 부족    ③ 전문 인력 부족  
 ④ 관련 예산 부족                    ⑤ 지원기관(예: 검사·조사기관) 미비  
 ⑥ 기타( )

문12. 귀하는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
| 기초자치단체 | 1     | 2  | 3  | 4  | 5     |
| 광역자치단체 | 1     | 2  | 3  | 4  | 5     |

문13.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한 개만 응답)

- ① 농식품 안전에 대한 현장 관리  
 ② 농식품 안전에 대한 평가 및 기준 제시  
 ③ 농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 입안·집행  
 ④ 농식품 안전 관련 정보 수집·분석  
 ⑤ 기타( )

문14.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한 개만 응답)

- ① 농식품 안전에 대한 현장 관리  
 ② 농식품 안전에 대한 평가 및 기준 제시  
 ③ 농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 입안·집행  
 ④ 농식품 안전 관련 정보 수집·분석  
 ⑤ 기타( )

문15. 귀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해야할 주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개를 골라 순위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지역의 안전업무 기획 및 계획 기초  
 ② 자치단체의 사업, 예산 등 조정 및 지원  
 ③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조정 및 매개자 역할  
 ④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평가 ⑤ 기타( )

문16.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련 행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 ① 상호협력적 관계 ② 상명하달적 관계  
 ③ 자율·독립적 관계 ④ 기타( )

문17.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련 행정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 ① 상호협력적 관계 ② 상명하달적 관계  
 ③ 자율·독립적 관계 ④ 기타( )

문18.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br>이루어지지<br>않음 | 이루어지지<br>않음 | 보통 | 이루어짐 | 매우<br>잘 이루어짐 |
|-------------------|-------------|----|------|--------------|
| 1                 | 2           | 3  | 4    | 5            |

문19. 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련 업무 중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정책(업무)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
| 1     | 2  | 3  | 4  | 5     |

문20.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br>적절하지<br>않음 | 적절하지<br>않음 | 보통 | 적절함 | 매우<br>적절함 |
|-------|------------------|------------|----|-----|-----------|
| 중앙-지방 | 1                | 2          | 3  | 4   | 5         |
| 광역-기초 | 1                | 2          | 3  | 4   | 5         |

문21.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br>중복되지<br>않음 | 중복되지<br>않음 | 보통 | 중복됨 | 매우<br>중복됨 |
|------------------|------------|----|-----|-----------|
| 1                | 2          | 3  | 4   | 5         |

문22. (문26에서 4 또는 5에 답한 경우) 귀하는 이러한 업무 중복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br>필요하지<br>않음 | 필요하지<br>않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br>필요함 |
|------------------|------------|----|-----|-----------|
| 1                | 2          | 3  | 4   | 5         |

문23. 귀하는 원활한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음에 제시된 요인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요인                  | 매우<br>부족함 | 부족함 | 보통 | 충분함 | 매우<br>충분함 |
|---------------------|-----------|-----|----|-----|-----------|
| 인력 규모               | 1         | 2   | 3  | 4   | 5         |
| 인력의 전문성             | 1         | 2   | 3  | 4   | 5         |
| 예산                  | 1         | 2   | 3  | 4   | 5         |
| 지원기관<br>(검사·조사기관 등) | 1         | 2   | 3  | 4   | 5         |

문24. 귀하는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역할 및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 문25으로 가세요.
- ② 역할 및 권한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문26로 가세요.
- ③ 역할 및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문27으로 가세요.

문25. (문24에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경우) 귀하가 생각하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를 골라 순위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온정주의로 단속·조사 업무 등에서 강력한 행정의 어려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 전개 어려움
- ③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 업무 이루어지기 어려움
- ④ 농식품 안전성은 지방보다는 국가 차원의 문제임

- ⑤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정책 집행이 어려움  
 ⑥ 기타( )

⇒ 응답 후 문27로 가세요.

**문26. (문24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경우)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한 개만 응답)**

- ① 단속·지도 등 현장 행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②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③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정책(행정) 수행을 위해  
 ④ 기타( )

⇒ 응답 후 문27로 가세요.

**문27. 귀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골라 순위대로 적어주세요.**

- (1순위: ) (2순위: )  
 ① 농식품 안전관련 부서 간 연계 미흡 ② 농식품 안전관리 인력 부족  
 ③ 농식품 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부족 ④ 농식품 안전관련 예산 부족  
 ⑤ 농식품 안전정책에 대한 정책적 인식 및 우선 순위가 낮음  
 ⑥ 안전성 검사·평가 기구 및 장비 부족  
 ⑦ 기타( )

**문28. 귀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행정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를 말씀해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 강화 ② 담당인력보강  
 ③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 ④ 관련예산 증액  
 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강화  
 ⑥ 안전성 검사·평가 기반 정비 ⑦ 기타( )

**문29.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농식품 안전관련 기능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가능)**

|                    | 중앙 | 광역 | 기초 |
|--------------------|----|----|----|
| 농식품 안전 기준 설정       | 1  | 2  | 3  |
| 농식품 안전 정책·제도 수립    | 1  | 2  | 3  |
| 농식품 안전관련 감시·감독 업무  | 1  | 2  | 3  |
| 농식품 안전관련 정보 수집과 제공 | 1  | 2  | 3  |

|                                   |   |   |   |
|-----------------------------------|---|---|---|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감시·지도                  | 1 | 2 | 3 |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 1 | 2 | 3 |
| 음식점 위생관리 감시·지도                    | 1 | 2 | 3 |
| 음식점 위생관리 단속                       | 1 | 2 | 3 |
|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지도                  | 1 | 2 | 3 |
|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1 | 2 | 3 |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감시·지도                 | 1 | 2 | 3 |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 1 | 2 | 3 |
| 농산물 수거·검사                         | 1 | 2 | 3 |
| 농산물 이외의 식품 수거·검사                  | 1 | 2 | 3 |
| 집단 급식소 관리                         | 1 | 2 | 3 |
| 부정·불량식품 단속                        | 1 | 2 | 3 |
| 품질 인증 농산물 지도·감독                   | 1 | 2 | 3 |
| 건강기능식품 감시·지도                      | 1 | 2 | 3 |
| 건강기능식품 단속                         | 1 | 2 | 3 |
|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감시·지도             | 1 | 2 | 3 |
|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단속                | 1 | 2 | 3 |
| 식품 유통·판매업소 위생관리 감시·지도             | 1 | 2 | 3 |
| 식품 유통·판매업소 위생관리 단속                | 1 | 2 | 3 |
| 식품 접객업소 감시·지도                     | 1 | 2 | 3 |
| 식품 접객업소 단속                        | 1 | 2 | 3 |
| 수입식품 지도                           | 1 | 2 | 3 |
| 수입식품 단속                           | 1 | 2 | 3 |
| 수입식품 수거·검사                        | 1 | 2 | 3 |
| 농식품 관련업의 인허가·신고(등록) 등             | 1 | 2 | 3 |
| GAP, 친환경인증제, HACCP, 이력추적제 등 지도·감독 | 1 | 2 | 3 |
| GAP, 친환경인증제, HACCP, 이력추적제 등 운영 지원 | 1 | 2 | 3 |

문30.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식품 안전문제가 보건위생부분과 농업부분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러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③ 모르겠다.

■ 설문응답자 일반 사항

BQ1.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9급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이상

**BQ2. 귀하가 농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

## 부록 8

## 농식품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소비자 의향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 역할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역할과 관련 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비자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수행에만 사용할 것이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6월

■ 선정질문

**SQ1. 본인 또는 귀하의 가족 중에 다음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 ① 조사회사, 광고회사 ⇒ 설문중단
- ② 방송국, 신문사, 출판사 등 언론사 ⇒ 설문중단
- ③ 농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 업체 종사자 ⇒ 설문중단
- ④ 농식품 매장 운영자 ⇒ 설문중단
- ⑤ 해당 사항 없음 ⇒ 설문계속

**SQ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세 이상~30세 미만    ② 30세 이상~40세 미만
- ③ 40세 이상~50세 미만    ④ 50세이상
- ⑤ 그 외 연령은 응답 중단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② 여

## SQ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시 \_\_\_\_\_구 \_\_\_\_\_동

## ■ 농식품 안전성관련 질문

※ 본 설문조사에서의 농식품 안전관리는 농산물에서부터 가공식품까지의 모든 품목,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의 지도·단속, 수거·검사, 관련 업소 인·허가 등 농식품 위생 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됩니다.

## ■ 농식품 안전성 관련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A1. 귀하는 평소 농식품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답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안전성                      ② 유통기한                      ③ 가격  
 ④ 맛                              ⑤ 영양                              ⑥ 브랜드  
 ⑦ 기타(                              )

A2. 귀하는 평소에 농식품 안전성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전혀 관심이<br>없음 | 관심이 없음 | 보통 | 관심이 있음 | 매우 관심이<br>많음 |
|--------------|--------|----|--------|--------------|
| 1            | 2      | 3  | 4      | 5            |

A3. 귀하는 국내에 유통되는 다음의 농식품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 가공하지 않은 과일, 채소, 곡식 등

\* 가공식품: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의 특성을 살려 보다 맛있고 먹기 편한 것으로 변형시키는 동시에 저장성을 좋게 한 식품

|             | 전혀<br>안전하지<br>않음 | 안전하지<br>않음 | 보통 | 안전함 | 매우<br>안전함 |
|-------------|------------------|------------|----|-----|-----------|
| 국내산<br>농산물  | 1                | 2          | 3  | 4   | 5         |
| 국내산<br>가공식품 | 1                | 2          | 3  | 4   | 5         |
| 수입산<br>농산물  | 1                | 2          | 3  | 4   | 5         |
| 수입산<br>가공식품 | 1                | 2          | 3  | 4   | 5         |

A4. 귀하는 평소 농식품 안전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획득하시는 편  
입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대중매체(TV, 라디오 등)      ② 인쇄매체(신문, 잡지, 서적 등)  
③ 인터넷      ④ 강연, 세미나, 교육 등  
⑤ 기타( )

A5. 귀하는 다음의 농식품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  
십니까?

|        | 전혀<br>신뢰하지<br>않음 | 신뢰하지<br>않음 | 보통 | 신뢰함 | 매우<br>신뢰함 |
|--------|------------------|------------|----|-----|-----------|
| 가공식품업체 | 1                | 2          | 3  | 4   | 5         |
| 식품유통업체 | 1                | 2          | 3  | 4   | 5         |
| 정부기관   | 1                | 2          | 3  | 4   | 5         |
| 연구기관   | 1                | 2          | 3  | 4   | 5         |
| 농업인    | 1                | 2          | 3  | 4   | 5         |

A6.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십니까?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
| 1     | 2  | 3  | 4  | 5     |

A7.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련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  
십니까?

| 전혀 신뢰하지<br>않음 | 신뢰하지<br>않음 | 보통 | 신뢰함 | 매우 신뢰함 |
|---------------|------------|----|-----|--------|
| 1             | 2          | 3  | 4   | 5      |

A8. 귀하는 정부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 전혀 신뢰하지<br>않음 | 신뢰하지 않음 | 보통 | 신뢰함 | 매우 신뢰함 |
|---------------|---------|----|-----|--------|
| 1             | 2       | 3  | 4   | 5      |

A9. 귀하는 농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
| 1     | 2  | 3  | 4  | 5     |

A10.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행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골라 순위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농식품 안전관련 부처·기관간 정보 공유 등 협조 체계 미흡  
 ② 농식품 안전관리 전문인력 부족      ③ 농식품 안전관련 예산 부족  
 ④ 농식품 안전정책에 대한 정책적 인식 및 우선 순위가 낮음  
 ⑤ 농식품 위험 평가 기능 취약      ⑥ 기타( )

A11. 귀하가 우리나라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2개를 골라 순위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정비    ② 농식품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화  
 ③ 농식품 안전관련 인력의 확충    ④ 농식품 안전관련 검사 체계 개선  
 ⑤ 농식품 안전 기준 강화      ⑥ 기타( )

A12. 귀하는 우리나라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일관적 관리  
 ②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관리  
 ③ 신속·사전예방 중심의 관리  
 ④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관리  
 ⑤ 기타( )

A13.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일관적 관리 부재
- ②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 관리 소홀
- ③ 위생 및 안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미약
- ④ 위생 및 안전 기준 설정 미흡
- ⑤ 기타( )

**A14.** 귀하는 농식품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중앙정부기관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br>중요하지<br>않음 | 중요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br>중요함 |
|-----------------------|------------------|------------|----|-----|-----------|
| 농림수산식품부               | 1                | 2          | 3  | 4   | 5         |
| 보건복지가족부<br>(식품의약품안전청) | 1                | 2          | 3  | 4   | 5         |
| 환경부                   | 1                | 2          | 3  | 4   | 5         |
| 교육과학기술부               | 1                | 2          | 3  | 4   | 5         |
| 지식경제부                 | 1                | 2          | 3  | 4   | 5         |
| 기획재정부                 | 1                | 2          | 3  | 4   | 5         |

■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B1.** 귀하는 2008년 12월에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모른다 | 들어본 적 있다 | 잘 안다 |
|-----|----------|------|
| 1   | 2        | 3    |

**B2.**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다음에 제시된 기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br>중요하지<br>않음 | 중요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br>중요함 |
|-------------------------------|------------------|------------|----|-----|-----------|
| 중앙정부<br>(농식품부,<br>식품의약품안전청 등) | 1                | 2          | 3  | 4   | 5         |
| 광역지방자치단체<br>(특별시·광역시·도)       | 1                | 2          | 3  | 4   | 5         |
| 기초지방자치단체<br>(시·군·구)           | 1                | 2          | 3  | 4   | 5         |

**B3.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현재 다음에 제시된 기관의 역할 및 권한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br>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br>높음 |
|-------------------------------|----------|----|----|----|----------|
| 중앙정부<br>(농식품부,<br>식품의약품안전청 등) | 1        | 2  | 3  | 4  | 5        |
| 광역지방자치단체<br>(특별시·광역시·도)       | 1        | 2  | 3  | 4  | 5        |
| 기초지방자치단체<br>(시·군·구)           | 1        | 2  | 3  | 4  | 5        |

**B4. 귀하는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
| 1     | 2  | 3  | 4  | 5     |

**B5.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한 개만 응답)**

- ① 농식품 안전에 대한 현장 관리
- ② 농식품 안전에 대한 평가 및 기준 제시
- ③ 농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 입안·집행
- ④ 농식품 안전 관련 정보 수집·분석
- ⑤ 기타( )

**B6.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한 개만 응답)**

- ① 농식품 안전에 대한 현장 관리
- ② 농식품 안전에 대한 평가 및 기준 제시
- ③ 농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 입안·집행
- ④ 농식품 안전 관련 정보 수집·분석
- ⑤ 기타( )

**B7.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련 행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 ① 상호협력적 관계
- ② 상명하달적 관계
- ③ 자율·독립적 관계
- ④ 기타( )

**B8.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련 행정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 ① 상호협력적 관계                      ② 상명하달적 관계  
③ 자율·독립적 관계                      ④ 기타(                      )

**B9.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br>이루어지지<br>않음 | 이루어지지<br>않음 | 보통 | 이루어짐 | 매우<br>잘 이루어짐 |
|-------------------|-------------|----|------|--------------|
| 1                 | 2           | 3  | 4    | 5            |

**B10.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역할분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br>적절하지<br>않음 | 적절하지<br>않음 | 보통 | 적절함 | 매우<br>적절함 |
|------------------|------------|----|-----|-----------|
| 1                | 2          | 3  | 4   | 5         |

**B11. 귀하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br>중복되지<br>않음 | 중복되지<br>않음 | 보통 | 중복됨 | 매우<br>중복됨 |
|------------------|------------|----|-----|-----------|
| 1                | 2          | 3  | 4   | 5         |

**B12. 귀하는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역할 및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B13으로 가세요.  
② 역할 및 권한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B14로 가세요.  
③ 역할 및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B15로 가세요.

**B13. (B12에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경우) 귀하가 생각하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를 골라 순위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

⇒ 응답 후 15번으로 이동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온정주의로 단속·조사 업무 등에서 강력한 행정이 어려움  
②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 전개 어려움  
③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 업무 이루어지기 어려움

- ③ 농식품 안전성은 지방보다는 국가 차원의 문제임
- ④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정책 집행이 어려움
- ⑤ 기타( )

**B14. (B12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경우)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개만 응답)**

⇒ 응답 후 15번으로 이동

- ① 단속·지도 등 현장 행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 ②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 ③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정책(행정) 수행을 위해
- ④ 기타( )

**B15. 귀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골라 순위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농식품 안전관련 부서 간 연계 미흡
- ② 농식품 안전관리 인력 부족
- ③ 농식품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부족
- ④ 농식품 안전관련 예산 부족
- ⑤ 농식품 안전정책에 대한 정책적 인식 및 우선 순위가 낮음
- ⑥ 안전성 검사·평가 기구 및 장비 부족
- ⑦ 기타( )

**B16. 귀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행정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골라 순위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관련 부서 간 업무 역할 조정 및 협력 강화
- ② 담당 인력 보강
- ③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
- ④ 관련 예산 증액
- 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강화
- ⑥ 안전성 검사·평가 기반 정비
- ⑦ 기타( )

**B17.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농식품 안전관련 업무를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곳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요 업무             | 중앙정부 | 지방<br>자치단체 |
|-------------------|------|------------|
| 농식품 안전 기준 설정      | 1    | 2          |
| 농식품 안전 정책·제도 수립   | 1    | 2          |
| 농식품 안전관련 감시·감독 업무 | 1    | 2          |

|                                   |   |   |
|-----------------------------------|---|---|
| 농식품 안전관련 정보 수집과 제공                | 1 | 2 |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감시·지도                  | 1 | 2 |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 1 | 2 |
| 음식점 위생관리 감시·지도                    | 1 | 2 |
| 음식점 위생관리 단속                       | 1 | 2 |
|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지도                  | 1 | 2 |
|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1 | 2 |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감시·지도                 | 1 | 2 |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 1 | 2 |
| 농산물 수거·검사                         | 1 | 2 |
| 농산물 이외의 식품 수거·검사                  | 1 | 2 |
| 집단 급식소 관리                         | 1 | 2 |
| 부정·불량식품 단속                        | 1 | 2 |
| 품질 인증 농산물 지도·감독                   | 1 | 2 |
| 건강기능식품 감시·지도                      | 1 | 2 |
| 건강기능식품 단속                         | 1 | 2 |
|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감시·지도             | 1 | 2 |
|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단속                | 1 | 2 |
| 식품 유통·판매업소 위생관리 감시·지도             | 1 | 2 |
| 식품 유통·판매업소 위생관리 단속                | 1 | 2 |
| 식품 접객업소(음식점업) 감시·지도               | 1 | 2 |
| 식품 접객업소(음식점업) 단속                  | 1 | 2 |
| 수입식품 감시·지도                        | 1 | 2 |
| 수입식품 단속                           | 1 | 2 |
| 수입식품 수거·검사                        | 1 | 2 |
| 농식품 관련업의 인허가·신고(등록) 등             | 1 | 2 |
| GAP, 친환경인증제, HACCP, 이력추적제 등 지도·감독 | 1 | 2 |
| 친환경인증제, HACCP, 이력추적제 등 운영 지원      | 1 | 2 |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로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가정의 식탁까지 농약, 중금속, 위해생물 등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는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으로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이력추적제는 대표적으로 쇠고기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에게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출생, 사육, 도축 등 유통과정상의 각종 정보와 이동경로를 기록 관리하고 모든 유통과정에 관한 사항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B18.**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식품 안전문제가 보건위생부분과 농업부분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러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③ 모르겠다.

■ 배경 질문

**BQ1.** 귀하의 직업은 무엇이십니까?

- ① 회사원    ② 공무원    ③ 자영업    ④ 전업주부    ⑤ 기타( )

**BQ2.**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연간 평균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답해주십시오.

-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199만원 | ③ 200~299만원 |
| ④ 300~399만원 | ⑤ 400~499만원 | ⑥ 500~599만원 |
| ⑦ 600~699만원 | ⑧ 700~799만원 | ⑨ 800만원 이상  |

**B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초대졸 포함)                      ④ 대학원졸 이상

**BQ4.**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BQ5.** 결혼을 한 경우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참고 문헌

---

- 강경선 외. 2008. 식품안전행정 체계화 및 효율화 방안. 서울대학교.
- 김광천. 2004.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캐나다와 일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 배민식. 2008.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현안보고서. 제15호. 국회입법조사처.
- 김재수. 2005. “미국 식품안전관리제도 현황과 시사점.” 농촌경제. 제28권 제4호. pp. 73-92.
- 곽노성. 2002a. “국가 식품안전관리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보건복지포럼」. 제71호. pp. 37-46.
- 곽노성. 2002b.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보건복지포럼」. 제74호. pp. 95-103.
- 곽명섭. 2004. “식품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입식품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국회보」 통권 460호: 108-113.
- 권배근. 2007.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1집. pp. 201-219.
- 남진식 외. 2006. 「선진적 식품안전관리 정책 개발 연구」. 수원여자대학.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주요국 식품안전 관리현황 조사.
- 류창호. 2004. 「식품안전법제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방민원. 2001.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재일. 2001.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농협조사월보」. 47(7): 18-25.
-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연도. 식품안전관리지침.
- 양병우. 2003. 「축산식품 안전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농정연구센터.
- 유영철. 2004a. “식품행정에 있어 분권화 정책의 방향과 한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중복기능에 대한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4호. pp. 73-98.

- 유영철. 2004b. “주요 선진국 식품행정체제의 변화와 방향: 위험분석에 기초한 식품 행정조직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2호. pp. 173-197.
- 이기현. 2006.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식품안전 정보전달 체계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06-04. 한국소비자보호원.
- 이계임 외. 2008.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C2008-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원우 외. 2008. 식품안전법연구 I-현행 식품안전법에의 쟁점과 개선과제. CeLPU(Center for Law & Public Utilities,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6. 경인문화사.
- 정기혜. 2006.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세계적 동향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 제2호. pp. 122-137.
- 정기혜 외. 2002.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문배, 박명섭. 2003.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단기 위생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최지현, 김민정. 2006. 『생산 및 수입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 방안』. R5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 이계임. 2001. 『주요농축산물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방안』. R4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 외. 2004. 『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R4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鈴木 明子. 2007. “일본의 식품안전행정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2007 농식품안전 심포지움 발표자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GAO(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5. *Food Safety Experiences of Seven Countries in Consolidating Their Food Safety Systems*.
- 일본 농림수산성 웹사이트. <<http://www.maff.go.jp>>.
- 일본 도쿄도청 웹사이트. <<http://www.metro.tokyo.jp>>.
- 일본 전국식품안전자치네트워크 웹사이트. <<http://www.shoku-net.prefgumma.jp>>.

연구보고 R588

식품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개편방향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9. 12.

발 행 2009. 12.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문원사

전화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mailto:munwonsa@chol.com)

---

ISBN 978-89-6013-132-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